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388호
2017. 1. 5.(목)

함께
서울



목 차

◆ 자치법규

[조 례]

제636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5
제6364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5
제6365호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
제6366호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8
제6367호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11
제6368호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2
제6369호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18
제6370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제6371호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0
제6372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1
제6373호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32
제6374호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33
제6375호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37
제6376호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38
제6377호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9
제6378호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41
제6379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43
제6380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59
제6381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62
제6382호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2
제6383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4
제6384호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5
제6385호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67
제6386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73
제6387호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114
제6388호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7
제6389호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8
제6390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119
제6391호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122
제6392호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124

제6393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126
제6394호 서울특별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128
제6395호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30
제6396호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	131
제6397호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2
제6398호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	134
제6399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35
제6400호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136
제6401호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137
제6402호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	138
제6403호 서울특별시 웰딩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139
제6404호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1
제6405호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2
제6406호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143
제640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150
제6408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151
제6409호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3
제6410호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	154
제6411호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156
제6412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7
제6413호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58
제6414호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159
제6415호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	160
제6416호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1
제6417호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62
제6418호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165

[훈 령]

제1002호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166
제1003호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규정	167

[입법예고]

제2017-3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안 입법예고	169
제2017-7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70
제2017-10호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71
제2017-12호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72
제2017-16호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73

◆ 고 시

제2016-436호 특별건축구역지정 고시	175
제2016-439호 재난위험시설의 해제 고시	178
제2016-441호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178
제2017-1호 도구머리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179
제2017-2호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기준 고시	185
제2017-3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고시	194
제2017-4호 박미사랑소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194
제2017-6호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99
제2017-7호 양평제12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19

◆ 공 고

제2016-2485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지 공시송달 공고	224
제2016-2493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225
제2016-2494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예고	225
제2016-2495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흥염장 보유자 인정 예고	226
제2016-2507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내역 공고	227
제2016-2515호 2016년도 제23차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공고	227
제2016-2517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29
제2016-2518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행정처분 공고	235
제2017-5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공고	235
제2017-8호 도시계획시설(청소년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를 위한 열람공고	236
제2017-9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단계별집행계획 공고	246

◆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16-11호 재산등록사항 공개 공고	253

◆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16-13호 2016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 고시	255
제2016-14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고시	256

◆ 구 고 시

제2017-2호 도로 노선의 변경 고시(종로구)	258
제2017-3호 도로 노선의 지정 고시(종로구)	263
제2017-1호 도시관리계획[왕십리역 철도유휴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성동구)	290

제2016-91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동대문구)	291
제2017-1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봉구)	292
제2016-124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노원구)	295
제2017-1호 도시계획시설(불암문화정보도서관 건립)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노원구)	297
제2017-4호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노원구)	301
제2017-1호 도시관리계획(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은평구)	302
제2017-2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조성)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은평구)	304
제2017-1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경찰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마포구)	305

◆ 구 공 고

제2017-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위한 열람공고(강북구)	307
제2017-3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구로구)	309
제2016-1340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금천구)	314
제2017-1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공사완료 공고(금천구)	314

◆ 사업소고시

제2016-28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316
제2016-28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316
제2016-29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317
제2016-29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317

◆ 사업소공고

제2016-2호 소방시설관리업 행정처분 공고(구로소방서)	319

◆ 기 타

제2016-471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320
제2016-476호 한강 폐천부지 일부변경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320
제2017-1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326

자 치 법 규

[조 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636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공보실·의정담당관·의사담당관·입법담당관”을 “언론홍보실·의정담당관·의사담당관·시민권익담당관·입법담당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시의회 내외부의 언론홍보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언론 및 홍보 담당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시의회 내 민원처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민원전담 부서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존 공보실을 언론홍보실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시민권익담당관을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6364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7,471명”을 “17,52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9,717명”을 “9,71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6,820명”을 “6,86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290명”을 “30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153명”을 “150명”으로 한다.

별표 3 총계의 계란 중 “17,471”을 “17,521”로 하고, 같은 표 일반직 계의 계란 중 “9,776”을 “9,772”로 한다.

같은 표 4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급	226	136	16	7	63	4

같은 표 5급 이하 소계의 계란 중 “9,392”를 “9,387”로 한다.

같은 표 연구직 계의 계란 중 “329”를 “338”로 한다.

같은 표 연구사의 계란 중 “276”을 “285”로 한다.

같은 표 소방공무원 계의 계란 중 “6,820”을 “6,865”로 한다.

같은 표 소방령 이하 계의 계란 중 “6,786”을 “6,831”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필요 인력을 적기에 보강하고, 소방공무원·연구직 보강을 위해 서울시 총 정원을 17,471명에서 17,521명으로 50명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원관리 등 분야별 인력보강을 위해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 10명을 증원하고, 감소 기능 등에 대해 집행기관 정원 7명, 합의제 행정기관 정원 3명을 감축함

나. 감염병 대응(5명) 및 실내공기 오염도 측정·검사(5명) 인력 10명을 증원하고, 사업소 기능 감소 분야 일반직 정원 5명 감축함

※ 감염병 대응 인력은 ‘지자체 감염병 대응 조직 개편방안(’16.8.)’에 의거 순증

다.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 45명 증원

◆ 서울특별시조례 제6365호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6조제1항”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로, “범위안에서 2년이상”을 “범위에서 2년 이상”로 “있다.다만”을 “있다. 다만”으로 하며, 제3항제5호 중 “연장 또는 해지”를 “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9조제1항제3호”를 “제10조”로 하고, “연장·해지”를 “연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 책임운영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평가결과의 반영·공표)”를 “(책임운영기관의 평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책임운영기관 평가는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시한다.

제10조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위원회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운영의”를 “책임운영기관 운영의”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계약직공무원”을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8조”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5”로 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위원회의”를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장제1항 중 “4급이하”를 “4급 이하”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 개선 추진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띄어쓰기 오류 및 일본어투 표현을 우리말 어법에 맞게 수정하여 시민들이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종합평가를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한 평가방식에 따르도록 수정(안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 나. ‘지방계약직공무원’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관련 조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관련 조항으로 수정(안 제6조, 제13조, 15조)
- 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지방계약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됨에 따라 기관장 계약해지 관련 조항은 삭제(안 제6조)
- 라. 띄어쓰기, 일본어투 표현을 우리말 어법에 맞도록 수정(안 제6조, 제1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366호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이하 “지역개발채권”이라 한다)의 발행수입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정부지원금 및 정부융자금
5.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지원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용자
 2.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용자
 3. 기금 조성을 위한 용자 및 지역개발채권의 상환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목적상 그 활용이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용자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기금의 자금을 서울특별시 재정투자자금에 예탁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기금 운용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8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시장은 회계연도 시작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2. 기금의 용자계획 및 회수계획
3.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및 상환 계획
5. 기타 기금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기금의 심의)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말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용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①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기업 사업의 투자재원확보와 지역개발기금 재원조성을 위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을 말한다.
- ③ 지역개발채권의 등록방법 및 등록절차에 관하여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른다.
- ④ 지역개발채권의 등록업무는 시금고에서 대행한다.

제9조(지역개발채권의 매출대상 등) ①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신

청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과 매입면제대상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제3조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자에 대하여는 시의 다른 조례에 따라 발행하는 지방채(도시철도공채를 제외한다)를 중복하여 매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지역개발채권의 매출방법) 시장은 해당 연도 중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에 따라 자동차등록에 대한 도시철도공채의 매출이 완료된 경우에 한정하여 그 잔여기간동안 지역개발채권을 매출하여야 한다.

제11조(매출 및 상환업무 위탁) 시장은 지역개발채권의 매출업무 및 원리금상환업무에 대하여 시금고의 본점 및 지점과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지역개발채권의 상환등) ① 지역개발채권의 원금과 그 이자는 제8조에 따라 발행일부터 7년이 경과한 후에 일시에 상환하며, 해당 채권의 이율은 연10퍼센트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지역개발채권의 원금과 이자에 대한 소멸시효는 제1항에 따라 상환일로부터 각각 5년으로 한다.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
2. 기금분임운용관 : 재정관리담당관
3. 기금출납원 : 재정관리담당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수립한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운용방식이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불필요 조항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근거를 명시(안 제1조)
- 나. 공기업 특별회계의 법적근거인 「지방공기업법」 관련 조항 삭제
-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관리자 규정 삭제하고, 기금관리공무원 규정 신설(안 제13조)
- 라. 현금 일시전용 규정 삭제하고,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된 조항 신설(안 제6조)
- 마. 지역개발채권의 등록방법 및 등록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367호**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저영향개발에 관한 정책 및 제9조에 따른 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저영향개발 사전 협의에 관한 사항

제22조제1항 중 “40명”을 “4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을 “외부위원은”으로, “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와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 및 물순환안전국장(이하 “내부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를 “자로 하며, 외부위원 위촉 시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내부위원은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행정2부시장, 안전총괄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물순환안전국장, 푸른도시국장을 포함한다.

제22조제4항(중전의 제3항) 중 “1인 및 물순환안전국장”을 “1명 및 행정2부시장”으로 한다.

제2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분과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연구단을 둘 수 있으며,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저영향개발 자문을 위원회 기능으로 추가함(안 제21조제2항제2호)
- 나. 물순환 시민위원회 위원장 격상 및 내부위원 증가로 위원을 40명에서 45명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 다. 시장이 외부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도록 함.(안제 22조제2항)
- 라. 내부위원을 3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행정2부시장, 물순환안전국장, 안전총괄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푸른도시국장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 마. 공동위원장을 물순환안전국장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하고자 함(안 제22조제4항)
- 바. 물순환 시민위원회 기능 보좌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별 실무연구단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구성·운영 등에 관해서는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27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6368호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등(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의 조성·개발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승인·협의·조정하는 산업단지에 적용한다. 단, 각 산업단지에 대한 개별조례가 있는 경우 그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2장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제3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산단절차간소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5조제6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5조(지원센터의 구성) ① 지원센터의 장은 산업단지 개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 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산업단지 지정건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력지원의 기간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센터 장의 직무) ①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고,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센터의 장이 미리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자문단 구성 등) 시장은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관계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장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제8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산업입지법 및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른 산업단지와 관련한 사항 등의 자문·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1.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 및 부서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산업입지법 제3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변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 기반시설

의 지원에 관한 사항,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승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4.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이윤율의 결정
5. 제23조에 따른 재생사업지구의 녹지율 및 도로율 등 결정
6. 제24조에 따른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분양받는 대상자 선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단절차간소화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산단절차간소화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자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되, 산단절차간소화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구성인원을 고려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이 위원을 정하는 경우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② 위원장은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사업시행자 포함) 등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산단절차간소화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은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임) ① 위원장은 위원이 산단절차간소화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② 산단절차간소화법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사람은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및 서기)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심의위원회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7조(비밀누설금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의결한 사항은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4장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등

제19조(산업단지 지원) ① 시장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2. 그 밖에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개별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외에 기반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주거시설, 기업지원시설 등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 내·외의 시설 조성·확충 지원 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른 성평등한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입주기업 지원 등) ① 시장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창업지원, 기술개발지원, 산학

협력, 인력양성, 판로개척 지원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항의 사업 시행 및 관련 시설물의 관리 등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분양가격 결정 시 적정이윤율)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개발하는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결정 시 적정이윤율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9항에 따른 조성원가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자본비용
2. 산업입지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개발대행공사비

제22조(건축사업의 분양수익 산정 시 적정이윤율)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 산정 시 적정이윤율은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23조(재생사업지구의 녹지율·도로율) 산업입지법 제39조의17제2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에 적용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에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당해 재생사업지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24조(입주우선순위 선정방법의 특례) ①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서 정한 비율의 산업시설용지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다.

1. 해당 산업단지의 유치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고용효과, 첨단기술 보유, 투자규모 등이 우수한 기업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국내·외 기업으로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기업
3. 외국인 투자기업, 국내 유턴기업 중 시의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일자리창출효과와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기업
4. 기존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정상적인 공장 가동을 위해 확장 또는 관할구역 내 기업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분양받는 대상기업은 제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되,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의 경우에 우대할 수 있다.

제25조(수당 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서 등의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비용

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G밸리 종합발전계획 발표 및 운수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재생단지로 선정됨에 따라 노후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산업단지 관련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신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명을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 (안 제명)
- 나. 분양사업의 적정이윤율, 건축사업의 적정이윤율 및 재생사업지구의 녹지율·도로율의 조정, 산업시설용지의 입주우선순위 선정 등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신설함 (안 제9조)
- 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한 서면심의 근거 규정 신설 (안 제13조제2항)
- 라. 노후산업단지(G밸리, 운수산업단지)에 기반시설 등 조성·확충을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규정 신설 (안 제19조)
- 마. 창업지원, 기술개발지원, 산학협력, 판로개척 지원 등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공적영역 지원 근거 규정 마련 (안 제20조)
-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의거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결정 시 적정이윤율을 15% 범위에서 조례에 규정토록 하여, 적정이윤율을 10% 범위 내로 규정함 (안 제21조)
- 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에 의거 산업단지 건축사업 분양수익 산정 시 적정이윤율을 15%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적정이윤율을 10% 범위 내로 규정함 (안 제22조)
- 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7제2항에 의거 재생사업지구의 녹지율·도로율 등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정한 녹지율·도로율의 50%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함 (안 제23조)
- 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 의거 국가 또는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일정비율 입주 우선순위 선정방법 규정 (안 제2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369호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5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적 활동을 장려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문화도시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단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모이거나 동아리 간 결성하여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2. “동아리”란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생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지원단 및 생활문화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4. 생활문화 활동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육성
5.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생활문화사업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문화시설, 동아리, 전문인력 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
2. 생활문화 협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4. 생활문화단체, 동아리 등의 사회적 공헌기회 마련
5.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생활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 등에게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운영자가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 등에게 생활문화 활동공간을 제공할 경우 시장은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제1항 각 호와 제3항의 사업 중 그 일부를 자치구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에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지원단에 단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 및 평가
 2. 생활문화 축제 개최와 국제교류
 3.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기초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생활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5.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 등의 네트워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6. 생활문화 진흥 관련 교육·홍보·전파
 7.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향유 및 체험활동, 전시, 공연 등을 위한 문화 공간 조성 및 운영
 2.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 등의 자율적인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연합회 구성 및 운영 지원
 3. 생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강사 및 소품·장비 등의 지원
 4.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하는 사업
 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지원단 및 센터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① 시장은 지원단 및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협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단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 관련 사업의 개발·추진 등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우수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원단 및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생활문화 및 경영관리에 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문화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검사·보고 등) ① 시장은 지원단 및 센터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운영 부실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시민예술단체 지원 법제화로 문화발전을 위한 실질적 제도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목적, 정의 등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 나.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안 제5~6조)
 -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 생활문화사업의 지원 등
 - 지원 사무, 사업 일부의 자치구 위임 등

- 다. 생활문화지원단 및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7조~제9조)
- 설치 및 예산의 지원, 업무영역, 사업계획서·결산서 제출 등
- 라. 생활문화 협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10조)
- 협치위원회의 구성 인원, 역할, 위촉에 관한 전반
- 마. 생활문화지원센터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1~13조)
- 관리·운영의 위탁 선정 및 취소, 운영상황의 검사·보고 등
- 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부칙)

◆ 서울특별시조례 제6370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구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를 “구청장(구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 성별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①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은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시 및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세움터, 관련협회 등 해당 관할 공사감리자들이 널리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자는 시에 소재지를 둔 건축사사무소의 영 제19조의2제2항 본문의 건축사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공사감리자 신청 건축사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해당 건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제6항의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건축사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직접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시 및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공사감리 업무량 및 건축사 분포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의 4개 권역을 설정한 후 공사감리자 등록 명부를 작성·활용·관리·공개할 수 있으며, 공사감리자 등록을 신청하는 건축사는 사무소 소재지가 속하는 1개 권역의 명부에만 등록될 수 있다.

1. 공사감리자 모집공고일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이 아닌 자
 2. 공사감리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3. 제5항제4호부터 제6호의 경우로 공사감리자 모집공고일 현재 공사감리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자
 4. 공사감리자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다른 건축공사장의 상주 공사 감리자로 선임되지 아니한 자
- ③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재된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건축사사무소 개설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을, 법 및 「건축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결과를 변경·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시
 2.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시
 3.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증빙서류 제출)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 ④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로 등록한 건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공사감리자 등록 명부를 관리하는 시장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3.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⑤ 영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감리자로 지정 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
 2.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자격을 반납한 자
 3. 제3항 각 호의 사유로 감리업무 진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자
 4. 제3항 각 호의 사유 외에 연 2회 이상 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자
 5.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건축주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자
 6. 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공사감리조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⑥ 구청장은 제5항의 각 호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유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리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공사감리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⑦ 허가권자는 규칙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제5항에 따라 지정한 공사감리자를 해당 건축주, 공사감리자, 설계자 및 시장에게 통보하고, 지정 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⑧ 공사감리자 지정을 통보받은 건축주는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정을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규칙 제14조제1항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지정된 공사감리자에게 제

공하여야 하고, 공사감리자 지정을 통보받은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지정을 통보받은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⑨ 시장과 구청장은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관리 업무와 공사감리자 지정대장 관리 업무에 대해 관련 협회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⑩ 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공사감리자를 지정받아 사용승인 된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해당 공사감리자에 대한 설문, 의견청취 등을 통해 공사감리자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의3(공사감리조정위원회 설치 등) ①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 지정 등 다음 각 호의 조정을 위하여 공사감리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등 건축관계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허가권자에게 감리 지정을 위하여 민원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2. 2회 이상 감리 지정을 기피하는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
 3. 공사중지, 소음 등으로 장기간 감리 업무 수행이 어려워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사감리 업무 진행 중 제18조의2제5항 각 호의 사유에 따른 감리 수행 여부에 관한 사항
- ② 공사감리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은 제6조의3과 제6조의4를 준용한다.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정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공사감리 조정 신청서에 따른다.

제18조의4(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의 건축공사 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중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별표 3을 따른다.
-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의 별표 5에 따른 공사비의 중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산정한다.
-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공사감리완료보고서와 함께 제출받아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⑦ 설계변경 등으로 감리비의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는 변경된 감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⑧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비용은 별도로 한다.

별표5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작성을 위한 4대 권역 (제18조의2 관련)

구분	권역명	자치구
1	도심·서북권	종로,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2	동북권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3	동남권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4	서남권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구분	[] 신규	[] 재신청	[] 중도사퇴 후 재신청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대표자		
	사무소 주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 서류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건축사 행정처분조회서, 재직증명서(소속건축사의 경우)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6호서식]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illegible]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별지 제7호서식]

공사감리자 지정대장

(단위 : m², %)

지정신청일자	허가번호	건축구분	대지위치	감리자명	착공일자	임사승인일자	미지정 사유
지정일자	허가일자		건축주명	사무소명	착공연기일자	사용승인일자	
							</

[별지 제8호서식]

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대표자		
	사무소주소		

사유 및 기간	[☐]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출장
	[☐]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그 밖의 사유
	년 월 일 ~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9호서식]

공사감리 조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분 쟁 대 상 건 축 물 현 황	위 치					
	용 도		구 조		준공년도	
	건축면적	m ²	연면적	m ²	총 수	지상 층
	건 폐 율	%	용적률	%		지하 층
① 분쟁 발생 배경 및 원인						
②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18조의3에 따라 공사감리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 (인)

○ ○ 구 공사감리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내용이 많은 경우나 증거자료가 있으면 별지로 작성 및 첨부 가능함.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개정이유**

- 가. 건축물의 안전성 및 시공 품질 향상 도모를 위하여 건축공사 감리 제도에 대한 건축 법령이 개정되고,
- 나.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및 명부작성 방법, 공사감리자 지정 방법,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사 감리자 모집 및 지정(안 제18조의2 신설)
 - 공사감리자 모집 절차 ⇒ “연 1회 이상, 20일 이상 공고 등 공개모집”
 - 공사감리자의 모집시 신청자격
 - 공사감리자 지정 방법 및 지정 연기, 등록취소 사유
- 나. 감리조정위원회 운영(안 제18조의3 신설)
- 다.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안 제18조의4 신설)
 - 상주 및 비상주 공사감리자의 “감리비용 산출 기준”
 -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라 산출
- 라. 기타 사항
 -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작성을 위한 4대 권역’ 신설(별표 제5호)
 - ‘공사감리자 등록 및 지정’을 위한 서식 신설(별지 제5호 서식 부터 별지 제8호 서식 까지)

◆ 서울특별시조례 제6371호**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제7항 시장은 재처리수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

다.

제26조제2항 중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되, 사용량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와 구경별 기본요금의 10원 미만은 버림한다.”를 “사용량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와 요금의 10원 미만은 버림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제3항 재처리수의 요금은 재처리수 사용량 1세제곱미터당 59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건강한 물순환 체계 개선을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자원으로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을 확대하고자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공급을 받는 자의 원인자부담금 면제 가능 및 재처리수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의 경우 공급 활성화를 위해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음 (안 제20조제7항 신설)
- 나. 단일사용량 요금과 관련 없는 조문 수정(안 제26조제2항 개정)
- 다. 재처리수의 요금을 사용량 1세제곱미터당 590원으로 함(안 제26조제3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6372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 및 문화체험 등 각종 교육과 문화 활동 지원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개정이유**

맞벌이 또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여가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일부 지역의 마을공동체에
서 주도하고 있는 각종 교육과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보다 활성화 하는 한편, 보편적 복
지 차원에서 일반 아동까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각종 교육과 문화 활동 지원 사업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대상
사업에 추가함. (안 제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373호**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호선하고”를 “선출하고”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5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
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
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을 때
2.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제1항제1호 중 “1회”를 “한 번”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개 의 하고”를 “시작 하고”로 한다.

제15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 조사와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 중 “강구 하여”를 “마련 하여”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강구 하여야”를 “마련 하여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공문서 등의 국어 한글 사용 실태 조사결과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관련법령의 개정사항 등 반영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8조)
- 위원의 위촉 해제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2)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15조제1항)
- 시장은 매년 실시하는 공문서 등의 국어 한글 사용 실태조사와 평가의 결과 및 5년마다 실시하는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실태 조사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제4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안 제7조제2항, 안 제10조 제1항제1호, 안 제10조제1항제3호, 안 제19조, 안 제20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6374호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5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들고,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이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 의료, 여가, 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아동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아동친화도시 추진체계
4.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5.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아동 및 시민, 관련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인권, 발달, 건강, 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영향평가) 시장은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하여 법인, 비영리기관 등 아동관련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줄 수 있다.
- ③ 시장은 아동관련 시책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아동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기적으로 아동친화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급식 및 신체활동 등 건강관리 및 체력강화 사업
2.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치료 사업
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
4. 아동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인프라 확충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시장은 아동의 학대 및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 유해환경 차단 및 아동대상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2.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 구축
3. 아동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4.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아동 역량강화) 시장은 아동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아동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2.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3. 독서교육 및 습관 형성을 위한 지원사업
4. 아동 국제교류 활성화사업
5.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
6. 학습부진 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 시장은 도로, 교통, 공원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보행의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제16조(아동 참여위원회 등) ① 시장은 아동의 참여권 확대를 위하여 아동 참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아동 참여위원회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 서울특별시의 정책 수립 절차에 참여하거나 관련 의견서를 제시할 수 있고, 시장은 참여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 참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 제50조에 따른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제1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업무의 협조)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 및 공공기관, 그 밖의 시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경비 지원)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관련 법인·기관·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시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의 구체적 추진체계라 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이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서울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나. 아동친화도시 조성원칙(안 제4조)
- 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제6조)
- 라.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기능(안 제7조~8조)
- 마. 아동 실태조사, 아동영향 평가 실시(안 제9조~제10조)
- 바. 아동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의 수립(안 제11조)
- 사. 아동건강증진, 사회안전망 구축, 역량강화(안 제12조~제14조)
- 아. 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안 제15조)
- 자. 아동참여위원회(안 제16조)
- 차. 교육 및 홍보, 업무 협조, 경비지원(안 제17조~제20조)

◆**서울특별시조례 제6375호**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초심사자료”란 취업을 희망하는 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조건(이와 관련 사진의 부착을 포함한다),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시와 소속기관 및 서울시의 투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사진 부착을 포함하여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서울시와 그 소속기관 및 서울시의 투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사진 부착을 포함하여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등의 기재 요구 금지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3호 및 제5조제3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6376호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3항으로 하되, 이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청년구직비용 절감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면접 정장 등 무상대여

2. 그 밖에 구직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사진촬영, 헤어스타일링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개정이유**

- 가. 최근의 경기침체 및 고용 없는 성장 등 고용여건의 악화로 인해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 이에 서울시는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취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년구직비용 절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나. 예를 들어 구직자를 대상으로 ‘정장대여, 프로필사진촬영, 헤어스타일링’ 등과 같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바, 이 같은 사업들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됨.
- 다. 그러나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일 경우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음.
- 라. 이에 청년 구직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사업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청년 구직비용 절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6377호**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행기관”이란 시와 융자계약을 체결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투융자 지원 등 사회적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6. 수행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비용자사업비 지원

제6조제4호,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6호로 한다.

4. 기금운용현황 보고
5. 수행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 중 “10명”을 “1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금업무 소관 국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며, “예산담당 부서장”은 “재정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인정하는 때에는”을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을 제7항부터 제10항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운영하고, 기금운용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받는다.

제9조제2항,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제3항,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하며, 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수행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조에 따라 투자·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소재지, 대표자 등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 제12조, 제13조를 제10조, 제11조, 제1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기금의 민간위탁 관리를 금지함에 따라 투·융자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행기관의 도입,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강화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와 융자계약을 체결하고 사회적금융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에 대한 정의 신설 (안 제2조제4항)

나. 기금의 용도에 수행기관의 비용자사업비 지원 항목 신설 (안 제4조제6항)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투·융자대상의 결정, 기금운용현황 보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안 제6조제4항부터 제5항)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마. 시 직영 관리와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을 신설함 (안 제9조)

바. 민간위탁 관리와 관련한 사항 삭제 (안 제9조제2항, 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378호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5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자치구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서울형혁신교육지구”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정한 자치구를 말한다.
- ②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란 교육감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한 자치구가 해당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지역의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 교육주체와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 및 구청장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혁신교육지구 사업 등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서울형혁신교육지구 평가) ① 시장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평가시 구청장이 실시한 자체평가 후 교육감이 실시한 종합평가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혁신교육지구 지원위원회) 시장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혁신교육지구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
2. 혁신교육지구 지원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혁신교육지구 지원을 위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내부위원은 5명 이내로 업무관련 부서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외부위원은 10명 이내로 서울특별시의원 2명과 혁신교육지구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중에서 양성평등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서울특별시 혁신교육지구 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가. 현행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조례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으나, 서울시는 서울 시교육청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대하여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함.
- 나. 이에 교육·복지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혁신교육지구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시장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혁신교육지구 지원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및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평가 실시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 다. 혁신교육지구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라. 혁신교육지구 지원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임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및 안 제8조까지)
- 마. 혁신교육지구 지원위원회 회의 운영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안 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379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5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의안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

- 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나. 서울특별시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 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 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검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서울특별시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다만, 온천장, 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제외한다.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이벤트 등에서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참가자에게 주는 금품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의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 ② 의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원 간 금품등 수수 행위 금지) 의원은 의회 내의 선거 등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 간에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중토의 조성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의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미리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의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는 것은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②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2.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제18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의회소속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

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 ④ 의장과 제21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등) ① 제11조, 제12조 및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령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이러한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의원은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품 등을 반환한 의원은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그 반환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의장에게 신고한 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일시 및 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제21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 2.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 4. 행동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이 조례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소속 하에 둔다.

-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되지 못한다.
 - 1.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 2. 의원
 - 3. 정당의 당원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하되, 그 비율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인 되도록 한다.

1. 제2항에 따라 추천하는 위원이 없거나 추천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의장이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 위원이 없는 경우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기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⑥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23조(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7조제2호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이 제21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25조(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부터 7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③ 제24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부의 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의장은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지명하여 자문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의견청취 등)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8조(의결사항 통지) 위원장은 자문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자문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회의록)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회의 내용
4. 자문 내용

제31조(자문료 지급)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3조(행동강령의 운영·처리 등)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조례의 교육·상담과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대한 소명서

소명자	성명		정당	
	소속위원회			
회피직무	☐ 의안심사 ☐ 예산심의 ☐ 행정감사·조사 등 ☐ 기타			
회피원인	☐ 친족관계로 인해 회피하는 경우 ☐ 기타 공정한 직무활동을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 내용				
20 소명자 (서명)				

[별지 제2호서식]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활동목적						
활동사유 및 경과						
지원받은 내역 (지원기관 별)						
활동기간	 ~ (일간)					
활동지역 (방문기관)						
참가자	소속 위원회	직위	성명	정당	활 동 경 비	
					금액(천원)	부담기관
	계		명			
20 신청자 (서명)						

[별지 제3호서식]

국내외 활동보고서

활동 의원	성 명	직 위	정 당	소속위원회
개요	목 적			
	지 원 기 관 (단체)		지원 받은 내 역	
	기 간		방 문 지 역 (방문기관)	
주요 활동 내역 (일정 또는 활동내역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활동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20 . . .

제출자 (서명)

[별지 제4호서식]

외부강의 · 회의 등 신고서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외부 강의 및 회의 유형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연락처	
요청 사유					
장 소					
일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 괄 신 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대 가	총액 만원 (※ 1회 평균 대가 만원) (교통비 만원, 원고료 만원, 재료비 만원 포함)				
20 신고자 (서명)					
비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 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 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별지 제5호서식]

영리행위 신고서

신 고 자	성 명		선거 구분	지역구	
	소속위원회 (정당)			비례대표	
영리 행위 현황	명 칭				
	직 위		영리 행위기간		
	보 수	(택) 연 월 원 원	전화번호		
	영리장소 (주소)				
기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20

신고자 (서명)

[별지 제6호서식]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신고자	성명		정당	
	소속위원회		주소	
신고사항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거래 상대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직무관련자 ☐ 지방의회의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이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부동산 대여				
대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직무관련자 ☐ 지방의회의원		
직무관련 업무				
대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입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20 . . . 신고자 (서명)				

[별지 제7호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직업		전화번호	
	주소			
피신고자	성명		직위	
	소속(정당)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고 내용				
증빙자료 목록	※ 증빙자료 첨부			
20 . . . 신고자 성명 (서명)				

[별지 제8호서식]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직 위	
	소속위원회		정 당	
청구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 품 (물 품)			
	수 량 (금 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 람	성 명		주 소	
	연 락처		청구인 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 용			
기 타 사 항				
20 청 구 자 (서명)				

[별지 제9호서식]

[illegible]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대통령령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서울시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직무수행에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인사청탁 등의 금지 및 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 활동을 제한하는 사항을 정함(제4조부터 제7조까지)
- 나. 의원의 이권개입 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및 공용물의 사적으로 사용·수익을 금지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제한함(제8조부터 제12조까지)
- 다. 다른 기관 및 단체로부터 활동비를 지원 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였으며, 대가를 받고 외부 강의, 회의를 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는 사항과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의 제한 및 성회료 금지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 라.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9조부터 제20조까지)
- 마.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자문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1조부터 제31조까지)

◆ 서울특별시조례 제6380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의회 안팎에서 의원의 교육연수 기회가 자유롭고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의원에게 제공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 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돼야 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스스로 체계적인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4조(교육연수 기본계획) ① 의장은 의원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의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7조에 따른 교육연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교육연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교육연수의 추진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의정활동 역량 분석 및 교육연수 수요
4. 교육연수에 대한 실태점검 및 평가
5. 교육연수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의장은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교육연수 시행계획) ① 의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말까지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제6조제1항의 교육연수과정과 과정별 교육연수시기, 교육연수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③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연수 실시 결과를 반기마다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의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교육연수과정 등) ① 교육연수과정은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교육·직무교육·교양교육·특별교육으로 구분하고 각 교육연수과정별 내용과 대상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의장은 교육연수과정에 대한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연수과정을 신설하거나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교육연수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7조(교육연수위원회) ① 의장은 의원의 교육연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의회 의원 교육연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교육연수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타당성
 3. 교육연수 사업의 적정성 및 평가
 4. 그 밖에 교육연수에 대해 의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의회 교육연수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의회 의원, 그 밖에 지방의회와 관련이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경우에 위원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거나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8조(예산 지원) ①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제2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의원 교육연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 교양을 함양하기 위한 의원의 교육연수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교육연수의 기본원칙과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교육연수 과정의 세분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지원을 해야 하는 등 교육연수의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 신설).
나. 의원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의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과 1년 단위의 교육연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신설).

- 다. 의원의 교육연수과정을 기본교육, 직무교육, 교양교육, 특별교육 으로 세분화하여 시행토록 함(안 제6조 신설).
- 라. 의원의 교육연수에 자문하기 위해 의회 의원 교육연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함(안 제7조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6381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서울에너지공사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집단에너지사업,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시민복지를 담당하는 서울에너지공사의 설립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위원회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소관부서로 서울에너지공사를 추가함.
(안 제33조제1항제4호마목)

◆ **서울특별시조례 제6382호**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5일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역량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현행 제1항 중 “설치목적과”을 “「교육기본법」 제2조 및”으로, “따라 대학교의 이념”을 “다른 교육이념과 대학의 목적”으로 각각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학칙) ① 대학교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 제6조에 따라 법령과 조례의 범위에서 대학교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대학교의 학칙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원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학생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여 국가 및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③ 총장은 학칙의 개정사항을 대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 ① 대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학교운영위원회를 둔다.

1. 대학교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사항
2. 교육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3. 학사행정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4.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교의 운영상 시장 또는 총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대학교의 재정) ① 대학교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대학의 자체수입금을 통합·운영하는 대학회계를 둔다.

② 대학교의 등록금(입학금,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말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정한다.

제3조의3(총장) ① 대학교에는 학교의 장으로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총장이 사직한 때 또는 임기 중에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임용령」 제12조의2에 따라 2인 이상의 총장 후보자를 추천받아 후임자를 임용하며 임용된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④ 총장은 「교육공무원법」 제55조에 따라 대학교의 추천을 받아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

회에 자문하여 시장이 임용한다. 이 경우 총장 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 단서 및 각 호를 삭제하고, 제5조 중 “「고등교육법」”을 “법”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감독 및 승인) ① 대학교는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다. 다만, 법령으로 특별히 규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② 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학의 학과설치 및 폐지
2. 학생정원의 증감
3. 재정에 관한 주요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목적에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 교육 및 연구역량 향상을 추가하고, 학칙 설치 근거와 이념을 신설하고, 대학교 운영위원회 기능을 명확화하며 총장의 근거 및 임기 규정을 마련하는 등 대학교 운영 과정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학의 자율성 보장, 사회적 책무 등 조례 목적을 명확히 하고 대학 운영원칙에 「교육기본법」 제2조의 ‘교육이념’ 추가(안 제1조, 제2조)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칙 근거 및 기본원칙 규정(안 제3조의2)

다. 대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명확화(안 제3조)

라. 대학 재정 근거 조항을 분리하여 별도 신설하고 등록금 근거 규정 마련(안 제3조의2)

마. 총장 역할, 임기, 임용절차 규정 신설(안 제3조의3)

◆ 서울특별시조례 제6383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사업비 정산기준 마련, 정산 매뉴얼 작성, 부적절 사용유형 정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⑧ 시장은 제7항에 따라 사전에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활용해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중인 각종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해 제3자 재위탁과 회계감사 절차 개선을 통해서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의회보고 실시(안 제4조의3)
 나. 회계감사 대상을 연 사업비 10억원 이상에서 모든 위탁사무로 확대(안 제15조)
 다. 사전에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 감사인 지정(안 제15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384호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원은 시민, 시의회, 학계, 시민단체, 관계공무원(지방분권 업무 담당 실·본부·국장), 관계기관 등에서 지방분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사망, 국외이주,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협의회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주민자치주간 지정·운영 등) ①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하는 등 범시민적으로 지방분권 실현을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주민자치주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실질적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범시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분권협의회 구성·운영을 보완하고 ‘주민자치 주간’을 지정·운영 하는 등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협의회 위원에 관계 공무원(지방분권 업무 담당 실·본부·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둘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9조).
- 나. 협의회 위원으로 활동 중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해촉 사유가 발생 한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9조의2).
- 다.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 기념 등을 위해 매년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주민 자치 주간으로 지정·운영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13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385호**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5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 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발전,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 사회, 환경 요소 가운데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장운영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제5조(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이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행계획의 추진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이행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시장은 최근 2년간의 이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점검결과를 기본계획과 이행계획에 근거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6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이행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7조(행정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절차 등) ① 「지속가능발전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장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중·장기 행정계획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장기 행정계획을 해당 행정계획 소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 또는 소관 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시장에게 중·장기 행정계획을 통보받지 않더라도 검토가 필요한 때에는 안건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검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운영협의회의 사전검토와 조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계획 또는 이행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거나 경미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2. 그 밖에 운영협의회에서 중·장기 행정계획의 내용이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중·장기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날 또는 안건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장기 행정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위

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확정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적용결과, 제6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 점검결과를 포함하여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속가능성 평가를 할 때 시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지속가능성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추진상황
2.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3. 시정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

제4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경제·사회·환경 등 시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변경 심의
2.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에 관한 자문
3. 이행계획 추진 상황 점검
4. 주요시정의 지속가능성 검토 및 평가
5. 주요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경제·사회 문화·환경 분야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소관 부서의 과장이 간사가

되며, 위원장이 지명한 위촉위원 중 1명을 실행간사로 둘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교체 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4조(운영협의회 등)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협의회

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사전 검토·조정

나.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다.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분야별 연구·검토 등

③ 운영협의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협의회

가. 10명 이하

나. 운영협의회장은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위촉직 위원장

2.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가. 기능에 따라 필요한 인원

나.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장과 간사는 호선

④ 그 밖에 운영협의회 운영,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심의·자문할 안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전에 대하여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일부 안전에 대해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당 안전의 심의·자문에서 배제한다.

③ 위원이 심의·자문할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자문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17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 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8조(민관협력의 증진)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중앙 행정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시장은 업무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교육·홍보 등)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이행·평가와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조사·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21조(지속가능발전 실천 활동 지원) ① 시장은 기업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실천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 「지속가능발전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장이 중·장기 행정계획을 녹색성장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녹색성장위원회로 본다.

[별표] 중·장기 행정계획(제7조 제1항 관련)

1.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
2.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3. 「에너지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너지 계획
4. 「폐기물관리법」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물 재이용 관리계획
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
총량관리기본계획
7. 「수도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
8.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시행
계획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녹지기본계획
10. 「자연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11.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1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대중교통계획
13.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14. 「영유아보육법」 제11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 계획
1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지
역사회보장계획
16. 「주거기본법」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종합계획
17.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 중장기계획
18.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노
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19.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4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안전에 관한 기
본계획
20.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
21.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23.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 기본계획
24.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
25.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26.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27. 「관광진흥법」 제4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28.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29.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 제5조의2 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30.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마을공동
체 만들기 기본계획
31.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 중·장기 행정계획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강화를 위해 시정전반평가 및 주요 중장기행정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토로 통합적 평가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 이행계획의 점검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검토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나. 주요 행정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지속가능성 검토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다. 지속가능발전 지표 작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라.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작성 내용 및 주기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마.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7조)
- 바.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제21조)
- 사. 지속가능성 평가대상 중·장기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별표)

◆ 서울특별시조례 제6386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5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이 이를”을 “위원장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 제4호”를 “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동향보고 사항”을 “동향보고”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항 제1호”를 “제1항제1호”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대상되는”을 “대상이 되는”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3조 제1항 제5호”를 “제3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제4호 중 “사항에 한한다”를 “사항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하정(夏亭)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하정(夏亭)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안전감사 ombudsman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안전감사 ombudsman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단서 중 “등의 대하여는”을 “등은”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2조 제1호”를 “제2조제1호”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제2조 제5호 아목”을 “제2조제5호아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1조제6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의한”을 “따라”로 한다.
제15조제5호 중 “3인”을 “3명”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남은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8조제6항에 따라”를 “법 제8조제6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2조 중 “심사종료후 1월”을 “심사종료 후 1개월”로 한다.
제16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한다.다만”을 “한다. 다만”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진술”을 “진술,”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7명의위원”을 “7명의 위원”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등을위원회”를 “등을 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한다.다만,”을 “한다. 다만,”으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②제5조에 의한”을 “② 제5조에 따른”으로,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의장1명, 부의장1명”을 “의장 1명, 부의장 1명”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12조제1항의”를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년”을 “연”으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기부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행정과장”을 “기부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국 행정과장”을 “공익사업선정사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하여 15인”을 “1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국장”을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지식정보공유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식정보공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와 집행기관 등”을 ““시와 집행기관 등””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이라고”를 ““시장”이라고”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따른”을 “따라”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전단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서울특별시”를 “서울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0인”을 “10명”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4조제5항 중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을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를 “제2항에도”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시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위임에 관하여는”을 “위임은”으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 중 “한다.이 경우”를 “한다. 이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있다.이 경우”를 “있다. 이 경우”로 한다.

제44조 중 “한다.다만”을 “한다. 다만”으로 한다.

제50조 중 “허가한다.다만”을 “허가한다. 다만”으로 한다.

제54조 중 “한다.다만”을 “한다. 다만”으로 한다.

제71조제2항 중 “한다.다만”을 “한다.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한다.다만”을 “행한다. 다만”으로 한다.

제72조제8항 중 “연2회”를 “연 2회”로 하고, “실시한다.다만”을 “실시한다. 다만”으로 한다.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변상시킨다.다만”을 “변상시킨다. 다만”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한다.다만”을 “한다. 다만”으로 한다.
 제89조제3항 중 “징수한다.다만”을 “징수한다. 다만”으로 한다.
 제91조제3항 중 “아니한다.다만”을 “아니한다. 다만”으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
 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본 조례”을 “이 조례”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 조례”을 “이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조달
 시 본 조례”을 “공공조달 시 이 조례”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
 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용자간”을 “이용자 간”으로, “주고 받을”을 “주고받을”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관으
 로써, 「초·중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기관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4
 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7조(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의 규정을”을 “를”로 한다.

제28조(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29조(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같은조제5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8조 중 “법 제13조제2항”을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으로, “게재로써”를 “게재하는 방법으로”로 한다.

제30조(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주민”이란 서울특별시”를 ““주민”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를 “시의”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공직선거법 제15조 규정에 의한”을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 공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의하여”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로, “규격 비치, 보관 기타”를 “규격, 비치 및 보관, 그 밖에”로 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장은”을 “장이”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조 중 “기타 기관의 장의 공인”을 “그 밖의 기관의 공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기타”를 “등”으로, “사무”를 “업무”로 한다.

제4조 중 “초과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을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으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명시 하여야”를 “명시하여야”로 한다.

제9조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의하여 제8조 규정에의한”을 “따라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당해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을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시장의자격기준에 관하여”를 “제110조제2항에 따른 부시장의 자격기준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급이상”을 “1급 이상”으로, “3년이상”을 “3년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급이상”을 “2급 이상”으로,

“6년이상”을 “6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3조(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제9조제3항”을 “제7조제3항”으로 한다.

제34조(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10인”을 “10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액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를 “제1항에 따라 현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감사관으로 하여금 추천된”을 “감사위원회가 추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감사관이”를 “감사위원회가”로 한다.

제35조(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7.“고정비용””을 “7. “고정비용””으로 한다.

제36조(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제2조제1항각호”를 “제2조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제7조의”를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3인 이상 21인”을 “13명 이상 21명”으로, “각호의 자중”을 “각 호의 자 중”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인”을 “1명”로, “2인”을 “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통합하되”를 “총괄하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과반수이상의”를 “과반수”로, “이상의 찬성”을 “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를 “제3항에도”로,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7조(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38조(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48시간안”을 “48시간 안”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단서 중 “아니하다. 다만, 신고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일에 광장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2조”를 “아니하며 이 경우에 시장은 사용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2조”로, “반환한다”를 “신고자에게 반환한다”로 한다.

제39조(서울특별시 시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우회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에게 서울시”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로,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장은 전항의”를 “시장은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전항과 전전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위원장 이”를 “위원장이”로 한다.

제41조(서울특별시 국제경제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국제경제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국제경제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서울국제경제자문단”으로,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① 자문단은”을 “자문단은”으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인”을 “1명”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인의 의장과 3인이내”를 “1명의 의장과 3명 이내”로, “4인 중 최소 3인은 다음 각호”를 “4명 중 최소 3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규정에 의한 정기회”를 “정기회”로 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각1인”을 “각 1명”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 중 “사항이외”를 “사항 이외”로 한다.

제42조(서울특별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의”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로 한다.

제43조(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4조(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민법」의 규정에 의한”을 “「민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3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4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8조 중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을 “소속공무원에게”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1항에 따른”으로, 제3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45조(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자중”을 “각 호의 자 중”으로 한다.

제8조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에 따라”로 한다.

제9조 중 “일부를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을 “일부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6조(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산업경제정책관”을 “창조경제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생활경제과장”을 “민생경제과장”으로 한다.

제47조(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8조(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 중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하고,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8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6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8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 중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의3에 따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8조제1항에 따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1조 중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 중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제2항에 따라”로, “바에 의하여”를 “바에 따라”으로 한다.

제15조 중 “영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50조(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제6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18조 제1항 제8호”를 “제18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18조 제1항”을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51조(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의 규정을”을 “를”로 한다.

제52조(서울특별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53조(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54조(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6조제3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7조제1항제7호 중 “7 그 밖에”를 “7.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1조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5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55조(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56조(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4조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5조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아니된다”를 각각 “아니 된다”로 한다.

제7조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8조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9조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회기중”을 “회기 중”으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한 때”를 “하는 경우”로 한다.

제57조(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58조(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한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0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59조(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쟁송사건에 있어”를 “쟁송사건의 경우”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법률검토를 요하는”을 “법률검토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60조(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처리함에 있어”를 “처리하는 경우”로 한다.

제61조(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20인”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호”로 한다.

제62조(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63조(서울특별시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64조(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단서의 규정”을 “단서”로,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제8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8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65조(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제7조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66조(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67조(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68조(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69조(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예산담당관”을 “재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25조제5항 중 “예산담당관”을 “재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제70조(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3조 중 “관리에 관하여”를 “관리”로 한다.

제18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38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71조(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7조의2의 규정”을 “제37조의2”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2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으로”를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으로”로 한다.

제72조(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허가·인가·등록등”을 “허가·인가·등록 등”으로 한다.

제73조(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범위안에서 교부한다”를 “범위에서 지급한다”로 한다.

제9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74조(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75조(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76조(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7조(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으로 한다.

제16조 중 “계리하여야”를 “회계처리 하여야”로 한다.

제25조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관계 규정을”을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로 한다.

제78조(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행기관으로 하여금”을 “수행기관에게”로 한다.

제79조(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제13조”를 “제14조”로 한다.

제80조(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고졸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를 “고등학교졸업자를 선발하지 않아야”로 한다.

제81조(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근로자가”를 “근로자에게”로 한다.

제82조(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지역개발사업자에 관하여는”을 “지역개발사업자에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시가”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을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시설물에 대한”을 “시설물의”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차상위계층에 대하여”를 “차상위계층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83조(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운휴일”을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날(이하 “운휴일”이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날(이하 “운휴일”이라 한다)로”를 “날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9조제3항 본문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자태그인증시”를 “전자태그 인증시”로 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전자 태그”를 “전자태그”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해당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로 한다.

제84조(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를 “이미”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강구하여야”를 “마련하여야”로 한다.

제18조제5항 중 “제2조 제1항 제4호”를 “제2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구축하는데”를 “구축하는 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현하는데”를 “구현하는 데”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회복하는데”를 “회복하는 데”로 한다.

제30조제1항 후단 중 “시장은 녹색생활운동이”를 “② 시장은 녹색생활운동이”로, “등에 대하여”를 “등에”로 한다.

제85조(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특별법”이라 한다.”를 ““특별법”이라 한다”로, “전지역”을 “전 지역”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86조(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정온”을 “평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시”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 “정온”을 “평온”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정온”을 각각 “평온”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저감시키기”를 “줄이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를 “반영하거나”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정온”을 “평온”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발생되”를 “발생하”로, “발생된”을 “발생한”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등으로부터”를 “등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확보 하도록”을 “확보하도록”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5호 중 “자문을 요청하는”을 “자문하는”으로 한다.

제87조(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88조(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89조(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2조제1호의 규정”을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90조(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2인”을 “2명”으로, “한다.이 경우”를 “한다. 이 경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위촉위원중”을 “위촉위원 중”으로, “1인과”를 “1명과”로, “1인으로”를 “1명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인과 감사 2인”을 “4명과 감사 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위촉위원중”을 “위촉위원 중”으로, “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자,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제7조에 따른”으로, “된다”를 “검입한다”로 한다.

제91조(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1월말”을 “1월 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월말”을 “2월 말”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7월말까지”를 “7월 말까지”로, “1월말”을 “1월 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월말”을 “3월 말”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당해 회계연도내”를 “해당 회계연도 내”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상품목외”를 “대상품목 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시행할수”를 “시행할 수”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각 호의 규정에”를 “각 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안에서 보조할”을 “범위에서 보조할”로 한다.

제92조(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 및제15조제2항”을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 및 제15조제2항”으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분쟁조정법」”을 “「환경분쟁 조정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말한다.이하”를 각각 “말한다.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다.다만”을 “한다. 다만”으로 하고,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제93조(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7조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한 경우나”로 한다.

제94조(서울특별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이해관계자”를 “이해관계자”로 한다.

제95조(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를 “제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를 “제15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9조의 규정에 따라서”를 “제19조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3조제1항의 규정”을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중)”을 “중(種)”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3조 본문 중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96조(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단서 중 “대체 할”을 “대체할”로, “강구하도록”을 “마련하도록”으로 한다.

제11조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97조(서울특별시 세빛둥둥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세빛둥둥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세빛둥둥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세빛둥둥섬”을 각각 “세빛섬”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세빛둥둥섬””을 ““세빛섬””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세빛둥둥섬”을 각각 “세빛섬”으로 한다.

제3조 중 “세빛둥둥섬”을 “세빛섬”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세빛둥둥섬”을 “세빛섬”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세빛둥둥섬”을 각각 “세빛섬”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해태하는”을 “게을리하는”으로 한다.

제10조 중 “본 조례”를 “이 조례”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빛둥둥섬”을 각각 “세빛섬”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지명 하며”를 “지명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를 “각 호에”로, “위촉 한다”를 “위촉한다”로 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축 하여야”를 “해축하여야”로 한다.

제17조 중 “세빛둥둥섬”을 “세빛섬”으로 한다.

제98조(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99조(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득이 한”을 “부득이한”으로 한다.

제10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4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8조 중 “보고하게 하거나”를 “보고받거나”로,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을 “지정한 자에게”로 한다.

제100조(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하“공공용지”라 한다)”를 “(이하 “공공용지”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조화여부”를 “조화 여부”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를 “호선한다”로 한다.

제101조(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을 “「민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다.이 경우”를 “한다. 이 경우”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시설에 대한 대관신청을 승인함에 있어서”를 “시설의 대관신청을 승인하는 데에”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임·직원”을 “임직원”으로, “서의회”를 “시의회”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회무를 통할하며, 이사장이 부득이 한”을 “사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으로 한다.

제11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2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3조 중 “사업년도”를 “사업연도”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4조 중 “한다.이를”을 “한다. 이를”으로 한다.

제15조 중 “세입·세출의”를 “세입·세출”로, “3월말”을 “3월 말”로 한다.

제16조 중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중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② 제1항에 따라”로 하고, “있다.이 경우”를 “있다. 이 경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④그 밖에”를 “④ 그 밖에”로 하고,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하며, “서울특별시 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의 규정을”을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을”으로 한다.

제102조(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를 “호선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하며”를 “총괄하며”로 한다.

제103조(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종합자료관장”을 “서울도서관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사무관리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과반수 이상의”를 각각 “과반수의”로 한다.

제104조(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05조(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6조(서울특별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라”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시설에 한

하여”를 “시설만”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의한”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2호 중 “50%이상”을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7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때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업무를 보고받거나 소속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로 한다.

제107조(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보훈기본법」”을 “「국가보훈 기본법」”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령에 따라”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대한민국의”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3.“국가보훈관계 법령””을 “3.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조성하는데”를 “조성하는 데”로 한다.
 제4조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행하며,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를 “수행하며,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때에”를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보훈관련”을 “보훈 관련”으로, “때에 시 지역출신”을 “경우에 시 지역 출신”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보훈관련”을 “보훈 관련”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을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시장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시장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로, “있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를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제9조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대하여 필요”를 “필요”로, “요청 할”을 “요청할”로 한다.
 제10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08조(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통 받는”을 “고통받는”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채무조정제도에 대한”을 “채무조정제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복지수급제도에 대한”을 “복지수급제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다음연도 2월말”을 “다음 연도 2월 말”로 한다.
 제7조 중 “지역내”를 “지역 내”로 한다.
 제8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09조(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내”를 “범위”로, “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5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조례」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10조(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유족에 대하여”를 “유족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망시”를 “사망 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이용시”를 “이용 시”로 한다.

제111조(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설립·운영하는데”를 “설립·운영하는 데”로 한다.

제4조제7호 중 “국내·외”를 “국내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등으로부터”를 “등에서”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이내”를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추천된”을 “추천한”으로,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때에”를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득이 한”을 “부득이한”으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위탁하는”을 “위탁할”로, “법령의 규정”을 “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대하여 재단”을 “재단”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를 “없으면 이에 따라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1개월전”을 “1개월 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때에도”를 “경우에도”로 한다.

제16조 중 “보고하게 하거나”를 “보고받거나”로, “자로 하여금”을 “자에게”로 한다.

제17조 중 “제30조의4 의 규정”을 “제30조의4”로 한다.

제112조(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운용하는데”를 “운용하는 데”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중 “노인관련”을 각각 “노인 관련”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장애인문제”를 “장애인 문제”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자활근로 참가자”를 “수급자”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률의 규정”을 “법률”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을 “기금에

서 대여받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을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해당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개시”를 “시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금운용계획안와”를 “기금운용계획안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둔다.다만”을 “둔다, 다만”으로 하고, “사무중”을 “사무 중”으로, “사무에 대해서”를 “사무”로,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 한다”를 “심의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구성한다.다만”을 “구성한다. 다만”으로 하고, 후단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있다.다만”을 “있다. 다만”으로 한다.

제16조의2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호선으로 선임된”을 “호선된”으로 한다.

제19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22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13조(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조 중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기관”을 “사회복지기관”으로,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지사”를 “사회복지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사회복지사등”을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중 “위원에 대하여”를 “위원에게”로, “안에서”를 “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8조제3항 후단 중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를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위한교육”을 “위한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추진하는데”를 “추진하는 데”로 한다.

제10조 중 “조례에서”를 “조례에”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14조(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설치·운영하는데”를 “설치·운영하는 데”로 한다.

제6조제3항 전단 중 “위탁하는데”를 “위탁하는 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준용한다.다만”을 “준용한다. 다만”으로 한다.

제8조 중 “위탁관계의 취소 등을 하는”을 “위탁관계를 취소하는 등의”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을 “사회복지시설의”로 한다.

제115조(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함”을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 서울시”를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를 “시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역간”을 “지역 간”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역간”을 “지역 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역간”을 “지역 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을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으로 하며, 제5호 중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를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로 한다.

제10조제3항 전단 중 “지역간”을 “지역 간”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간”을 “지역 간”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역간”을 “지역 간”으로, “있어 필요”를 “필요”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역간”을 각각 “지역 간”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이내”를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호선하여 선출하되”를 “호선하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를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를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없는”을 “없을”로 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중 “제14조 제3항 제3호부터 제7호”를 “제14조제3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이내”를 “이하”로 한다.

제17조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직에”를 “업무에”로 한다.

제18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수행하는데”를 “수행하는 데”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지역간”을 “지역 간”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해당사업”을 각각 “해당 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그밖에 해당사업”을 “그 밖에 해당 사업”으로 한다.

제23조 중 “지역간”을 “지역 간”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지역간”을 “지역 간”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지역간”을 “지역 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간 격차해소 사업에 서의 협력을”을 “지역 간 격차해소 사업에 협력하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필요한”을 “필요할”로 한다.

제27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16조(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헌신한데”를 “헌신한 데”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참전유공자에 대한”을 “참전유공자의”로 한다.

제117조(서울특별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제25조제2항”으로, “상호간”을 “상호 간”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인구 수에 대한”을 “인구수에서”로, “인구 수의”를 “인구수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을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며, 제3호 중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을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5조제2항 규정”을 “제25조제2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을 “지방자치단체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 호의 규정에”를 “각 호에”로, “자치구에 대하여”를 “자치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인해 국가부담비율”을 “국가부담비율”로, “부담하여 변제하여야”를 “변제하여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제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한다.

제6조 중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재정여건에 관한”을 “재정여건 관련”으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을 “사항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로 한다.

제118조(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를 “시행규칙 제41조”로, “상호간”을 “상호 간”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기타재가급여”를 “그 밖의 재가급여”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 중 “재가급여에 대하여”를 “재가급여에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대하여 이의”를 “이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19조(서울특별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하여 예산”을 “예산”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제3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을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으로 하고,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

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경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경우”로, “지원여부”를 “지원 여부”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0조(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가보훈기본법」”을 “「국가보훈 기본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로, “수급자에 대하여”를 “수급자에게”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②시장은 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을 “②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③시장”을 “③ 시장”으로 하고, “때에는”을 “경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수탁자에 대하여”를 “수탁자에게”로, “감독할 수 있으며”를 “감독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수탁자에게 위탁업무 수행 관련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소속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121조(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장년층”(長年層)이란”을 ““장년층(長年層)”이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 할”을 “지원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을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위탁 할”을 “위탁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를 “예산의 범위”로, “지원 할”을 “수탁기관에 지원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를 “위탁사무의 처리에”로, “보고하게 하거나”를 “수탁기관에 보고받거나”로, “검사 할”을 “검사할”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장년층”을 “위하여 장년층”으로 한다.

제122조(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복지를 향상시키도록”을 “복지 향상을 위해”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에”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노숙인 등의 현황”을 “현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공공기관으로부터”를 “공공기관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민간으로부터”를 “민간에서”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에 대한 자문을”을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123조(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

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활사업에 대한”을 “자활사업”으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을 “사회취약계층”으로, “실시하는데”를 “실시하는 데”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 자활사업과 관련하여”를 “그 밖의 자활사업에”로 한다.

제5조제2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를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4조(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중증장애인”이란”을 ““중증장애인”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립생활’이란”을 ““자립생활”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활동지원급여’라”를 ““활동지원급여”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법 제54조”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체험홈”을 ““체험홈””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자립생활가정”을 ““자립생활가정””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5인 이상 10인 이내”를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제9조제5호 중 “부 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25조(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시장으로부터”를 “시장에게”로, “수화통역센터를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를 “수화통역센터를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하여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의 등록”을 “지역에 등록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인근 지역 등록”을 “인근 지역에 등록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개소당”을 “개소 당”으로, “1인과 수화통역사 4인”을 “1명과 수화통역사 4명”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9조제6호 중 “부 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26조(서울특별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설치·운영하는데”를 “설치·운영하는 데”로 한다.

제7조 중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를 “활용할 수 있도록”으로 한다.

제127조(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9조에 따라”를 “제39조 및”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를 “시행규칙 제46조”로,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128조(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5조 제2항”을 “법 제5조제2항”으로, “우려되는”을 “우려될”로,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129조(서울특별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수급권자에 대하여”를 “수급권자에게”로,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으로부터”를 “시장에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매분기”를 “매분기가”로, “의료 급여특별회계의 운용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을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운용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다음연도”를 “다음 연도”로 한다.

제130조(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령에 따라”로, “사람에 대하여”를 “사람의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를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타 관계인으로부터”를 “그 밖의 관계인에게”로, “한후”를 “한 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1회에 한해”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3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1조(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회계 연도”를 “회계연도”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32조(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를 “시가”로 한다.

제31조 중 “「서울특별시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로 한다.

제133조(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6항 중 “법률 제48조의 2”를 “법 제48조의2”로, “제48조에”를 “법 제48조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55조 제1항 제1호”를 “제5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다음년도”를 “다음 연도”로 한다.

제17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34조(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전단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있다.다만”을 “있다. 다만”으로 한다.

제135조(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를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로 한다.

제136조(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제2조제11호”를 “제2조제10호”로, “안에서”를 “에서”로 한다.

제137조(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후단 중 “의한”을 “따른”으로,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제3조의2”를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제3조”로 한다.

제138조(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제목 “총 칙”을 “총칙”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를 “평가가 필요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9조제1호 및 제2호 중 “지원 사업”을 각각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홍보 사업”을 “홍보사업”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9조 제3호”를 “제9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 중 “센터장으로 하여금”을 “센터장에게”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관계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139조(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35조의 규정”을 “법 제35조”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위탁운영”을 “위탁·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 중 “위하여”를 “위해”로, “센터장으로 하여금”을 “센터장에게”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관계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17조 중 “개인에 대하여”를 “개인에게”로 한다.

제140조(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제13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지원에 있어서”를 “지원을 하는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함에 있어”를 “지원할 경우”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양육지원수당”을 “양육지원 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서울특별시 보육조례」의 규정”을 “「서울특별시 보육조례」”로 한다.

제141조(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을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5조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한다.

제142조(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43조(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10인”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4조(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145조(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현장적응력”을 “현장 적응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한다.

제4조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5조에 따라”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5조의”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46조(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7조(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9조제3호 중 “제11조제6항에 해당함”을 “제11조제6항”으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평가하고, 시민”을 “평가하고, 시민”으로 한다.

제40조제4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때에”를 “경우에”로 한다.

제148조(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2조 전단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9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49조(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여

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받아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13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관련법령”을 “관련 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련기관”을 “관련 기관”으로 한다.

제150조(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51조(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사용이후”를 “사용 이후”로 한다.

제11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원에 관하여는”을 “지원은”으로, “의 규정을”을 “를”로 한다.

제152조(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내지”를 “및”으로,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로 한다.

제153조(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적정성확인”을 각각 “적정성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적정성확인”을 “적정성 확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영 제89조제2항”을 “영 제89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염화물함량”을 “염화물 함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54조(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7조제4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제2항에서 규정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 대하여”를 “자에게”로, “실소요비용”을 “실 소요비용”
 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등에
 관하여는”을 “등은”으로 한다.
 제16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55조(서울특별시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도시철도건설사
 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56조(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제3조의 규정”을 “제3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5조 중 “바를”을 “바에”로 한다.

제157조(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안전
 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긴급상황에”를 “긴급상황에서”로, “서울특별시시민안전체험관의 설치·운영에 관
 하여”를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의 설치·운영에”로 한다.
 제2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제3호에 따라”로,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항에 따라”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10인”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
 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
 나”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조례에”를 “조례에서”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같은 항 중 “조례에”를 “조례에서”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58조(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59조(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60조(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2회에 한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61조(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6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62조(서울특별시 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① “시민수상구조대””을 “1. “시민수상구조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②. “물놀이장소””를 “2. “물놀이장소””로,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을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중 “제10조2의 규정”을 “제10조2”로 한다.

제9조 중 “보전 하기”를 “보전하기”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의 규정을”을 “를”로 한다.

제163조(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독거중증장애인등”을 “독거중증장애인 등”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 되어야한다”를 “포함되어야 한다”로 한다.

제8조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실시 할”을 “실시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활동 자료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를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164조(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를 “따라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보고하여야”를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165조(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서울시에너지조례”를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매회계연도”를 “매 회계연도”로,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때에,”를 “경우에,”로, “매회계연도 개시후 3월”을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월”을 “1개월”로 한다.

제166조(서울특별시 기성시가지 환경개선지원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성시가지 환경개선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1항에 따라”로, 같은 항 중 “때에는 지체 없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때에는 당해”를 “경우에는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②제1항”을 “② 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②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1항에 따른”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③ 제2항에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8조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 중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함에 있어”를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자문이”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당해”를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7조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67조(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각호의 방법에 의한”을 “각 호의 방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8조(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급시기”를 “지급 시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실비:중개대상물”을 “실비: 중개대상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실비:계약금”을 “실비: 계약금”으로 한다.

제169조(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30인”을 “30명”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2조의2제2항제4호 중 “심의 에”를 “심의회에”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7인”을 “7명”으로 한다.

제33조제5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36조제6항 중 “수행함에 있어”를 “수행하는 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37조제4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최소화하여야”를 “최소화 하여야”로 한다.

제170조(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개선 · 관리하는데”를 “개선 · 관리하는 데”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거쳐야한다”를 “거쳐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시행 할”을 “시행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연장 할”을 “연장할”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신청 할”을 “신청할”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관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71조(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5조 중 “영 제23조의 규정”을 “영 제23조”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8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72조(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9조제6항의 규정”을 “제59조제6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법”이라한다) 제58조의 규정”을 ““법”이라 한다) 제58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하여 15인”을 “1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을 “법 제5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59조제3항 제6호의 규정”을 “법 제59조제3항제6호”로, “2인”을 “2명”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5일전”을 “5일 전”으로 한다.

제6조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제173조(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60일전부터 7일전”을 “60일 전부터 7일 전”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를 “경우에”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3조제4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74조(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법제7조제4항”을 “법 제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범위이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범위 이내”를 “범위”로 한다.

제21조제6항 중 “한다.다만”을 “한다. 다만”으로 한다.

제175조(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둘”을 “2개”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5호 중 “제15조 규정”을 “제15조”로 한다.
제26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76조(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중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77조(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78조(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제30조의4의 규정”을 “제30조의4”로 한다.

제179조(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적용한다.다만”을 “적용한다. 다만”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한다.다만”을 “한다. 다만”으로 한다.

제9조제3항 후단 중 “한다.다만”을 “한다. 다만”으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한다.다만”을 “한다. 다만”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후단 중 “있다.이 경우”를 “있다. 이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있다.다만”을 “있다. 다만”으로 한다.

제180조(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주거기본법」”으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3조”를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로 한다.

제6조 중 “영 제13조”를 “「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로 한다.

제181조(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활성화를 제고함”을 “활성화 제고를”로 한다.

제182조(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운영에 관하여는”을 “운영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임명 당시”를 “임명 당시”로, “자이있음이 판명된”을 “자로 판명될”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없는”을 “없을”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6조제7항 본문 중 “여비등”을 “여비 등”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서울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20조 중 “의하여 지명하는 임·직원”을 “따라 지명하는 임직원”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대행함에 있어”를 “대행할 때”로, “제3자로”를 “제3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을 “비용부담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예산편성지침에 따라”를 “예산편성지침대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있는”을 “있을”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체결함에 있어서”를 “체결할 때”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영제63조 에”를 “영 제63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하여는”을 “관한 사항은”으로 한다.

제183조(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법 등 관계규정을”을 “법 시행령 제64조를”로 한다.

제184조(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로 한다.

제185조(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법 제45조 제1항 제2호”를 “법 제45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 제4항”을 “운영은 제4조제4항”으로, “제6조의 규정을”을 “제6조를”로 한다.

제186조(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의 규정”을 “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립대상사업”을 “수립대상 사업”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 중 “차입(차입)”을 “차입(借入)”로 한다.

제11조 중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이월)한다”를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移越)한다”로 한다.

제187조(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5조제6항 중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로 한다.

제39조 후단 중 “부과기준은 영 제79조제1항”을 “부과기준은 영 제79조”로 한다.

제188조(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2호(중전의 제1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를 제11호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마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버스관리과장, 서기는 버스관리과”를 “버스정책과장, 서기는 버스정책과”로 한다.

제11조 전단 중 “범위 안에서 수당·기타”를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있다.다만”을 “있다. 다만”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버스정책시민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89조(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도로법 시행령」 제2조”를 “「도로법」 제2조”로 한다.

제190조(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191조(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도로교통법」”으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시행령”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시행규칙”으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중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제36조제1항”으로, “등으로 하여금”을 “등에게”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드는”을 “제15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3조의 규정”을 “제3조”로, “제2호 서식”을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36조제1항”으로,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제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제192조(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조의2 에”를 “제1조의2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형태소재지규모주차요금”을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주차차종주차위치주차대수”를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나목 중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를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22조 제1항”을 “제22조”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60조제1항제3호”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60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93조(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6조 의 규정”을 “제16조”로,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194조(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195조(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위원회”를 “대행자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행자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시의 현행 조례 가운데 상당수가 관련법령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조문의 경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사정이 있음. 이에 ‘일괄 개정’을 통해 자치법규의 정확성 등을 제고해 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등 인용조문 오류 수정(안 제2조 외)
- 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 미 준수 사항 등 개정(안 제4조 외)
- 다. 동어반복 어휘의 정비를 통한 조문 개정(안 제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387호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5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2. “여성경제인”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3. “공공기관”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하고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 관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법·제도를 개선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의 촉진, 수의계약의 확대 등 여성기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는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인력·정보·기술·관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여성기업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할 수 있다.

1. 제6조의 종합계획의 수립·시행·평가
 2. 제9조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3. 여성기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창업과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및 임명한다.
1. 여성창업과 여성기업에 대한 전문성과 학계에서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2.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등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3. 서울시 여성기업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여성기업지원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⑦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 개발, 신기술·정보의 제공, 경영지도에 관한 지원
 3. 여성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
 4.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필요한 지원
 5. 그 밖에 여성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
-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여성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여성기업 홍보·지도)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자치구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여성창업과 여성기업 촉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교육프로그램, 판매촉진 등 각종 지원사업들을 규정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과 우선구매 등 법령에 따른 여성기업 우대사항을 명시하여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서울시장은 여성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4조·제5조)

- 나. 여성창업과 여성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 다. 여성창업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등 여성창업과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들을 규정함(안 제9조)
- 라. 공공구매시 여성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함(안 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388호**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호를 제4조제5호로 하고, 아래와 같이 제4조제4호를 신설한다.

제4조(의사상자 지원사업) 4. 의사자의 유족과 협의하여 적절한 장소에 의사자를 기억하는 작은 기념비나 조형물의 설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 의사자의 높은 희생정신을 시민들이 기억하고 기리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시장이 적절한 장소에 작은 기념비나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두텁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이 의사자를 기억하는 작은 기념비나 조형물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제4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6389호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유족 및 가족제외)가 65세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보조수당 월 1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
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및 제3호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

다만,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생활보조수당에서 각 수당의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유족 및 가족제외)가 65세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 하고,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해 지원 받고 있는 보상금 및 수당의 총액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한 상이등급별 7급에 해당되는 월 보상금 지급액 미만의 금액을 지원받는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훈예우수당 월 5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2호, 제13호
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및 제3호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

다만, 보훈예우수당 대상자가 다른 조례(자치구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의 생활보조수당 및 제4항의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공헌한 유공자들의 공적에 비해 열악한 지원 실정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해당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아울러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생활보조수당(월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4.19혁명 유공자, 5.18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에 대하여 보훈예우수당 (월 5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6390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5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 촉진을 통해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조기기 서비스”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일련의 지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 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기기 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정책개발 지원
 4.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역보조기기센터 및 서울특별시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광역보조기기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역보조기기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보조기기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2. 보조기기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연수
 3.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제공
 4. 서울특별시 보조기기센터 이용 등에 관한 홍보
 5.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운영, 관리 및 보조기기 서비스 지원
 6. 지역보조기기센터에서 운영 중인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기기 관련 사업
- ② 광역센터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주거약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와 주택 구조 및 편의시설 등의 연계를 위한 설계 및 기준 등에 관한 연구와 개발
 2.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에 따라 주거약자용 주택건설을 맡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연수
 3. 그 밖에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사업
- ③ 시장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광역센터의 설치·운영, 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역보조기기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보조기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활용 및 보급과 센터 이용 등에 관한 홍보
2. 이용자 상담, 평가, 사용훈련, 사후 관리 등의 서비스
3. 보조기기의 보급, 대여, 전시체험장 운영
4.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5. 보조기기 맞춤 제작, 개조, 수리 서비스
6. 보조기기 이용자 및 이용실태 관련 모니터링
7. 보조기기 후원 연계를 위한 재원 확보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기기 관련 사업
- ② 시장은 장애인등의 지역센터에 대한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권역별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역센터의 설치·운영, 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광역센터와 지역센터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운영할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보조공학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과 객관적 경험을 보유한 법인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광역센터와 지역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광역센터와 지역센터는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광역센터와 지역센터 내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비용 감면 등) ①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보조기기 임대 및 맞춤 제작 등 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보조기기 임대료 등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받은 비용은 보조기기 관련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고용 승계 등)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설립할 경우 광역센터와 지역센터의 인력이 고용 승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립된 서울시보조공학 서비스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노인 등에게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 촉진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원활한 자립 활동을 지원하여 장애인·노인 등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보조기기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보조기기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연수,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광역보조기기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 나. 보조기기의 활용 및 보급과 센터 이용 등에 관한 홍보, 이용자 상담, 평가, 사용훈련, 사후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 다.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위탁 운영 근거와 위탁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라. 광역센터와 지역센터의 공동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조기기 임대 및 맞춤 제작 서비스 이용 비용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설립할 경우 광역센터와 지역센터 인력의 고용 승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391호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5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 조례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통역을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수어통역”이란 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및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기관과 투자기

관,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의미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를 체계화하고 농문화를 보존 육성하는 등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언어인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 등”이라고 한다)의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한국수화언어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청각장애인 등 편의증진) ①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수어통역 등을 필요로 하는 청각장애인 등이 요청할 경우 시장은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서울특별시 시정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활동 홍보 등을 위한 영상물은 한국수어와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물의 특성상 한국수어와 한글자막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작할 수 있다.

제7조(수어통역 전문인력 보호) 시장은 한국수어 통역사 인력양성과 역량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고, 한국수어 통역사 등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편의시설 설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을 원활하게 하고, 정보통신·의사소통 등 편의가 제공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가. 2016년 2월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었으나, 수화언어통역을 통한 차별금지 및 기회균등의 보장을 위한 구체성이 없고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음

나. 이에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과 한국수어사용자를 위하여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과 시설에 수어 통역이 가능한 인력과 시설을 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국수어의 사용촉진과 보급에 이바지하고 청각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권과 신체자유권을 보장함으로써 평등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한국수어를 체계화하고 농문화를 보존 육성하는 등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안 제3조)

나. 서울특별시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및 시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출연기관, 출자기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함(안 제6조)

라. 시장은 수어통역사 및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함(안 제7조)

마. 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위해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시민 등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392호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운송사업자
5.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 법 제1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운수종사자

제10조 후단 중 “형사처벌”을 “형사처분”으로 한다.

별표 1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 행위	포상금	비고
1.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제3조제1호)	100,000	
2.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제3조제2호 및 제3호)	150,000	
3.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 (제3조제4호 및 제5호)	200,000	
4.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제3조제6호 및 제7호)	150,000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 (제3조제8호)	200,00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상위법령 개정안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3조제4호 및 제5호)

나. 신고포상금 대상 확대(안 별표1 제3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6393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5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효율적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장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 설치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및 홍보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3.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권 향상과 문화적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 확대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394호

서울특별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5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 제6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외소재문화재”란 서울특별시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8항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2천년 고도의 역사를 고려한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재의 체계적 보호 및 환수와 환수된 후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환수활동 및 실태조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외소재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견이나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자료제공)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환수 후 관리) 시장은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재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정 문화재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한 전문 인력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사업
2.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에 대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조체계 구축)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문화재청, 국외소재문화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국제박물관협의회 등 관련기관·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시에서 국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 환수를 추진하거나 환수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외에 소재한 우리 문화재 환수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나.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동 및 환수 후 관리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6조)
- 다.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동 관련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국외소재문화재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마.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395호**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결격사유) ① 위원 중 심의·자문 등과 관련한 안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전의 심의·자문 등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전의 공정한 심의·자문 등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전의 심의·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자문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장기 불참, 직무상 비밀 누설 및 남용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촉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결격사유를 규정하여 위촉위원에 의한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제1항제4호 의거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 결격사유·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제1항~제3항, 5항).

나. 현행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규정을 수정함(안 제9조제4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6396호**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할 경우 실내조명기기는 LED 제품을,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할 때 실내조명기기의 경우는 LED제품을 사용하고,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의 경우 고효율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 다양한 조명 설치를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실내조명기기는 LED제품을 사용하고,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의 경우 고효율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함. (안 제15조제3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6397호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차단위구획"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말한다.
6. "이동형충전기"란 벽면이나 지면에 고정하지 않고 이동하며 사용가능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은"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 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중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을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의 공유재산 제공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충전시설 설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을 갖춘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충전시설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권고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18조의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
2.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 ② 제1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건축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 건축계획 또는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2. 「주차장법」 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설치 여부

3.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5조의3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여부
4.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충전시설의 종류) ① 충전시설의 종류는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한다.

② 이동형충전기를 접속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를 완속충전시설의 설치로 본다. 다만, 「주차장법」 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충전시설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인증 또는 신고를 완료한 충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충전시설 설치비용) ①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한다.

②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의 3%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 비율에 따른 충전시설의 개수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10개까지만 설치하여도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③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로서 주차단위구획이 200개 이상인 시설의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 중 1개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하여야 한다.

④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로서 이전 또는 철거 등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시설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전시설 설치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2제1항제1호는 이 조례 시행 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한 시설,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시설 또는 「주택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초미세먼지에 따른 건강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배출원별 영향이 교통 분야가 52%를 차지함에 따라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8년까지 전기자동차 12,020대를 보급할 계획에 있음.

전기자동차 보급은 충전인프라 확충 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원활한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서는 충전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므로 최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대상, 종류 및 수량 등을 규정함에 따라 동 조례에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며, 공영주차장 등 서울시 및 자치구가 보유한 공공재산을 활용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경감함으로써 민간의 충전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주차단위구획” 및 “이동형충전기”에 대한 용어 정의(안 제2조제5호 및 6호)
- 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율에 대한 권고 사항 규정(안 제4조제3항)
- 다. 충전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의 필요한 조치 사항 및 연간 대부료의 요율 규정(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 라. 충전시설 설치대상 규정(안 제7조의2)
- 마. 충전시설 종류 규정(안 제7조의3)
- 바. 충전시설 설치비용 규정(안 제7조의4)

◆ 서울특별시조례 제6398호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기록부의 비치) 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록부에는 제17조에 따른 표창수여 사실 확인서 교부사실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본 개정안은 표창수여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수여사실 확인과 관련된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표창수여 및 표창수여 사실확인서 교부 기록부 작성 및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창수여기록부 작성 및 관리에 대한 근거마련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의2 제1항)

나. 제1항의 기록부에는 제17조에 따라 표창수여 사실확인서 교부사실이 포함되도록 하여 표창수여 사실확인서 교부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7조의2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6399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호 중 “2003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8조제4호 중 “2003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8조제8호 중 “2003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현행 조례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매각가능 항목 중 일부 항목의 기준일이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일과 불일치하여 이를 일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제38조제1호의 경우에 대한 기준일을 현행 2003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으로 변경함.(안 제38조제1호)
- 나. 제38조제4호의 경우에 대한 기준일을 현행 2003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으로 변경함.(안 제38조제4호)
- 다. 제38조제8호의 경우에 대한 기준일을 현행 2003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으로 변경함.(안 제38조제8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6400호**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제12조 제1항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및 동법 제11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법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한다.

1.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협동조합기본법 제102조 제1항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합병·분할은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운영지원 및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그 사업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지역공동체의 회복 및 사회통합은 물론 사회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에 대해서 법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안 제12조 제2항 본문)

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해산 사유(합병·분할은 제외)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감된 법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하도록 함(안 제12조 제2항 단서)

◆ **서울특별시조례 제6401호**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5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에게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관광지원기본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지원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지원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지원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지원에 따른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관광활동지원)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에 따라 장애인의 관광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관광 활동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민간참여의 촉진) 시장은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편성) 시장은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지원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시장은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지원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에게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의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지원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장애인 관광활동지원을 규정함(안 제5조).
- 다. 민간참여 촉진을 규정함(안 제6조).
- 라. 예산편성을 규정함(안 제7조).
- 마. 표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402호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5일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내표지 설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간접흡연은 폐암, 심혈관계 질환 등 각종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담배연기와 쫄쫄 등으로 인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권, 건강권 침해 소지가 심화되고 있는 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이 지정된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이 지정된 경우, 안내표지 설치 경비 일부를 시장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제4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6403호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5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며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서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및 산하기관이 웰다잉 문화조성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령자 등 시민 스스로 미리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2.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시민의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무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삶을 완성시키는 마무리로 인식되어 감에 따라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바,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임(안 제1조).

나.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해 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시 및 산하기관이 웰다잉 문화조성에 부합하여 운영되도록 만들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4조).

라.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탁할 수 있음(안 제5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404호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유족”이라 함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에 따른 사람을 의미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등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및 뇌사 또는 사망으로 인한 장기등기증자의 유족에게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기등기증자의 추모공원 및 조형물 조성과 그 외 장기등기증자의 추모 및 기념과 관련한 사업
2. 뇌사 또는 사망으로 인한 장기등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② 제1항 각호 장기등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사업 추진하기 위해 기관·단체를 지정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0조 제2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2. 제11조 제1항 각호 사업
3. 제12조 제3항 사업
4. 그밖에 장기등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형식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가 목적으로 하는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예우가 부족한 것이 현실임.

나. 또한, 현행 조례는 구체적인 근거조항들이 부족하여 제3조의5항 및 제14조를 신설하여 집행에 구체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

다. 현행 조례에서 뇌사장기기증자의 장기기증에 대한 예우가 형식적으로 되어 있어 이

를 수정하고 생명나눔을 실천한 시민에 대한 예우를 구체화 하여 생명나눔문화가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중 장기기증자의 장기기증 후 예우에 대한 내용(제11조)의 개정을 통하여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관련 법적인 근거를 강화함.
- 나. 장기등 기증자의 유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제3조).
- 다. 뇌사 또는 사망 장기등기증자로 예우의 대상을 구체화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게 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장기등기증자의 예우관련 사업을 확대시킬 수 있게 함.
- 라. 지원의 대상 및 방법에 장기등기증자의 유족을 포함하며 그 방법을 심리지원으로 하여 지원의 방법을 확대함.
- 마. 예우의 대상을 생명나눔(뇌사 또는 사망으로 인한 장기기증)을 실천한 사람으로 구체화하고 생명나눔을 실천한 시민에게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
- 바. 예우 및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제11조 제2항의 개정을 통해 시장에게 권한을 부여함.
- 사. 제14조를 신설하여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의 구체적 법적근거를 확보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6405호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제대혈기증의 철회 시기와 방법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제대혈기증의 동의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산모는 제대혈을 채취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제5조제4항(중전의 제3항) 중 “기증동의서등”을 “기증동의서 등”으로, “규칙”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2항제2호나목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를 각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상위법의 입법취지와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수정하여 법령체계 정당성의 원리에 따라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법령 상호 간 규범 구조와 내용면에서 서로 충돌하거나 모순되지 않도록 발의된 안전에 반영되지 않은 타법 개정 사항 등 일부 조문을 삭제 또는 수정.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의 법령체계를 따르도록 수정함(제5조).

나.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아 「지방자치법」에 합치되지 않는 조항을 삭제(제12조, 제13조, 제14조).

다. 타법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함(제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406호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5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간건축물의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지진안전성 표시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지진안전성 표시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제1호의 건축물과 그 밖의 건축물(주택을 포함한다) 중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진안전성”이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지진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2. “민간건축물”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민간이 소유한 건축물을 말한다.

3. “내진성능평가”란 건축물이 관련 내진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내진성능 확인서”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진성능평가 등을 실시하여 해당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확인해 주는 서류를 말한다.
5. “총괄기관”이란 지진안전성 표시제의 운영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시 안전총괄본부를 말한다.
6. “추진기관”이란 지진안전성 표시제의 운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홍보, 개선 등 해당업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시 주택건축국을 말한다.
7. “확인기관”이란 지진안전성 표시제의 신청접수·확인업무를 수행하는 자치구청을 말한다.
8. “신청인”이란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을 신청하는 사람 또는 법인으로써 해당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간건축물의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시책을 수립하고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2장 신 청

제5조(확인신청 등) ① 지진안전성 표시제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확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확인신청(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내진성능 확인서 및 이에 첨부되는 서류
- ② 별지 제2호 서식의 내진성능 확인서 중 내진성능 평가자는 건축구조분야 기술사가 되며, 내진성능 확인자는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대표자가 된다.

제6조(처리기한) ① 확인기관은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확인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확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확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신청인이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서를 반려 할 수 있다.

제3장 확 인

제7조(확인) ① 확인기관은 제5조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내진성능을 확보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② 확인기관은 제1항의 실적을 매연도 종합하여 추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추진기관의 장

은 즉시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확인기관의 장은 지진안전성 표시제 신청서류 등에 대한 종합검토를 위하여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확인기관의 위험도 평가단에 의뢰하거나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취소 및 청문) ① 확인기관은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교부한 이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를 즉시 취소할 수 있다.

1. 건축(증축, 개축 등), 용도변경, 대수선 등으로 구조의 변경이 발생하여 종전의 신청서류로 내진성능을 확인할 수 없게 된 경우
2. 종전의 신청서류에 정보나 문서가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확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장 기 타

제9조(활용)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은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로고를 활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명판을 부착할 수 있다. 이 경우 명판의 제작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정보공개) 시장 또는 확인기관의 장은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 교부 사실을 시 또는 확인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공개에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과 시행 후 법 제16조의2와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서를 발급받은 민간건축물은 이 조례에 의해 내진성능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지진안전성 표시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기본사항	건축물 명		건축주	
	위치			
	용도		건축면적	m ²
	연면적	m ²	지상1층 바닥면적	m ²
	지상1층고	m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구조형식		사용승인일	년 월 일

내진보강 관련사항	주요공법	
	시공기간	~
	시공사	대표자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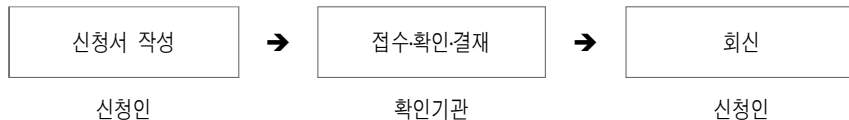
신청인

(인)

확인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1. 내진성능 확인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내진성능 확인서

1. 기본사항					
1) 건축물의 명칭 :			2) 건축물의 용도 :		
3) 건축물의 위치 :			4) 건축물의 구조형식 :		
5) 층수 : 지하 층, 지상 층			6) 건축물의 증축 여부 :		
7) 연 면 적 : m ²			8) 준공년도 : 경과연수 년		
9) 지진구역 : 중요도(내진등급) :			10) 지반종류* :		
11) 기초형식 :			12) 내진보강공사 주요공법 :		
2. 내진성능 평가시					
1) 내진성능평가 내용 : DCR** 값 가장 불리한 값을 기재하고,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수준***이상인 경우 만족, 그렇지 않은 경우 불만족으로 기재					
1단계 평가		2단계 평가		3단계 평가	
DCR 값	성능수준	DCR 값	성능수준	DCR 값	성능수준
X방향 =		X방향 =		X방향 =	
Y방향 =		Y방향 =		Y방향 =	
2) 내진성능평가 결과 : ()단계 내진성능 평가결과 ()이상으로 내진성능 확보되었음.					
첨부서류 : 가. 내진성능평가서 1부					
나. 내진성능 평가자 및 확인자의 자격요건 증빙서류 1부					
3. 내진보강 완료시					
1) 내진성능 확인 내용 : 건축구조기준(KBC2009)에 적합하게 내진설계가 적용 되었는지 확인 - 준공검사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참고하여 내진성능 확보 여부 확인					
2) 내진성능 확인 결과 : 건축구조기준(KBC2009)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내진성능이 (확보, 미확보)되었음.					
첨부서류 : 가. 내진보강공사 완료보고서(내진성능 확인자 서명), 준공검사서 등 내진성능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내진성능 평가자 및 확인자의 자격요건 증빙서류 1부					
* 지반의 종류에는 암반, 매우 조밀한 토사지반, 단단한 토사지반, 연약한 토사지반, 매립 지반 등으로 기재 ** DCR 값 =요구성능/보유성능 ***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수준 : 즉시거주, 인명안전, 붕괴방지 위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한 결과 또는 내진설계 적용 확인 결과 내진성능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내진성능 평가자 : 소 속 : 기술자격 : 성 명 : (인 또는 서명) 내진성능 확인자 : 소 속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확인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칭		건축주	
	건축물 위치			
	건축물 용도		건축물 구조형식	
	층 수		연 면 적	
	준공년도		경과년수	
내진성능 평가	지진구역		지반종류	
	()단계 내진성능 평가결과 ()이상으로 내진성능 확보			
내진설계 (보강) 완료	지진구역		지반종류	
	내진성능 수준		주요공법	
	내진보강 시기		내진보강 시공사	
내진성능 확인자				
위 건축물은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기관의 장 직인				

210mm × 297mm [백상지 120g/㎡]

[별지 제4호 서식]

지진안전성 표시제 로고



글씨체

가. 내진설계 건축물 : 누리

나. 서울특별시 : 견고덕

다. Earthquake Resistant Building : 누리

2. 컬러

Main Color

Sub Color



C: 60 Y:100



K: 80



C: 90 M:80

비고 : 재질은 아크릴, 동판 등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규격은 표지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그리드스케일에 의거 축소 및 확대가 가능함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2016.9.12.일 경북 경주 일대에서 일어난 리히터 규모 5.8의 지진과 이에 따른 여진으로 인하여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상황에서, 2016.6월말 기준으로 서울의 민간건축물 중 내진확보율은 불과 26.8%에 지나지 않아 지진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만일의 지진발생으로부터 민간건축물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안 제1조).

나. 지진안전성 표시제 적용대상을 민간건축물(주택 포함)로 함(안 제2조).

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

라. 시장과 자치구청장의 책무로 정책 수립과 홍보 의무를 규정(안 제4조).

마. 지진안전성 표시제의 확인신청 및 내진성능 평가와 내진성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바. 신청서 접수후 30일 이내의 처리기한을 둠(안 제6조).

사.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 교부와 확인기관의 실적 제출의무 및 신청서류에 대한 종합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7조).

아.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 취소 및 청문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자.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이 규정된 로고를 적용한 명판을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9조).

차. 시장으로 하여금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 교부 실적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카. 시장으로 하여금 업무 일부를 구청장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40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 중 “제50조제2항”을 “제50조”로 하고,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이”를 “추진위원회위원장이나 조합임원 또는 신탁업자가”로 한다.

제4조의3제3항제3호나목 중 “조합이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최초 설립인가를 말한다)를 받은 날”을 “사업시행자가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최초 설립인가를 말한다)를 받은 날 또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날이나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날”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조합이”를 “사업시행자가”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개최”를 “개최(법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갖춘 경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조의3제3항제4호에 따른 해제 요청은 2017년 3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직권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의 규정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준공업지역과 상업지역(준공업지역과 상업지역 면적이 과반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4의 규정은 조합(조합이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한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직권해제 요건인 총회 개최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함
- 조합이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구역 또한 일정 기간 사업지연이 되는 경우 직권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정비사업의 단계별 지연을 판단하는 기준 중 총회 개최 인정범위를 명확히 하고,
- 조합이 구청장, 주택공사 등과 공동 시행, 구청장 직접시행 또는 지정개발자 등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에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등 지정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도 직권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임

◆ 서울특별시조례 제6408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호를 같은 조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4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과 영 제50조제1호에 따른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권리명세 및 이에 대한 청산방법 작성 시, 제42조의5에 따른 협의체 운영 결과 또는 법 제77조의3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 등 세입자 및 토지등소유자와 진행된 협의 경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장에 제42조의5 및 제42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5(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 대상자 또는 법 제30조제4호에 따른 세입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이주대책, 현금 청산 및 손실보상 협의 등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성하며,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전까지 3회 이상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다.

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협의체의 위원장은 제2호의 전문가 중 1인을 호선한다.

1. 해당 자치구에서 정비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상 공무원
2. 법률, 감정평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 분야별 전문가

④ 협의체 회의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전부 또는 일부가 참석한다.

1. 사업시행자
2. 법 제48조제5항, 영 제48조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 등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
3. 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 받는 자
4. 법 제30조제4호에 따른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 대상 세입자
5. 기타 구청장이 협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주거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액 등
2. 상가세입자에 대한 영업보상액 등
3. 법 제47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서 현금으로 청산 받는 금액(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한 금액) 등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제2항에 따라 협의체가 3회 이상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구청장은 법 제77조의3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 결과 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협의체 구성 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협의체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의6(이주관리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 법 제40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결과, 명도소송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집행법원에 인도집행을 신청하거나 집행일시지정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도집행 과정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4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착공신고를 완료한 구역은 제외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한 경우에는 제42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운영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구역 중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사전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이주대책 협의부터 집행까지 이주 과정에 대한 공공의 관리감독을 강화함.

2. 주요내용

- 관리처분계획서 작성 시 현금청산 및 손실보상 금액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결과 등 협의 경과를 첨부토록 함
- 구청장은 현금청산자 또는 세입자와 사업시행자간의 이주대책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운영토록 하고, 시장은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도록 함
-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 후의 원만한 이주 등을 위해 조합 등은 수용재결, 명도소송 및 인도집행 등에 관한 진행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인도집행 과정에 공무원을 입회토록 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6409호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광화문광장 내에 조형물등(이 경우는 “영구조형물”을 말한다)의 건립 및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현재 광화문광장 내의 동상 및 조형물 등에 대한 관리와 관련하여 동상 및 조형물 등을 새롭게 세우거나 이전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광화문광장 내 조형물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따름.

나. 이에 시장의 관리의무에 광화문광장 내 영구 조형물 등의 신규 설치 및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위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은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도록 규정함.

2. 주요내용

광화문광장 내 설치된 동상 및 부속 조형물 등(영구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에 관한 내용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명시

◆ 서울특별시조례 제6410호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와 제2호 및 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하여는”과 “범위 안에서”를 각각 “대해서는”과 “범위에서”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매 5년마다”를 “5년마다”로 한다.

제12조제8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6조제4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2호 중 “총공사비 5억원”을 “5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0㎡”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25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6. 도시공원위원회 : 법 제30조제1항제7호 중 도시공원내 건축물

제26조제1항제4호 중 “인정하는”을 “인정할”으로 한다.

제27조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공공건축물에 대한 시 또는 구 건축위원회의 경관심의’ 대상을 ‘총공사비’에서 ‘층수’ 또는 ‘연면적’ 기준으로 변경하되, 서울시 및 시 산하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층수나 연면적에 상관없이 시 건축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시 건축위원회로 심의 대상이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고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자율권을 확대하고자 함.
-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공건축물에 대한 시 건축위원회의 경관심의 대상을 ‘총공사비 5억원’에서 “5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으로 하되, 시장(산하기관장 포함)이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층수나 연면적에 관계없이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함(안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 나. 서울특별시장(시장)이 지정하는 경관관련 위원회에 ‘도시공원위원회’를 추가 하여 현재 건축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도시공원내 건축물에 대해 경관심의를 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제6호 신설).
- 다. “당해”를 “해당”으로 하는 등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자어 등을 알기쉬운 용어로 정비함(안 제8조, 안 제9조제2항, 안 제12조제8항, 안 제16조제4호, 안 제21조제3항, 안 제25조제4항제4호, 안 제26조제1항제4호, 안 제2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411호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시민”을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시는”을 “시장은”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주요 시책을 수립할 때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서면, 인터넷, 공청회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업”을 “사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에 시민의 참여와 의견청취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일부 표기상 오류가 있는 바,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조성 정책 및 기본계획수립에 시민의 참여와 의견청취를 위한 규정을 추가하고 표기상 오류를 수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시민”을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으로 수정함.(제3조제3호)

나. “시는”을 “시장은”으로 수정함.(제4조제2항)

다.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주요 시책을 수립할 때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4조제3항)

라.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서면, 인터넷, 공청회 등으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제5조제4항)

마. “서업”을 “사업”으로 수정함.(제7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6412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장기전세주택”을 “서울공공주택 공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한다.

2.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매입하는 주택

제8조제2항 및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서울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라 인수되는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제3항에 따라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인수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한 소형주택
2. 「주택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인수하는 임대주택

제8조제2항부터 제4항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경과규정) 조례 시행일 기준 시장과 사업시행자 간에 계약이 체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제3항에 따른 재건축소형주택이나 「주택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현재 재건축사업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유형이 “장기전세주택”으로 한정되어 단일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만 지속되고 있고, 재정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바,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전세주택 공급 방식을 정함(안 제8조제1항)

나. 서울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시장이 주택재건축사업 등으로 부터 인수하는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위임함
(안 제8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6413호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국가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을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회계의 세출은 법 제17조제2항 및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현행 조례 중 인용조문의 띄어쓰기 오류를 수정하고,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조항을 상위 법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용조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법률(안 제1조) 및 시행규칙(안 제2조제2호)의 띄어쓰기 오류를 수정함
- 특별회계 세입조항을 관련 상위법(「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국가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을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으로 정비함.(안 제4조제1항제1호)
- 특별회계 세출조항을 관련 상위법(「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반영하여 정비함.(안 제5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6414호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와 수도시설의 보호에”를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와 수도시설의 보호 등에”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급수구역내”를 “급수구역 내에”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제1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이나 별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임 규정 없이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동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함(안 제16조)
- 과태료 징수에 대한 권한위임 규정을 삭제함(안 제17조제2항제11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6415호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공업용수 사용자 등은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계량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이미 조정한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사무위임)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사무를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본부장은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별표 4에 따라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위임사무(제10조 관련)

1.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 가. 제3조에 따른 공사의 시행
 - 나. 제4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업무
 - 다. 제5조에 따른 계량기의 이상 시험
 - 라. 제7조에 따른 급수관 구경별기본요금 업무
 - 마. 제9조에 따른 다른 조례의 적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에서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근거 없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계량기 시험 결과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이 부담하도록 하며,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사무의 일부를 조례에 직접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위임할 사무를 조례에 직접 규정함.
2. 주요내용
 - 가.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이상 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시험결과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 부담으로 함(안 제5조)
 - 나.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조례에 직접 규정함(안 제10조, 별표 4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6416호**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시장이 설치·운영 중인 아리수 음수대의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리수 음수대의 수돗물을 수질기준의 정한 바에 따라 수돗물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아리수 음수대의 위생 및 유지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장은 아리수 음수대의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6417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 희 연 인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248”을 “7,179”로, 같은 조 제2호 중 “6,783”을 “6,714”로 한다.

제4조 중 “(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을 삭제한다.

제5조 중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을 삭제하고, “규칙”을 “교육규칙”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 문 경력관	연구직	
							연구관	연구사
비 율	2% 이내	8% 이내	30% 이내	36% 이내	23.5% 이상	0.2% 이내	0.03% 이내	0.27% 이상

2. 기능직공무원: 삭제**3. 연구직공무원: 삭제****4.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6급상당
비 율	50% 이내	50% 이상

5. 특정직공무원

구 분	장학관 · 교육연구관	장학사 · 교육연구사
비 율	30% 이내	70% 이상

[별표 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 계	7,179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6,716				
23급	1		1		
3급	9		9		
34급	3		3		
4급	37		26	11	
45급	7		7		
5급 이하 소계	6,636				
전문경력관 소계	9				
연구사 소계	14				
별정직 계	2				
5급상당 이하 소계	2				
특정직 계	460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50		28	22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41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2016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감소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정원 감축
 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에 포함하여 규정
 다.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비서·비서관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축소하는 등의 「지방공무원법」(2013.12.12. 시행) 개정 내용 반영

2. 주요내용

-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감축(제2조): 감 69명
 1) 일반직 정원 감축: 감 71명 (6,783명 → 6,712명)
 2) 별정직 정원 책정: 증 2명 (0명 → 2명)
 나. 별정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신설(제3조 관련 별표 2)
 1) 5급상당 (50% 이내), 6급상당 (50% 이상)
 다. 연구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보완

◆ 서울특별시조례 제641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 회 연 인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교원으로”를 “교원과 퇴직교원으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우리교육청이 교직원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인 아동과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교직원단체 정의를 변경함(제2조제2호)

[훈 령]**◆ 서울특별시훈령 제1002호****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추진”을 “추진, 화해·조정”으로 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 ①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는 자 및 이해관계자는 법률에 따라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감사 관련 소명서에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은 전체를 대표할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또는 연명으로 감사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개정이유**

적극적으로 국민 불편,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적극행정 면책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면책대상을 감사대상 업무 전반의 모든 처분으로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감사규칙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 중에서 면책대상을 명시한 조항 삭제(제3조제4호)
- 나. 적극행정 면책 기준 중 “화해·조정” 문구 추가(제6조제1항제1호)
- 다. 감사를 받는 자가 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제13조의3)

◆ 서울특별시훈령 제1003호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상감사 대상업무(제4조 관련)

구 분	대 상 업 무
1. 계약업무	가.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 나. 추정가격 15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및 문화재공사 다.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는 축제·행사 대행용역은 1억원 이상 라.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설계용역의 업체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 마.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인 물품제조·구매(조달구매 제외) 바.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지명경쟁입찰 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1인견적 수의계약.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1) 재공고입찰 결과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2) 설계공모 당선자와의 수의계약

구 분	대 상 업 무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의 수의계약 아. 다목, 바목 및 사목에 불구하고 학술용역은 제외 ※ 계약(원가)심사,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등과 관계없이 일상감사 의뢰 시점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일상감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2. 민간위탁사업	가.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신규 민간위탁사업 나.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재위탁사업 ※ 재위탁이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	가. 보조금 1억원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 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시행하는 보조금 5억원 이상인 보조사업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에 한한다.
4. 안전관리계획	가. 순간 최대 관람객이 3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행사 나. 산, 수면, 수변 등 위험지역에서 개최하는 축제·행사 다. 불, 폭죽, 석유류, 가연성 가스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축제·행사 라. 자동차, 자전거, 무선 비행장치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장비를 사용하는 축제·행사
5. 시책사업 등	가. 대규모 예산사업, 시민생활 규제 및 인·허가업무, 민원발생 업무 등 감사위원회에서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사업 나.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뢰한 사업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가. 위험지역 개최, 위험물질 및 장비를 사용하는 축제·행사의 안전관리계획과 행사 대행용역을 일상감사 대상에 추가하여 축제·행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
- 나. 일상감사의 실효성이 낮은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의 수의계약과 공공단체 보조 사업을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일상감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 다. 학술용역을 입찰 및 계약방법(일반입찰, 지명입찰, 수의계약)과 관계없이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학술용역심사와의 중복심사를 배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순간 최대 관람객이 3,000명 미만이라도 산, 수면, 수변 등 위험지역 개최행사와 폭발성 물질 및 자동차, 자전거 등 위험장비 사용 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일상감사 대상에 추가(안 별표 1 제4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 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는 1억원 이상 축제·행사 대행용역을 일상감사 대상에 추가(안 별표 1 제1호 다목)
- 다.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과의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안 별표 1 제1호 사목)
- 라. 보조사업 일상감사 대상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함(안 별표 1 제3호)
- 마. 학술용역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는 공사를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안 별표 1 제1호 아목)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3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상위법 및 조례의 개정사항 미반영 등 정비가 필요한 규칙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우리시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및 조례의 개정 사항 미반영된 조문 개정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법무담당관[전화: 02)2133-6692, FAX: 02)2133-0821, E-mail : skyna228@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7호**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공보실장을 언론홍보실장으로 변경하고 신설되는 시민권익담당관 업무를 새로이 분장(안 제2조, 제3조, 제6조)

나. 신규 부서설치에 따른 부서간 업무 이관 및 의사담당관, 입법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 신규 업무 추가 반영(안 제5조, 제7조, 제8조)

다.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및 회의 규칙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회 용어를 본 규칙에 적용하여 의회 용어의 일관성 확보 등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 (참조 : 기획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획담당관(전화 : 2133-6632, FAX : 2133 -0818, E-mail : kscipio@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0호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 공공미술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추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으로 ‘살고 싶은 도시, 서울’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6조)

- 심의대상은 서울특별시 소유 또는 관리의 공공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미술과 시가 직접 추진하는 공공미술로 함
-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사업도 신청이 있으면 심의 가능

나. 공공미술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9조)

- 기능, 구성, 운영, 실무위원회 설치, 민간전문가 운영 등

다. 건축물 미술작품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제27조)

- 심의신청은 건축허가 또는 승인 신청시에 같이 제출하도록 함
- 미술작품 설치절차 및 권한의 위임 등
-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

라. 공공미술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28조~제31조)

마. 부칙(안 제1조~10조)

- 시행시기, 다른 조례의 개정 및 폐지, 경과조치, 위원회 존속기한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디자인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디자인정책과(전화: 02)2133-2710, FAX: 02)2133-1065, E-mail: silki1231@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2호**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장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무분별한 행사·축제 개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심사결과 재검토 내용에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 반려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투자사업 심사대상 범위 확대(안 제3조)

- 시·자치구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관련되는 투자사업 대상금액을 3억원 이상으로 하향(강화) 조정

나. 투자심사 전 반려근거 강화(안 제8조)

- 투자사업의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종전의 투자심사 결과 제1항제3호에 따른 재검토 통보를 받고 그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
- 투자심사의뢰서에 통계자료의 왜곡 또는 주요 자료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경제성·재무성 분석 결과 등 타당성 조사 내용에 명백히 오류가 있는 경우
-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투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재정관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재정관리담당관(전화:02)2133-6870, FAX:02)2133-0825, E-mail: nks9538@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6호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 행정자치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본청의 사업소 대행계약 범위 확대, 회계서류 서식 통합·간소화 및 기타 서식 개정,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원활한 회계업무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회계관계공무원에 회계책임관 및 통합지출관 추가(안 제2조)

나. 재무국장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안 제3조)

다. 예산담당관은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 및 세출예산배정(재배정) 통지서를 자금배정 권한이 있는 통합지출관에게도 통지(안 제8조, 제9조)

라. 지방회계법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납입된 수입금은 당해연도 징수결정액에 포함(안 제24조)

마.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을 위해 수입금 발생 시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안 제29조)

- 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소요자금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40조의4)
- 사.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지급명령의 명칭 변경(안 제47조, 제48조, 제97조, 제98조 내지 제101조)
- 아. 출납공무원은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해서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수입금을 금고에 수납(안 제24조의2)
- 자. 대가 지급 시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채권자를 확인할 만한 서류에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안 제44조)
- 차. 신용카드 및 인터넷을 통한 물품 등 구매 시 200만원 이하의 경우 일반지출결의서 사용 가능(안 제109조)
- 차. 100만원 이하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에 서명으로 날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132조)
- 카. 회계서류 서식 통합 및 전자화(안 제31조)
- 타. 분청의 사업소 대행계약 범위 확대(안 제3조)
- 파. 별지 제19호의2, 제23호, 제24호, 제32호, 제47호, 제48호, 제52호 및 제52호의2 서식 개정 및 별지 제70호 서식 삭제
3. 의견제출
-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무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0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전화 : 02-2133-3216, FAX : 02-2133-1029, E-mail : tree830@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36호

특별건축구역지정 고시

서울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내 4단지, 6단지, 7단지, 8단지, 9단지, 11단지, 13단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7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목적, 위치, 면적 등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장

1. 지정목적

- 가. 조화롭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건축을 통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및 디자인 수준 향상, 공동주택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고,
- 나. 주거와 건축에 대한 시민의식수준 및 생활환경에 대한 높아진 기대치에 따라 미래 서울 도시주거의 대안을 제시함과 새로운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아파트지구명	위 치	사업명	사업면적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강동구 강일동 114 일원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4단지	45,390㎡
	강동구 강일동 215 일원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6단지	48,269㎡
	강동구 강일동 91 일원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7단지	37,598㎡
	강동구 강일동 66 일원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8단지	34,677㎡
	강동구 강일동 산22-36 일원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9단지	12,615㎡
	강동구 상일동 36-3 일원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11단지	13,500㎡
	강동구 상일동 산2-3 일원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13단지	24,211㎡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사업명	용도	사업면적	최고층수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4단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45,390㎡	25층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6단지		48,269㎡	21층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7단지		37,598㎡	20층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8단지		34,677㎡	22층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9단지		12,615㎡	15층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11단지		13,500㎡	22층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13단지		24,211㎡	23층

4. 특별건축구역내 특례적용

구분	특례적용 법령	특례적용 사항	적용취지	적용단지
건축법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적용 배제	불합리한 공공공간을 개선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폐율 적용배제함	6단지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적용 배제	다양한 공공 공간 계획을 가능하도록 하고 주민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세대수 등의 전용공간 증가 없이 용적률 적용배제함	4단지, 7단지, 8단지, 9단지, 11단지, 13단지
	제58조 (대지안의 공지)	적용 배제	보행자전용도로변의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한 1층 특화세대의 경우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걷고 싶은 길을 만들기 위하여 대지안의 공지 적용배제함	4단지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 배제	일률적인 법률 적용시 고층과 중저층이 혼합되어 있는 새로운 주거단지 및 건축물의 형태 구현에 제약이 따름. 이러한 제도적인 제약을 벗어나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건축물 배치 및 다양한 건축물 형태와 높이계획을 위하여 높이제한 적용배제함	4단지, 6단지, 7단지, 8단지, 9단지, 11단지, 13단지
주택법	제10조 (공동주택의 배치)	적용 배제	보행자전용도로변의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한 1층 특화세대의 경우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걷고 싶은 길을 만들기 위하여 건축물과 보행도로의 간격을 2m 이내가 가능하도록 적용배제함	4단지

※ 단, 위 사항은 대상지 외부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상지 내부에만 적용함

5.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가. 건축물의 설계

- ☐ 설계공모방법 : 단지별 공동주택 현상설계공모
- ☐ 건축물의 설계 : 단지별 공모당선자가 고덕강일 총괄 MP기획회의를 거쳐 설계.

나.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의 발주 방법

- ☐ 공사감리 : 설계 및 디자인 의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건설사업 관리업무 시행(서울주택도시공사 공사감독자를 투입하여 해당 공사 전반의 감독업무를 수행)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직접감독을 통하여 공사감리 추진.
- ☐ 건축시공 등의 발주방법 :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제53호 의거, 공사에 대한 적절한 능력을 갖춘 업체의 시공실적·시공품질·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평가낙찰자 선정방식으로 발주하여, 설계의도 구현 및 현장품질 확보.

6.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기 고시된 [고덕강일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국토교통부 제2015-579호)] 기준

구분	항목·내용·사유	적용단지
지구단위 계획 시행지침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2-8〉 용적률 적용 배제 : 다양한 공용 공간 계획을 가능하도록 하고 주민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유도하기 위함	4단지, 7단지, 8단지, 9단지, 11단지, 13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2-8〉 건폐율 적용 배제 : 불합리한 공용공간을 개선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함	6단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2-8〉 평균층수 18층 이하 적용 배제 : 다양한 입면변화 및 창의적인 건축물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함	7단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2-19-2,3〉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적용 배제 : 단지별 건축가의 계획개념에 적합한 다양한 입면 변화 및 창의적인 건축물 디자인 유도	4단지, 6단지, 7단지, 8단지, 9단지, 11단지, 13단지

7. 기타 사항

- 특별건축구역지정과 관련한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전화 : 02-2133-7079), 강동구청 도시계획과(전화 : 02-3425-6023)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39호
재난위험시설의 해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대 상 시 설			해제 사유	지정 등급	안전점검·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시설명	소재지	소 유 자 (점유자관리자)			
조절저수지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막계동)	서울특별시	주요시설물 보수·보강 및 신설완료	D등급에서 A등급으로 변경	반기별 안전점검 실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41호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97호(2016.12.08)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지형도면 고시된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1.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가.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
- 나. 사무소 소재지 : 강남구 개포로 621(강남구 개포동 14-5)

2. 사업의 명칭 :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3. 사업의 시행목적

- 가. 집단 무허가 판자촌으로 형성되어 화재 및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하고,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구룡마을에 대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 나. 또한, 현지 거주민의 재정착 유도, 개발이익 공공환수, 투기세력 차단 및 현지거주민과의 협조체계 유지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함

4. 사업의 내용

-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266,304	100.0		
주거 용지	소계	121,165	45.5		
	공동주택	92,349	34.7		
	주상복합	23,481	8.8		
	근린생활시설	5,335	2.0		
도시기반 시설 용지	소계	134,461	50.5		
	공원	90,946	34.2		
		근린공원	77,202	29.0	
		소공원	13,744	5.2	
	녹지	3,241	1.2		
		연결녹지	3,241	1.2	
	광장	1,168	0.4		
	교육시설	9,877	3.7		
	종교시설	922	0.3		
	공공복합시설	5,085	1.9		
	유보지	440	0.2		
	주차장	1,602	0.6		
	저류지	(6,955)	(2.6)	공원내 중복결정	
	도로	21,180	8.0		
기타시설 용지	소계	10,678	4.0		
	의료, 연구 등	10,678	4.0		

5. 사업의 시행기간 : 구역지정일 ~ 2020.12.31

6. 사업의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 소유자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게재생략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97호(2016.12.08)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지형도면 고시된 사항과 같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호

도구머리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72호(1971.7.9)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391호(2003.12.15.)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된 도구머리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도구머리근린공원 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원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어린이집 부족으로 인한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지역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코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산75-3 일대

3. 면 적 : 69,578.4m²

4.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및 도면 : 따로붙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2133-2075) 및 서초구청 공원녹지과(☎ 2155-6861)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구머리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조서

가. 총괄조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산75-3번지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연 면 적				동수 (동)	바닥면적			연 면 적
계	69,578.40	5,090.00				82	69,578.40	7,213.99	1	190.67	483.50	82	
	8,260.00	2,740.00					9,911.26	4,391.26					
	7,880.00	2,360.00					9,531.26	4,011.26					증 1,651.26
	광 장	380.00	380.00				380.00	380.00					
조경시설													
휴양시설						24	1,650.06	1,650.06				24	증 1,650.06
유희시설							50.99	50.99					증 50.99
운동시설	2,350.00	2,350.00				31	931.01	931.01				31	감 1,418.99
교양시설							190.67	190.67	1	190.67	483.50		증 190.67
편익시설													
관리시설						27						27	
녹지/기타	58,968.40						56,844.41						감 2,213.99
참고사항	시설율	변경전 : 5,090.00㎡ ÷ 69,578.40㎡ × 100% = 7.31%(40%이하)					변경후 : 7,213.99㎡ ÷ 69,578.40㎡ × 100% = 10.37%(40%이하)						
	건폐율	변경전 : 0㎡ ÷ 69,578.40㎡ × 100% = 0.0%(15%이하)					변경후 : 190.67㎡ ÷ 69,578.40㎡ × 100% = 0.27%(15%이하)						

나. 시설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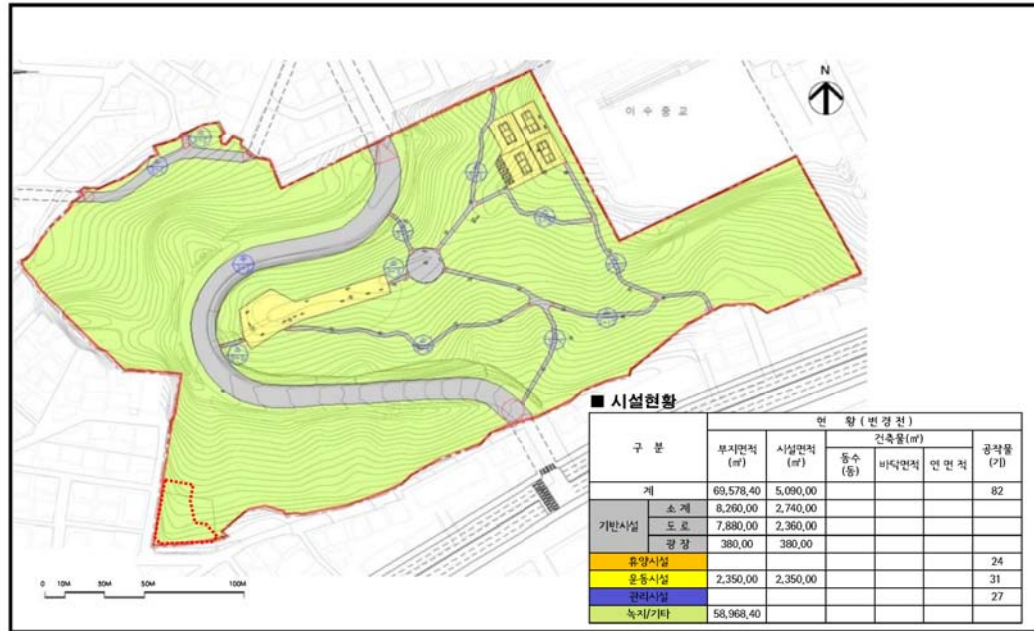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구조	동수 (동)						바닥면 적	연면적					
기반 시설	계			8,260.00	2,740.00							9,911.26	4,391.26						
	도로		산73-2외 7필지	7,880.00	2,360.00						산73-2외 7필지	9,531.26	4,011.26						증1,651.26
	광장	가	산73-139 산75-1	380.00	380.00						산73-139 산75-1	380.00	380.00						
휴양 시설	계											1,650.06	1,650.06						
	정자	나									산75-1	100.00	100.00					1	증100.00
	휴게소	다									산75-1외	1,550.06	1,550.06						증1,550.06
유희 시설	벤치		전지역							24	전지역								23
	계											50.99	50.99						
	놀이터	라									산75-3	50.99	50.99						증50.99
운동 시설	계			2,350.00	2,350.00							931.01	931.01						
	배드민턴장	바	산73-136 산73-139	1,110.00	1,110.00						산73-136 산73-139	350.00	350.00						감760.00
	체력단련장	바	산73-139 산75-1 산75-2	1,240.00	1,240.00					31	산73-139 산75-1 산75-2	581.01	581.01					31	감658.99
교양 시설	소계										190.67	190.67		1	190.67	483.50			
관리 시설	어린이집	사									산75-3	190.67	190.67		1	190.67	483.50		증190.67
	소계		전지역								전지역								27
녹지, 기타	가로등																		
	소계			58,968.40								56,844.41							
녹지, 기타	녹지			58,968.40								56,844.41							감2,123.99

다. 도로조서

구 분	등 급	류 별	번호	폭 원 (m)	연 장(m)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 계				1,772.63	4,011.26				
당초	소 로 계				123.00	712.00				
당초	소	3	1	6.0	110.00	660.00	진입도로	지구계	지구계	
당초	로	3	2	4.0	13.00	52.00	진입도로	소로3-1	지구계	
산책로										
당초	산 책 로 계				1,649.63	3,299.26				
당초	산 책 로		1	2.0	19.00	38.00	산책로	중로3-1	체력단련장	
당초			2	2.0	30.00	60.00	산책로	중로3-1	광장	
당초			3	2.0	15.00	30.00	산책로	체력단련장	광장	
당초			4	2.0	175.00	350.00	산책로	체력단련장	소로3-7	
당초			5	2.0	140.00	280.00	산책로	중로3-1	광장	
당초			6	2.0	120.00	240.00	산책로	지구계	광장	
당초			7	2.0	90.00	180.00	산책로	소로3-8	소로3-1	
당초			8	2.0	85.00	170.00	산책로	소로3-7	소로3-1	
당초			9	2.0	150.00	300.00	산책로	지구계	배드민턴장	
신규			10	2.0	85.00	170.00	산책로	소로3-5	소로3-3	
신규			11	2.0	45.00	90.00	산책로	소로3-10	소로3-3	
신규			12	2.0	110.00	220.00	산책로	소로3-1	휴게소	
신규			13	2.0	95.00	190.00	산책로	소로3-1	소로3-12	
신규			14	2.0	35.00	70.00	산책로	휴게소	중로3-1	
신규			15	2.0	10.00	20.00	산책로	체력단련장	소로3-10	
신규			16	2.0	8.00	16.00	산책로	체력단련장	소로3-15	
신규			17	2.0	15.00	30.00	산책로	소로3-5	소로3-9	
신규			18	2.0	180.00	360.00	산책로	지구계	중로3-1	
신규			19	2.0	130.00	260.00	산책로	소로3-18	중로3-1	
신규			20	2.0	95.00	190.00	산책로	소로3-18	중로3-1	
신규			21	2.0	17.63	35.26	산책로	소로3-19	소로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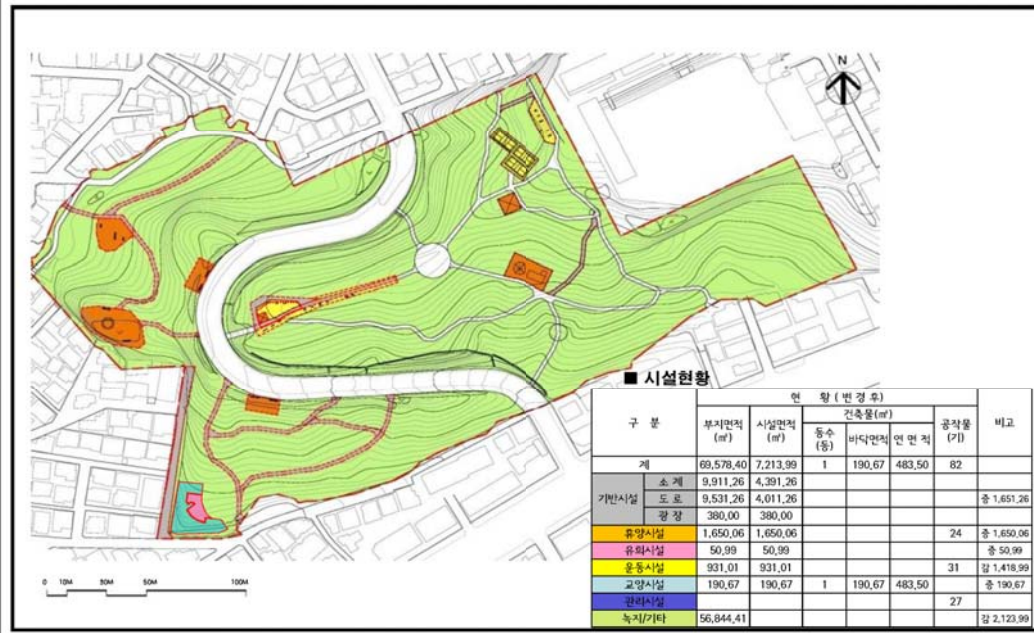
조성계획도(변경전)

도구머리근린공원



조성계획도(변경후)

도구머리근린공원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호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기준 고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2조의5제8항에 따라 협의체 구성 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장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는 시기에 강제적인 명도, 퇴거와 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이해당사자간에 충분히 협의하여 강제퇴거 없이 자진 이주할 수 있도록 협의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체"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2조의5제1항에 따라 현금청산자 또는 세입자 등과 사업시행자 간의 이주대책, 현금 청산 및 손실보상 협의 등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구성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2. "참석자"란 조례 제42조의5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감정평가업자, 현금청산자, 세입자 등을 말한다.
3. "현금청산자"란 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 받는 자를 말한다.
4. "이주대상자"란 현금청산자 및 정비구역내 세입자로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자를 말한다.
5. "조정위원회"란 법 제77조의2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구성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사업시행자 및 이주대상자는 이 지침에 따른 협의체 및 조정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협의체 및 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상호 원만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 운영 및 조정위원회 조정기간과 동절기(12월~2월)에는 인도집행 및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2장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제4조(협의체 운영계획의 수립)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는 분

양신청 현황 및 현금청산(손실보상 포함)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주대책 수립 대상 세입자 및 비대책 세입자 현황
2. 주거이전비 및 임대주택 공급 등 세입자에 대한 이주계획
3. 사업시행인가부터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개최까지의 일정계획

② 구청장은 법 제2조제2호나목 내지 라목의 정비사업의 경우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이후 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인가 시 조건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인가 이후 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

③ 구청장은 협의체 구성을 위해 조례 제42조의5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가 인력을 선정·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시장에게 전문가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전문가의 제척·회피) ①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전문가를 추천하는 때에 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척한다.

1. 전문가나 전문가의 배우자가 토지등소유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전문가 또는 전문가가 속한 업체가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3. 전문가가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전문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구역의 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전문가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체 개최 전까지 직권 또는 전문가의 신청에 따라 제척을 결정한다.

제6조(협의체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 경우 협의체의 위원장은 제2호의 전문가 중 1인을 호선한다.

1. 해당 자치구에서 정비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상 공무원
2. 법률, 감정평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 분야별 전문가

② 협의체 회의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참석한다.

1. 사업시행자
2. 법 제48조제5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 등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
3. 현금청산자
4. 법 제30조 제4호에 따른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 대상 세입자
5. 제4호외의 세입자 등 구청장이 협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진행하며, 위원장은 협의과정에서 사실확인 등 이견에 대해 특별히 조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 진행상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 등은 위원장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체 운영원칙) ① 협의체 운영은 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전까지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 운영은 3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체 운영이 3회 미만이라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와 이주대상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 이주대상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3. 협의체 운영 중단 또는 조속재결신청 등으로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주대상자 중 미협 의자가 많거나, 추가로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체를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협의체 개최 장소는 구청이나, 사업대상지 인근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불가피한 경우 조합사무실 등을 제외한 제3의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가능한 참석자가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일시에 협의체를 개최한다.

⑥ 협의체 개최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주대상자가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체를 1회 운영한 것으로 본다. 단, 사업시행자가 참석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이주대상자는 협의체 회의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협의체 개최 전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석한 것으로 본다.

⑧ 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협의체에서 협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8조(협의체 협의사항) 위원장은 협의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현금청산자의 경우 청산금액, 이주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주거이전비, 임대주택 공급, 영업손실보상, 임시상가 설치 등 이주대책 및 이주시기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인정한 자의 경우 이주시기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설명회 개최)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협의체 운영계획 수립 이후 이주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협의체의 운영목적 및 세부 운영기준, 이주대책,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고 이주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② 구청장은 구역여건을 고려하여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8조에 따른 이주대상자 유형별로 구분하여 추가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대표자 선임 등) ① 이주대상자는 이주대상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서식]의 대표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협의체 개최 이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대표자 선정의 적절성을 확인해야 한다. 협의체의 참석 및 협의는 그 대표자가 행한다.

② 대표자가 협의체에서 협의한 사항은 대표자 선임에 동의한 이주대상자가 협의한 것으로 보며, 대표자는 대표자 선임에 동의한 이주대상자에게 회의의 결과 및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③ 협의체 회의는 원칙적으로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주대상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다.

제11조(협의체 개최 통보 등) 구청장은 제1차 협의체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개최일시, 장소를 이주대상자에게 우편, 유선, 문자 등으로 통보하고 구역내에 홍보물을 게시한다.

제12조(협의체 운영) ① 구청장은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역여건을 고려하여 제8조에 따른 이주대상자 유형별로 구분하여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 회의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향후 협의체 일정 및 협의 내용 등을 정한다.

1. 참석자에게 주어지는 발언기회 및 시간은 동일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참석자에게 주어지는 반론기회 및 시간은 동일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발언순서는 상호협의를 의해서 첫 번째 순서를 정한 후 그 순서가 ‘갑→을→병→정’이며, 다음부터는 ‘을→병→정→갑’의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사업시행자 또는 이주대상자(대표자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요청을 받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장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개별회의를 열 수 있다.

③ 이주대상자가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이주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주에 관한 사항 등을 우선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와 이주대상자간 의견차이로 협의가 어려운 경우 위원장은 상호 의견을 검토하여 협의체에서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합의 완료 또는 3회 이상 협의체를 운영하였거나, 협의체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체 운영의 종료를 선언하고 조정위원회 상정여부를 결정한다.

제13조(협의체 합의 절차 및 방식) ① 사업시행자와 이주대상자간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합의문을 작성하여 협의체 구성원 및 참석자가 서명날인한 후 사업시행자, 대표자 또는 이주대상자, 구청장이 각각 1부씩 나누어 가진다.

② 대표자는 사업시행자와 합의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합의문 작성 전에 대표자 선임에 동의한 이주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대표자가 합의한 사항은 대표자 선임에 동의한 이주대상자가 합의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이주대상자가 합의문에 대한 공증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합의하여 합의문을 공증 받을 수 있다.

제14조(협의결과에의 이행 등) ① 사업시행자 및 이주대상자는 합의 또는 협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 또는 조정위원회 조정 후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사업시행자는 협의체 운영 결과 또는 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다.

③ 구청장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시 협의체 운영 결과 또는 조정위원회 조정 결과의 반영여부를 검토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협의체 운영 종료 이후 명도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3장 이주관리 등

제15조(조정위원회 운영) ① 구청장은 이주대상자에게 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안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이주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만, 협의체 운영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요청하여야 한다.
 2. 협의체에서 조정위원회 상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 철거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여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② 이주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마쳐야 한다.

제16조(사전 모니터링) ① 구청장은 관리처분계획인가부터 착공 이전의 이주단계 사업장에 대하여 이주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침에 따라 협의체 운영결과, 이주·철거 현황 등 관련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등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 및 이주대상자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 이주할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수용재결신청 등 통보) ① 사업시행자는 조례 제42조의6에 따라 정비구역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 법 제40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결과, 명도소송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집행법원에 인도 집행을 신청하거나 집행일시 지정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수용재결신청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인도집행 현장 관리감독) ① 구청장 및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및 구청장으로부터 집행법원의 집행일시를 보고 또는 통보받은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도집행 현장에 입회하여 사업시행자가 고용한 경비원 등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② 자치구 및 서울시 공무원은 인도집행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집행관 및 경찰관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도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하고, 사진 촬영 등 증거를 수집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 한다.

③ 시장은 인도집행 현장에서 철거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인권지킴이단(인권침해감시단)의 인력지원을 요청하고 소속공무원과 공동으로 인권지킴이단을 구성·운영하여 인권침해 감시 및 예방활동을 수행 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9조(협의체 회의 내용의 기록 등) ①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 및 협의과정의 기록을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의 작성을 위해 자치구의 담당자는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의 내용은 구청장이 관리하며, 협의체 회의에서 합의하지 않고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제20조(자료의 제출 등) ① 구청장은 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제4조제1항 및 제17조 내용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구청장은 법 제88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 전에 사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운영한 것으로 보며,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구역 중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사전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2013.2.1.)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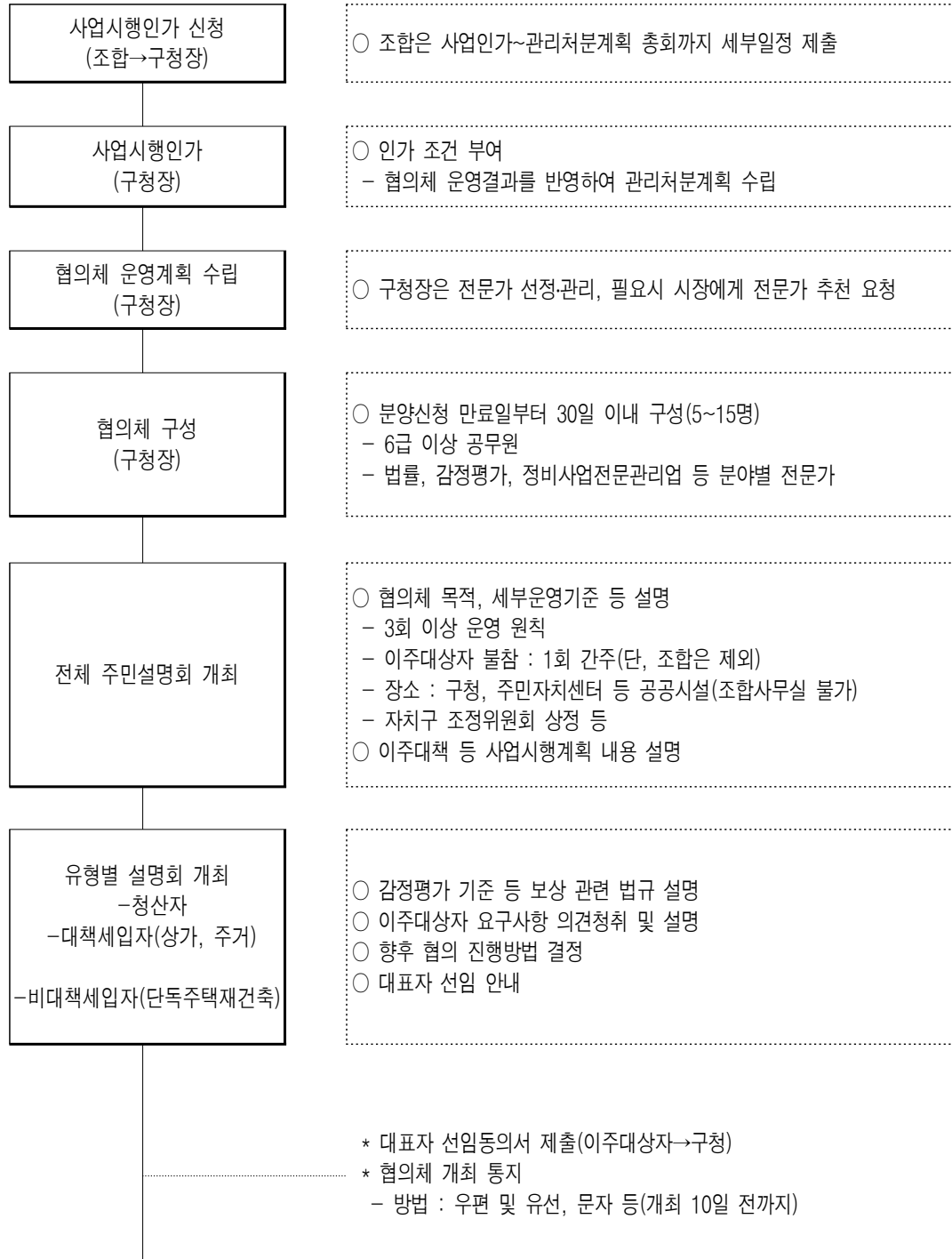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전협의체는 제7조제4항의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또한, 이주대상자 등이 참석하지 않아 사전협의체 운영이 중단된 구역은 구청장이 직접 사전협의체 개최를 통지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주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1회 운영한 것으로 보며, 2회 이상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협의체 운영 종료를 고지하고 종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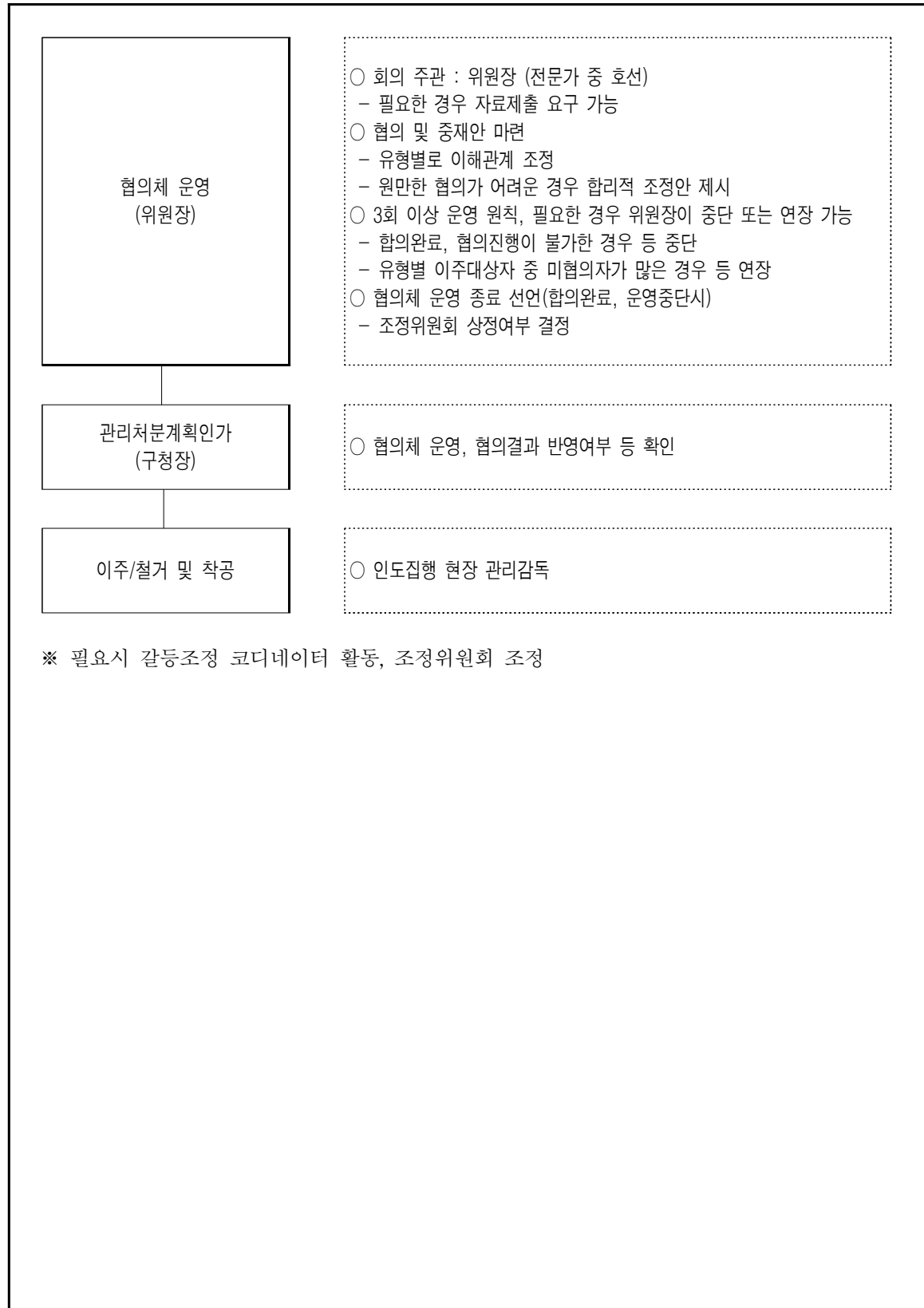
③ 제7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다.

1.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 경우
2. 정비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전까지 3회 이상 협의체 운영이 곤란한 경우
3. 제7조제3항에 따라 추가로 협의가 필요한 경우

<별표>

협약체 구성·운영 절차도





<별지서식>

대표자 선임동의서

1. 동의자 현황

※ 현금청산자인 경우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현주소			전화번호	() -	
권리 내역	토 지	소 재 지 (공유여부)			면적(㎡)
		(계 필지)			
		(			

※ 주거세입자인 경우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현주소		전화번호	() -

※ 상가세입자인 경우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현주소		전화번호	() -
권리내역	영업장 소재지		비고(업체명)

상기 소유 물건의 현금청산자/세입자(주거, 상가)는 ○○○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협의체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대표자가 행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대표자(선임수락자)

성 명 : (서명) 지장날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 위임자(동의자)

성 명 : (서명) 지장날인

○○구청장 귀중

첨부 :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1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고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보유자 인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1.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지정 번호 및 명칭	보유단체(소재지 등)	보유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48호 서울맹인독경	(사)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서울지부 - 소재지 :성북구 정릉동 506-109 - 설립연월일 : 2008.3.5.(서울지부 설립일)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설립 : 1971.7.1.) - 대표 :김동성	채수옥	남	1940.10.10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15길 20, 506-101

2. 인정일 : 2017.1.5
3. 인정사유

- 사단법인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서울지부는 역리학에 종사하는 맹인조합인 ‘조선맹인 역리대성교’에서 비롯되었으며, 1978년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동 506-109 소재 북악당에서 연례적으로 독경행사를 개최하는 등 서울맹인독경을 활발하게 전승해오고 있는 단체로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48호 서울맹인독경의 보유단체로 인정함.
- 채수옥은 서울맹인독경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고, 서울맹인독경의 연행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능숙하여 탁월한 전승자로 활동하고 있음. 또한 서울맹인독경의 전승에 대한 의지도 강하여 서울맹인독경의 전승과 보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48호 맹인독경의 보유자로 인정함.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호
박미사랑소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38호(2015.05.21.)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초 결정된 박미사랑소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최초)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결정(최초)에 관한 사항으로, 공원을 조성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휴식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3동 963-1 외 3필지

3. 면 적 : 2,162.60㎡

4. 조성계획 결정조서 및 도면 : 따로붙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2133-2074) 및 서울특별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300-5534) 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금천 박미사랑공원 조성계획결정조서

1. 총괄표 (위치 : 금천구 시흥3동 963-1번지 외 3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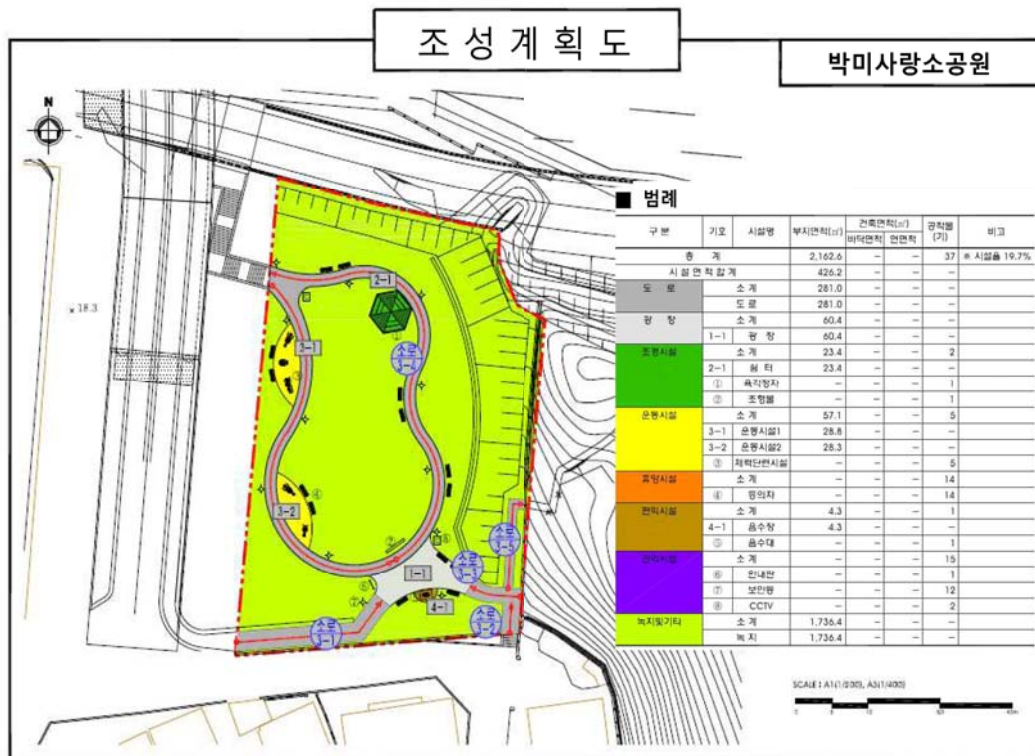
구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기)	비 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부 지 면 적	2,162.6	2,162.6					
시 설 면 적 합 계	426.2	426.2				37	
기반 시설	소 계	341.4					
	도 로	281.0					
	광 장	60.4					
조 경 시 설	23.4	23.4				2	
유 회 시 설							
휴 양 시 설						14	
교 양 시 설							
운동 시설	57.1	57.1				5	
편 의 시 설	4.3	4.3				1	
관 리 시 설						15	
녹지 및 기타	1,736.4	1,736.4					
시 설 율 (법정 20%)	$(426.2 / 2,162.6) \times 100 = 19.7\%$						
건 폐 율 (법정 5%)	$(0 / 2,162.6) \times 100 = 0\%$						

2. 시설조서

구 분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기본 시설	소 계		426.2	426.2				37		
		도 로		341.4	341.4						
		광 장	1-1 시흥동 963-1	281.0	281.0						
조경 시설			60.4	60.4							
	소 계		23.4	23.4					2		
	쉼 터	2-1 시흥동 963-1	23.4	23.4							
	육각정자	① 시흥동 963-1							1		
운동 시설	조형물	② 시흥동 963-1							1		
	소 계		57.1	57.1					5		
	운동시설1	3-1 시흥동 963-1	28.8	28.8							
	운동시설2	3-2 시흥동 963-1	28.3	28.3							
휴양 시설	체력단련시설	③ 시흥동 963-1							5		
	소 계								14		
	등의자	④ 시흥동 963-1							14		
	소 계		4.3	4.3					1		
편의 시설	음수장	4-1 시흥동 963-1	4.3	4.3							
	음수대	⑤ 시흥동 963-1							1		
	소 계								15		
	안내판	⑥ 시흥동 963-1							1		
관리 시설	보안등	⑦ 시흥동 963-1							12		
	CCTV	⑧ 시흥동 963-1							2		
	소 계		1,736.4	1,736.4							
	녹지 및 기타		1,736.4	1,736.4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163.4	281.0				
소로	소 계			163.4	281.0				
	3	1	2.5	22.3	55.8	진입로	부지경계	광장1-1	
	3	2	2.0	4.6	9.1	진입로	부지경계	소로3-3	
	3	3	2.0	7.4	14.7	연결로	소로3-2	광장1-1	
	3	4	1.6	116.2	185.9	연결로	부지경계	부지경계	
	3	5	1.2	12.9	15.5	연결로	소로3-3	부지경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6호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4호(1968.0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6-234호(2016.8.4)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된 관악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관악산도시자연공원(청룡산지구, 낙성대지구) 조성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공원내 실내배드민턴장 및 강감찬전시관을 설치하여 공원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228 일대

3. 면 적 : 12,396,760㎡(청룡산지구 208,071㎡, 낙성대지구 435,578㎡)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2133-2076) 및 관악구 공원녹지과(☎ 879-6503)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지구별 총괄표

구 분	변			전			변			경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공작물 (기)	건축물			후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2,396,760	668,852.19	1,189	12,396,760	667,725.96	1,189	12,396,760	667,725.96	81	31,806.18	90,902.92	1,189	시설면적 감) 1,126.23㎡
소 계	2,107,950	503,852.19	1,121	2,107,950	502,725.96	1,121	2,107,950	502,725.96	70	31,169.18	90,125.92	1,121	시설면적 감) 1,126.23㎡
관음 사 지 구	205,952	35,316	63	205,952	35,316	63	205,952	35,316	4	175.18	175.18	63	
낙 성 대 지 구	435,578	163,683.63	208	435,578	163,645.4	208	435,578	163,645.4	26	17,251.2	49,614.4	208	시설면적 감) 38.23㎡
청 룡 산 지 구	208,071	32,804	99	208,071	31,716	99	208,071	31,716	6	1,493	2,483	99	시설면적 감) 1,088㎡
신림동계곡지구	409,039	95,368	64	409,039	95,368	64	409,039	95,368	13	4,088.3	16,326.05	64	
약 수 암 지 구	370,206	51,156	139	370,206	51,156	139	370,206	51,156	5	1,281	4,723	139	
독 산 지 구	227,188	62,733.8	309	227,188	62,733.8	309	227,188	62,733.8	12	5,153.84	14,941.28	309	
선 우 지 구	75,393	17,026	27	75,393	17,026	27	75,393	17,026	1	40	40	27	
호 암 사 지 구	126,784	29,281	23	126,784	29,281	23	126,784	29,281	1	81.9	163.8	23	
삼 성 산 지 구	10,118	3,192	41	10,118	3,192	41	10,118	3,192				41	
신 도 비 지 구	9,394	3,684	30	9,394	3,684	30	9,394	3,684	1	59	59	30	
우 립 지 구	3,869	731	14	3,869	731	14	3,869	731				14	
문 성 지 구	26,358	8,876.76	104	26,358	8,876.76	104	26,358	8,876.76	1	1,545.76	1,600.21	104	
시 설 지 구 외	10,288,810	165,000	68	10,288,810	165,000	68	10,288,810	165,000	11	637	777	68	
시 설 율 (법정 20%)	(668,852.19 / 12,396,760) * 100 = 5.39%						(667,725.96/12,396,760) * 100 = 5.39%						
건 폐 율 (법정 4%)	(31,524.98 /12,396,760) * 100 = 0.25%						(31,806.18/12,396,760) * 100 = 0.26%						증) 0.01%

관원 시설 구역

관악산도시자연공원(낙성대지구)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1. 총괄표(위치 : 관악구 봉천동 228번지 일원)

구	본	변				전				변				경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동수(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기반 시설	계	435,578	163,683.63	27	17,654	50,017.2	208	435,578	163,645.4	26	17,251.2	49,614.4	208	시설면적 감 38.23㎡				
	소 계	49,285	21,100					49,177.5	21,107.5					오류 수정				
	도 로	38,429	10,359					38,436.5	10,366.5					오류 수정				
	광 장	10,856	10,741					10,741	10,741					오류 수정				
조 경 시 설		1,502	1,502		72	72	39	1,502	1,502		72	72	39					
휴 양 시 설		542	542				100	542	542				100					
유 회 시 설		380	380				1	380	380				1					
운 동 시 설		44,356	44,356	5	2,835	8,202	43	44,356	44,356	5	2,835	8,202	43					
교 양 시 설		89,004	89,004	16	13,927	40,779.2	1	89,255	89,255	17	13,798.9	40,651.1	1	증) 251㎡				
편 의 시 설		6,278.6	6,278.6	3	361	361		6,134.6	6,134.6	2	301	301		감) 144㎡				
관 리 시 설		1,011	521.03	3	448	590	24	904	368.3	2	244.3	388.3	24	감) 107㎡				
녹 지 및 기타		243,334.4						243,326.9										
시 설 율 (법정 40%)		(163,683.63/435,578) × 100 = 37.58%						(163,645.4/435,578) × 100 = 37.57%						감) 0.01%				
건 폐 율 (법정 8%)		(17,654/435,578) × 100 = 4.05%						(17,251.2/435,578) × 100 = 3.96%						감) 0.09%				

2. 시설조서(낙성대지구)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합계			435,578	163,683.63		27동	17,654	50,017.2	208			435,578	163,645.4		26동	17,251.2	49,614.4	208	시설면적 감 38.23㎡
	소계		49,285	21,100								49,177.5	21,107.5						오류 수정
	도로		38,429	10,359								38,436.5	10,366.5						오류 수정
	기반 시설	가	3개소	10,741	10,741						가	6개소	10,741	10,741					
가-1		봉천266일대	(5,140)	(5,140)						가-1	봉천266일대	(5,140)	(5,140)						
가-2		봉천227일대	(2,055)	(2,055)						가-2	봉천227일대	(2,055)	(2,055)						
가-3		봉천262-10 일대	(1,232)	(1,232)						가-3	봉천262-10 일대	(1,232)	(1,232)						
가-4		봉천274-2일 대	(593)	(593)						가-4	봉천274-2 일대	(593)	(593)						
가-5		봉천291-10	(301)	(301)						가-5	봉천291-10	(301)	(301)						
조경 시설	가-6	봉천291-10	(1,420)	(1,420)						가-6	봉천291-10	(1,420)	(1,420)						
	소계		1,502	1,502			72	72	39			1,502	1,502			72	72	39	
파고라		시설부지내			목재				12		시설부지내			목재				12	
조각	①	봉천266일대	291	291	청동				1	①	봉천266일대	291	291	청동				1	
정자		시설부지내	72	72			72	72	2		시설부지내	72	72			72	72	2	

구 분	변			경			전			변			경			비 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		공작물 (기)	
							비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조경 시설	연못	카	봉천232-1 일대	639	639					카	봉천232-1 일대	639	639					
	전통담장		시설부지내						7		시설부지내						7	
	화계		시설부지내						2		시설부지내						2	
	히스토피아벽		시설부지내						6		시설부지내						6	
	물확		시설부지내						9		시설부지내						9	
휴양 시설	잔디마당	하	봉천289일대	500	500					하	봉천289일대	500	500					
	소계			542	542				100			542	542				100	
	경로당	나	시설부지내	486	486					나	시설부지내	486	486					
	평상		시설부지내						1		시설부지내						1	
	앉음벽	파	시설부지내	4	4				11	파	시설부지내	4	4				11	
	벤치		시설부지내						58		시설부지내			목재			58	
	그늘쉼터		시설부지내						13		시설부지내						13	
	볼라드		시설부지내						7		시설부지내						7	
	화강석통석의자		시설부지내						10		시설부지내						10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휴양 시설	휴게소			52	52					타		52	52					
			봉천288-6일 대	(35)	(35)					타-1	봉천288-6 일대	(35)	(35)					
			봉천299-2일 대	(17)	(17)					타-2	봉천299-2 일대	(17)	(17)					
	소계			44,356	44,356		5동	2,835	8,202	43		44,356	44,356		5동	2,835	8,202	43
		다	봉천278-2일 대	333	333					다	봉천278-2 일대	333	333					
			봉천278-2일 대	(260)	260					다-1	봉천278-2 일대	(260)	260					
운동 시설	정구장		봉천292-1일 대	(73)	(73)					다-2	봉천292-1 일대	(73)	(73)					
		라	3개소	14,913	14,913		2동	257	257	라	3개소	14,913	14,913		2동	257	257	
		라-1	봉천260-1일 대	(10,530)	(10,530)	조적	(1)동	(193)	(193)	라-1	봉천260-1 일대	(10,530)	(10,530)	조적	(1)동	(193)	(193)	
	라-2	봉천56-117 일대	(3,338)	(3,338)	조적	(1)동	(64)	(64)	라-2	봉천56-117 일대	(3,338)	(3,338)	조적	(1)동	(64)	(64)		
	라-3	봉천277일대	(1,045)	(1,045)					라-3	봉천277 일대	(1,045)	(1,045)						
배드민턴장	배드민턴장	마	1개소	1,941	1,941					1	마	1개소	1,941	1,941				1
		마-1	봉천 산51-1일대	(1,941)	(1,941)	목조				마-1	봉천 산51-1일대	(1,941)	(1,941)	목조			(1)	

구	분	변 경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운동 시설	골프연습장	2	1개소	4,210	4,210		1동	460	848		2	1개소	4,210	4,210		1동	460	848		
		2-1	봉천272일대	(4,210)	(4,210)	R.C	(1)동	(460)	(848)		2-1	봉천272일대	(4,210)	(4,210)	R.C	(1)동	(460)	(848)		
	대운동장	바	봉천 산53-3일대	11,670	11,670	조적	1동	100	100		바	봉천 산53-3일대	11,670	11,670	조적	1동	100	100		
	스포츠헤타	3	봉천223-2 일대	10,382	10,382	R.C	1동	2,018	6,997		3	봉천223-2 일대	10,382	10,382	R.C	1동	2,018	6,997		
	체력단련시설		시설부지내			목재/철재				41		시설부지내			목재/철재				41	
유형 시설	다목적구장	거	봉천 291-2일대	377	377					1	거	봉천 291-2일대	377	377					1	
	x-게임장	너	봉천 284-4일대	530	530						너	봉천 284-4일대	530	530						
	소계			380	380					1			380	380				1		
	어린이놀이터	더	봉천288-7 일대	380	380						더	봉천288-7 일대	380	380						
	놀이시설물		부지내			철재				1		부지내			철재			1		
교양 시설	소계			89,004	89,004		4동	13,693	40,725	1			89,255	89,255		17동	13,798.9	40,651.1	1	증) 251㎡
		4	봉천 산56-3	2,606	2,606	CONC	2동	964	3,284.2		4	봉천 산56-3	2,606	2,606	CONC	2동	964	3,284.2		
	도서관	4-1	봉천 산56-3	(1,658)	(1,658)	R.C	(1)동	(291)	(1,303)		4-1	봉천 산56-3	(1,658)	(1,658)	R.C	(1)동	(291)	(1,303)		
		4-2	봉천 산56-3	(948)	(948)	CONC	(1)동	(673)	(1,981.2)		4-2	봉천 산56-3	(948)	(948)	CONC	(1)동	(673)	(1,981.2)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교양 시설	낙성대	사	봉천229일대	18,270	18,270	R.C	4동	590	590	1	사	봉천229일대	18,270	18,270	R.C	4동	590	590	1					
		5	봉천234-1 일대	57,532	57,532	R.C	4동	10,192	28,166		5	봉천234-1 일대	57,532	57,532	R.C	4동	10,192	28,166						
	유물전시관	6	봉천279일대	1,124	1,124	CONC	1동	198	519		6	봉천279일대	1,124	1,124	CONC	1동	198	519						
	청소년회관	7	봉천 산53-1	503	503	CONC	1동	165	364		7	봉천 산53-1	503	503	CONC	1동	165	364						
	전통아와소극장	자	봉천225일대	1,225	1,225	기와	1동	105	105		자	봉천225일대	1,225	1,225	기와	1동	105	105						
	영어문화체험관	11	봉천산52일대	7,606	7,606	R.C	2동	1,459	7,497		11	봉천산52일대	7,606	7,606	R.C	2동	1,459	7,497						
	초화원	러	봉천286일대	138	138						러	봉천286일대	138	138										
강감찬전시관											④	봉천 228일대	181	181	철근콘크리트	1동	99.4	99.4		신규				
											⑥	봉천 228일대	70	70	철근콘크리트	1동	26.5	26.5		신규				
편의 시설	소계			6,278.6	6,278.6		3동	361	361				6,134.6	6,134.6		2동	301	301		감) 144㎡				
		9	2개소	313	313	조적	2동	301	301		9	2개소	313	313	조적	2동	301	301						
	매점	9-1	봉천278-2	(77)	(77)	조적	(1)동	(65)	(65)		9-1	봉천278-2	(77)	(77)	조적	(1)동	(65)	(65)						
		9-3	봉천738-329 일대	(236)	(236)		(1)동	(236)	(236)		9-3	봉천738-329 일대	(236)	(236)	조적	(1)동	(236)	(236)		(화장실포함)				

구	분	변경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편의 시설	주차장	차	2개소	5,809	5,809						차	2개소	5,809	5,809						
		차-1	봉천 산262-1	(4,000)	(4,000)					봉천 산262-1	(4,000)	(4,000)								
		차-2	봉천 산281	(1,809)	(1,809)					봉천 산281	(1,809)	(1,809)								
	화장실	10	1개소	144	144		1동	60	60											폐지
		10-1	봉천 산277	(144)	(144)		(1)동	(60)	(60)											폐지
		머		12.6	12.6					머		12.6	12.6							
음수대	머-1	봉천 294-3일대	(6.3)	(6.3)					머-1 294-3일대	(6.3)	(6.3)									
	머-2	봉천 759-4일대	(6.3)	(6.3)					머-2 759-4일대	(6.3)	(6.3)									
	소계			1,011	521.03		3동	459	603	24			904	368.3		2동	244.3	388.3	24	감) 107㎡
관리 시설	안내관		시설부지내						1		시설부지내								1	
	휴지통		시설부지내						1		시설부지내								1	
	담장		시설부지내						1		시설부지내								1	
	정문	②	봉천 산269-2일대	(46)	46				1	②	봉천 산269-2일대	(46)	(46)						1	
	관리사무실	④	봉천 228일대	181	181		1동	181	181											폐지

구	분	경						전						변						경				비	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관리 시설	관리사무실	⑤	시설부지내	760	224.3	R.C	1동	208	352		⑤	시설부지내	760	224.3	R.C	1동	208	352							
	창 고	⑥	봉천 228일대	70	70		1동	70	70													폐지			
	CCTV																								
	공원등																								
	관리사무실										10	1개소	144	144		철근 콘크리트	1동	36.3	36.3			18	신규		
녹지 및 기타	소계			243,334.4							10-1	봉천 228	(144)	(144)	철근 콘크리트	(1)동	(36.3)	(36.3)				신규			
	녹지		전지역	243,334.4								전지역	243,326.9												

3. 도로조서(낙성대지구)

- 공원 내 도시계획결정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2)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계				1,393	28,070				
	대로	계			680	20,400				
	대로	2	44	30	680	20,400	도시계획도로	봉천 산295-3	봉천 244	
	중로	계			54	1,080				
	중로	1	146	20	54	1,080	도시계획도로	봉천 산295-2	봉천 738-21	
	소로	계			659	6,590				
	소로	1	1	10	344	3,440	도시계획도로	봉천 산32-1	봉천 산244-7	
	소로	1	2	10	315	3,150	도시계획도로	봉천 산29-1	봉천 산35-2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2)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계				2,851.00	10,359.0				
변경	합계				2,854.45	10,366.5				
당초	소로	계			989	6,763				
	소로	1	1	10	189	1,890	진입도로	봉천 738-33	낙성대	
	소로	2	1	8	67	536	연결도로	대 2-44	대 2-44	
	소로	2	2	8	70	560	진입도로	대 2-44	봉천 산53-1	
	소로	2	3	8	40	320	연결도로	248-2	산43-5	
	소로	2	4	8	127	1,016	진입도로	대 2-44	광장	
	소로	3	1	4	30	120	진입도로	소 2-2	경로당	
	소로	3	2	4	102	408	진입도로	소 3-6	도서관	
	소로	3	3	3	12	36	연결도로	주차장	경로당	
	소로	3	4	6	13	78	연결도로	소 2-2	소 3-7	
	소로	3	6	6	174	1,044	연결도로	대 2-44	정구장	
	소로	3	7	4	34	136	연결도로	대 2-44	소 3-8	
	소로	3	8	5	113	565	진입도로	대 2-44	광장	
	소로	3	9	3	18	54	연결도로	주차장	소 3-10	
당초	산책로	계			1,862.00	3,596.0				
변경	산책로	계			1,865.45	3,603.5				
당초	산책로	1	1.5	296	444	산책로	배드민턴장	산2		
	산책로	2	1.5	119	178	산책로	영어마을	골프연습장		
	산책로	3	2	93	186	산책로	소 3-8	산 4		
	산책로	4	2	630	1,260	산책로	봉천 산48-1	봉천 산53-1		
	산책로	5	1.5	32	48	산책로	소 3-1	유물전시관		
	산책로	6	2.5	51.2	128	산책로	산9	산9		
	산책로	7	2.0	159	318	산책로	산8	광장 가-5		
	산책로	8	2.0	87.5	175	산책로	외곽도로	광장 가-6		
	산책로	9	2.0	254	509	산책로	광장 가-6	산10		
	산책로	10	2.5	140	350	보도	외곽도로	외곽도로		
	산책로	11	2.0	3.75	7.5	보도	산7	외곽도로		

관악산도시자연공원(청룡산지구)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1. 총괄표(위치 : 관악구 봉천동 산175-36번지 일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계	208,071	32,804	5	809	1,799	99		208,071	31,716	6	1,493	2,483	99		합)1,088㎡
기반 시설	8,270	8,270						8,556	8,556						증)286㎡
	8,270	8,270						8,556	8,556						증)286㎡
조경시설						7							7		
휴양시설	9,719	9,719	1	65	65	8		9,719	9,719	1	65	65	15		
유희시설	881	881				5		881	881				5		
운동시설	7,321	7,321				32		5,947	5,947	1	684.00	684.00	32		합)1,374㎡
교양시설	3,283	3,283	1	670	1,660	26		3,283	3,283	1	670	1,660	26		
편익시설	3,330	3,330	3	74	74	1		3,330	3,330	3	74	74	1		
관리시설						13							13		
녹지 및 기타	175,267							176,355							증)1,088㎡
시 설 율 (법정 40%)	(32,804/208,071) × 100 = 15.77%							(31,716/208,071) × 100 = 15.24%							합) 0.53%
건 폐 율 (법정 10%)	(809/208,071) × 100 = 0.39%							(1,493/208,071) × 100 = 0.72%							증) 0.33%

2. 시설조서(청룡산지구)

구분	변경			전경			변경			후경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기반시설	합계		208,071	32,804		5동	809	1,799	99			208,071	31,716		6동	1,493	2,483	99	감)1,088㎡	
	소계		8,270	8,270								8,556	8,556						증)286㎡	
	도로		8,270	8,270								8,556	8,556						오류 수정	
	소계									7								7		
조경시설	파고라	①	임간휴게소 외						4	①	임간휴게소 외			목재				4		
	가제보	②	커뮤니티 쉼터 내						3	②	커뮤니티 쉼터 내			철재				3		
휴양시설	소계		9,719	9,719					15			9,719	9,719					15		
	야유회장	가	봉천동 175-6일대	5,640	5,640					가	봉천동 175-6일대	5,640	5,640							
	임간휴게소	나	봉천동 175-6	2,160	2,160					나	봉천동 175-6	2,160	2,160							
	커뮤니티 쉼터	다	봉천동 172-2일대	284	284					다	봉천동 172-2일대	284	284							
	휴게소	사	3개소	1,434	1,434						사	3개소	1,434	1,434						
		사-1	봉천동 산 175-10	460	460						사-1	봉천동 산175-10	460	460						
		사-2	봉천동 산 172-2	127	127						사-2	봉천동 산 172-2	127	127						
	평상	사-3	유아숲 체험장 내	847	847						사-3	유아숲 체험장 내	847	847						
			시설부지 내			목재				1		시설부지 내			목재				1	
		야외탁자		시설부지 내		목재				8		시설부지 내			목재				8	
경의자		시설부지 내		목재				6		시설부지 내			목재				6			
숲유아 쉼터	차	유아숲 체험장 내	201	201	석재	1동	65	65		차	유아숲 체험장 내	201	201	석재	1동	65	65			

구분		변경			변경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기)	
유형시설	소개			881	881								5	
	모험놀이장	카	유아숲체험 내	881	881								5	
	소개			7,321	7,321								32	
배드민턴장	라	1개소	2,726	2,726										
	라-1	봉천동 산175-6	2,726	2,726										
	마	5개소	3,040	3,040										
운동시설	마-1	봉천동 산174-177	250	250										25
	마-2	봉천동 산175-6	2,010	2,010										5
	마-3	봉천동 산175-6	280	280										7
	마-4	봉천동 산 172-2일대	92	92										8
	마-5	유아숲체험장 내	408	408										5
	자연체험장	자	1개소	1,555	1,555									
	소개			3,283	3,283			1동	670	1,660				7
	문화회관	1	봉천동 산175-1외 1필	2,577	2,577			R.C	1동	670	1,660			26
	커뮤니티가든	4	봉천동 산 172-2일대	706	706									26

구분	변경			변경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편의시설	소계		3,330	3,330		3동	74	74	1			3,330	3,330		3동	74	74	1		
	화장실	아	2개소	248	248	조적	2동	41	41		아	2개소	248	248	조적	2동	41	41		
		아-1	봉천 산175-10	200	200	조적	1동	22	22		아-1	봉천 산175-10	200	200	조적	1동	22	22		
		아-2	봉천 산 172-2일대	48	48	조적	1동	19	19		아-2	봉천 산 172-2일대	48	48	조적	1동	19	19		
		3	신림 산1-10 일대	1,620	1,620	목조	1동	33	33		3	신림 산1-10 일대	1,620	1,620	목조	1동	33	33		
	약수터	바	4개소	1,462	1,462						바	4개소	1,462	1,462						
		바-1	봉천 산175-6	180	180						바-1	봉천 산175-6	180	180						
		바-2	봉천 산175-6	270	270						바-2	봉천 산175-6	270	270						
		바-3	봉천 산174-172	870	870	목조				1	바-3	봉천 산174-172	870	870	목조				1	
	바-4	유아숲체험장 내	142	142						바-4	유아숲체험장 내	142	142							
관리시설	소계								13									13		
	안내판					목재			12		시설부지내			목재				12		
	휴지통																			
	농기계 보관소	시설부지내			목재				1		시설부지내			목재				1		
녹지 및 기타	소계		175,267									176,355							증) 1,088㎡	
	녹지	전지역	175,267								전지역	176,355							증) 1,088㎡	

3. 도로조서(청룡산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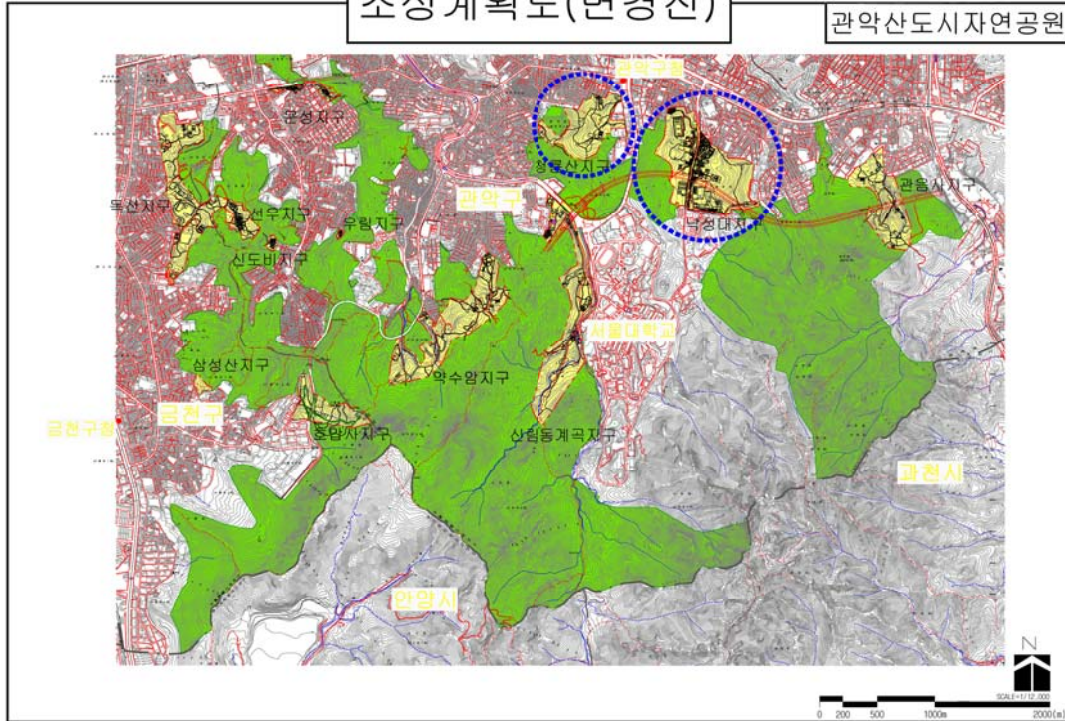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3,404	8,270				
변경	합 계				3,478	8,556				오류수정
당초	소로	소 계				582	2,615			
변경	소로	소 계				656	2,901			오류수정
당초	소로	3	1	4	387	1,548	진입도로	봉천동 392	봉천동 392	
당초	소로	3	2	6	141	846	연결도로	봉천동 산175-33	봉천동 산178-12	
당초	소로	3	3	4	128	507	진입도로	봉천동 392	배드민턴장	
당초	산책로	소 계				2,822	5,655			
당초	산책로		1	2	645	1,290	산책로	소로3-2	전망대	
당초	산책로		3	2	64	128	산책로	소로 3-1	야유회장	
당초	산책로		4	2	225	450	산책로	봉천동 산4-1	배드민턴장	
당초	산책로		5	2	180	360	산책로	봉천동 산174-172	봉천동 산175-6	
당초	산책로		6	2	290	580	산책로	봉천동 산175-6	배드민턴장	
당초	산책로		7	2	64	128	산책로	약수터	임간휴게소	
당초	산책로		8	2	180	360	산책로	배드민턴장	봉천동 산175-6	
당초	산책로		9	2	10	20	산책로	전망대	신림동 산6-1	
당초	산책로		10	2	180	360	산책로	봉천동 산174-652	전망대	
당초	산책로		11	2	181	362	산책로	소로 3-1	봉천동 산175-27	
당초	산책로		12	3	11	33	산책로	봉천동 산172-2	봉천동 산173-6	
당초	산책로		13	3	102	306	산책로	봉천동 산172-2	봉천동 산173-6	
신설	산책로		14	2	150	300	산책로	봉천동 산172-2	봉천동 산172-2	
당초	산책로		15	2	145	290	산책로	봉천동 산172-2	봉천동 산173-6	
신설	산책로		16	2	30	60	산책로	봉천동 산172-2	봉천동 산172-2	
당초	산책로		17	2	22	44	산책로	봉천동 산172-2	봉천동 산173-6	
당초	산책로		18	2	22	44	산책로	봉천동 산172-2	봉천동 산172-2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산책로		19	2	15	30	산책로	봉천동 산172-2	봉천동 산173-6	
당초	산책로		20	2	15	30	산책로	봉천동 산172-2	봉천동 산172-2	
당초	산책로		21	2	10	20	산책로	봉천동 산172-2	봉천동 산173-6	
당초	산책로		22	1	37	37	산책로	봉천동 산172-2	봉천동 산172-2	
당초	산책로		23	2	14	28	산책로	봉천동 산172-2	봉천동 산172-2	
당초	산책로		24	1.5	159	240	산책로	배드민턴장	봉천동 392	
당초	산책로		25	2	71	155	산책로	배드민턴장	봉천동 산17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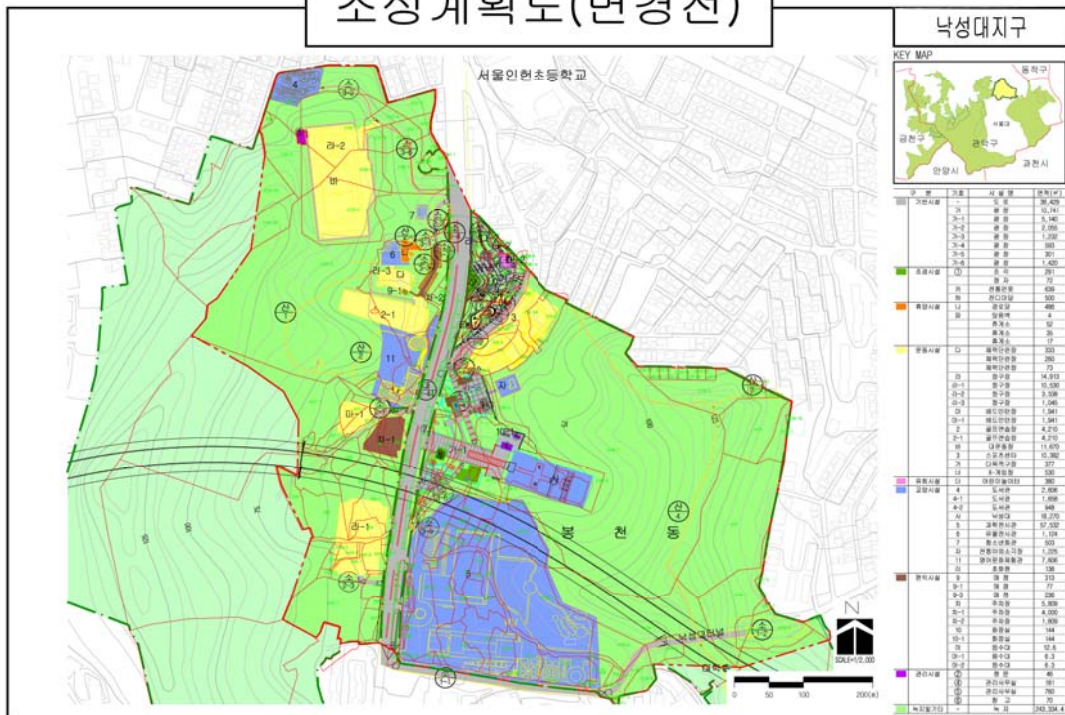
조성계획도(변경전)

관악산도시자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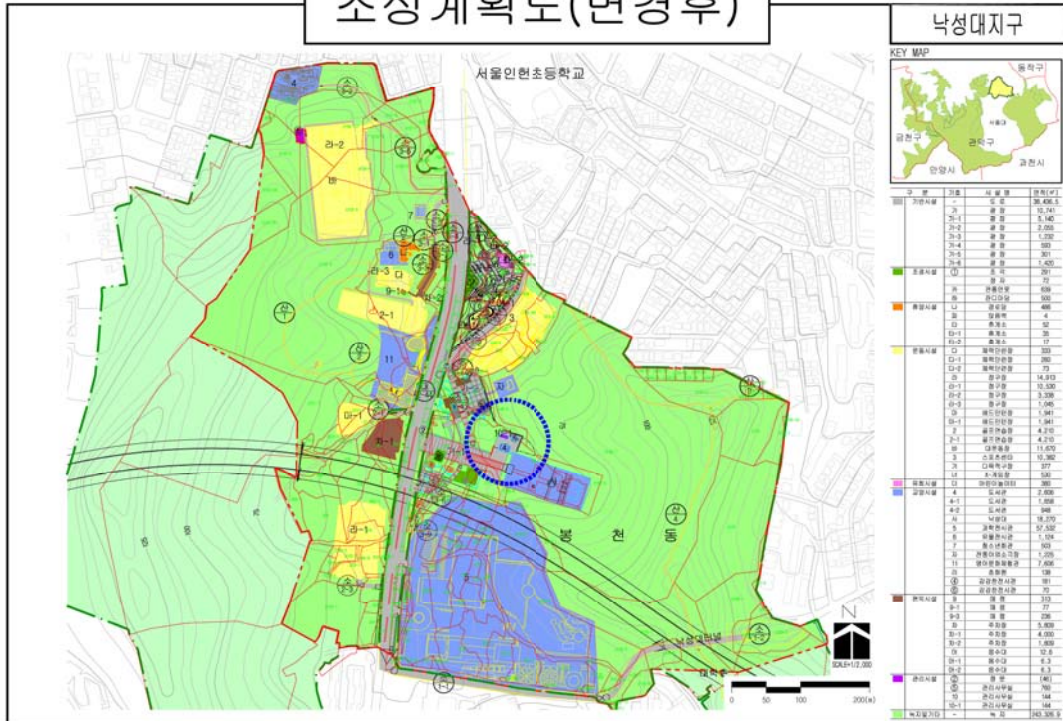


조성계획도(변경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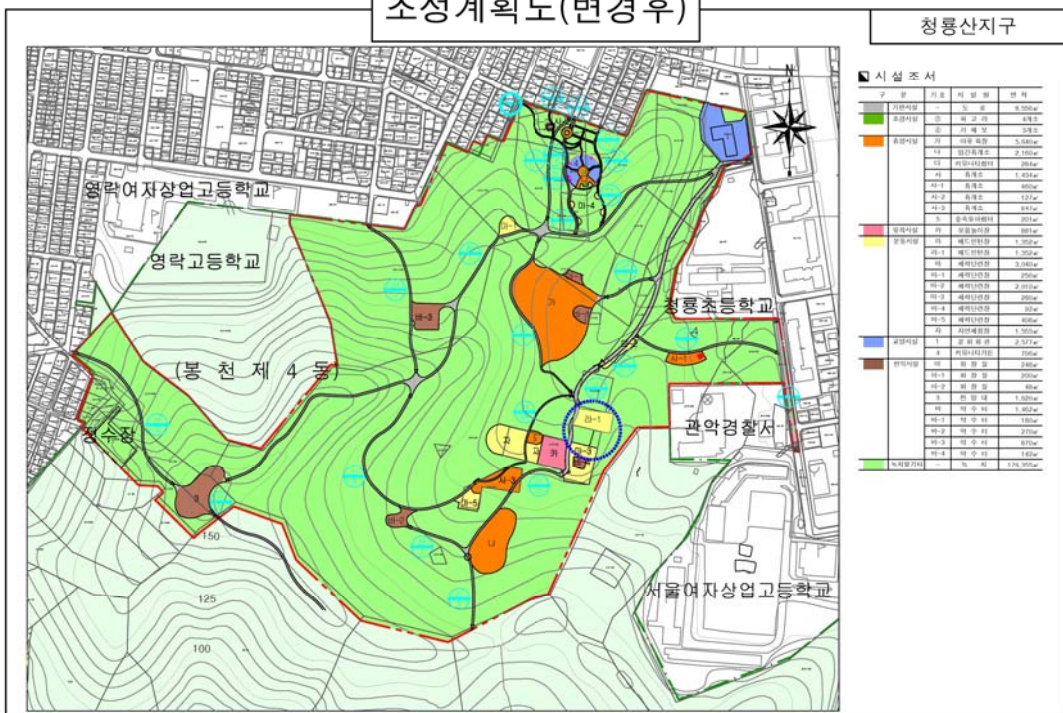
낙성대지구



조성계획도(변경후)



조성계획도(변경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7호

양평제12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79호(2009.9.24.), 영등포구고시 제2010-57호(2010.10.27.)로 정비구역지정(변경)결정·고시된 양평제12도시환경정비계획 및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장

1. 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양평제12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구 분	정비구역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양평제12 도시환경정비구역	영등포구 양평동1가 243-1번지일대	37,561.8	-	37,561.8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37,561.8	-	37,561.8	100.0	
정비 기반 시설	소 계	6,063.2	-	6,063.2	16.14	
	도 로	3,673.8	-	3,673.8	9.78	
	공 원	2,389.4	-	2,389.4	6.36	어린이공원
택지	소 계	31,498.6	-	31,498.6	83.86	-
	A - 1	23,621.0	-	23,621.0	62.88	공동주택용지
	A - 2	7,056.9	-	7,056.9	18.79	산업용지
	A - 3	820.7	-	820.7	2.19	종교시설용지

2)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설치계획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	20	집산 도로	228	220-1	251-1	일반 도로		구역 내 폭원 5m
기정	중로	3	1	12	집산 도로	179	251-1	216-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6	8	집산 도로	37	251-1	251-1	일반 도로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 변경없음

결 정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공원	어린이 공 원	양평1가 250-50번지 일대	2,389.4	-	2,389.4	

3) 건축물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 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역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양평제12 도시환경 정비구역	37,561.8	양평동1가 243-1번지 일대	293	-	-	293	-	

(2) 건축시설계획 : 변경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연면적) (㎡)																																																																																							
	명 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양평제12 도시환경 정비구역	37,561.8	A-1	23,621.0	265-1일대	공동주택	30이하	230이하	120이하	86,029.9																																																																																							
			A-2	7,056.9	243-70일대	산업시설	60이하	400이하	70이하	38,389.3																																																																																							
			A-3	820.9	250-10일대	종교시설	60이하	400이하	50이하	29,900																																																																																							
변경	양평제12 도시환경 정비구역	37,561.8	A-1	23,621.0	265-1일대	공동주택	30이하	280이하	105이하	96,718.54																																																																																							
			A-2	7,056.9	243-70일대	산업시설	60이하	400이하	70이하	37,523.9																																																																																							
			A-3	820.7	250-10일대	종교시설	60이하	400이하	50이하	3,791.5																																																																																							
A-1획지 용적률 체계			장기전세주택 미설치시			장기전세주택 설치시		비고																																																																																									
			○기준 : 230%이하			○기준 : 230%이하 ○허용 : 280%이하		○상향된 용적률의 50% 이상 장기전세주택 공급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건립규모 : 공동주택 4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지하2층, 지상35층 ○건립비율																																																																																														
			<table><tr><th colspan="2">구 분</th><th>전용면적(㎡)</th><th>세대수</th><th>세대비율(%)</th><th>비 고</th></tr><tr><td rowspan="10">기정</td><td rowspan="4">임대</td><td>39.95</td><td>35</td><td>6.94</td><td></td></tr><tr><td>49.99</td><td>35</td><td>6.94</td><td></td></tr><tr><td>59.98</td><td>16</td><td>3.17</td><td></td></tr><tr><td>소 계</td><td>86</td><td>17.05</td><td></td></tr><tr><td rowspan="4">조합원 및 일반분양</td><td>59.98</td><td>84</td><td>16.66</td><td></td></tr><tr><td>84.97</td><td>252</td><td>50.00</td><td></td></tr><tr><td>114.81</td><td>82</td><td>16.29</td><td></td></tr><tr><td>소 계</td><td>418</td><td>82.95</td><td></td></tr><tr><td colspan="2">합 계</td><td>504</td><td>100.00</td><td></td></tr><tr><td rowspan="10">변경</td><td rowspan="4">임대</td><td>39.20</td><td>42</td><td>5.94</td><td></td></tr><tr><td>43.80</td><td>42</td><td>5.94</td><td></td></tr><tr><td>57.98</td><td>12</td><td>1.70</td><td></td></tr><tr><td>소 계</td><td>96</td><td>13.58(17.05)</td><td>▶임대주택의 건립기준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10)-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td></tr><tr><td rowspan="3">조합원 및 일반분양</td><td>59.98</td><td>262</td><td>37.05</td><td>▶장기전세주택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72세대 포함</td></tr><tr><td>84.98</td><td>277</td><td>39.18</td><td></td></tr><tr><td>소 계</td><td>539</td><td>76.23</td><td></td></tr><tr><td>장기전세 주택</td><td>59.98</td><td>72</td><td>10.18</td><td>▶장기전세주택 관련 증가된 용적률 50%(49.94%)</td></tr><tr><td colspan="2">총 계</td><td>707</td><td>100.0</td><td></td></tr></table>					구 분		전용면적(㎡)	세대수	세대비율(%)	비 고	기정	임대	39.95	35	6.94		49.99	35	6.94		59.98	16	3.17		소 계	86	17.05		조합원 및 일반분양	59.98	84	16.66		84.97	252	50.00		114.81	82	16.29		소 계	418	82.95		합 계		504	100.00		변경	임대	39.20	42	5.94		43.80	42	5.94		57.98	12	1.70		소 계	96	13.58(17.05)	▶임대주택의 건립기준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10)-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조합원 및 일반분양	59.98	262	37.05	▶장기전세주택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72세대 포함	84.98	277	39.18		소 계	539	76.23		장기전세 주택	59.98	72	10.18	▶장기전세주택 관련 증가된 용적률 50%(49.94%)	총 계		707	100.0				
			구 분		전용면적(㎡)	세대수	세대비율(%)	비 고																																																																																									
			기정	임대	39.95	35	6.94																																																																																										
					49.99	35	6.94																																																																																										
					59.98	16	3.17																																																																																										
					소 계	86	17.05																																																																																										
				조합원 및 일반분양	59.98	84	16.66																																																																																										
					84.97	252	50.00																																																																																										
					114.81	82	16.29																																																																																										
					소 계	418	82.95																																																																																										
				합 계		504	100.00																																																																																										
				변경	임대	39.20	42	5.94																																																																																									
			43.80			42	5.94																																																																																										
			57.98			12	1.70																																																																																										
			소 계			96	13.58(17.05)	▶임대주택의 건립기준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10)-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조합원 및 일반분양		59.98	262	37.05	▶장기전세주택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72세대 포함																																																																																									
					84.98	277	39.18																																																																																										
					소 계	539	76.23																																																																																										
			장기전세 주택		59.98	72	10.18	▶장기전세주택 관련 증가된 용적률 50%(49.94%)																																																																																									
총 계		707	100.0																																																																																														
주 : ()는 장기전세주택 관련 세대수 제외 시 세대비율																																																																																																	
건축물의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지정 - 공동주택 : 105m - 산업시설 : 70m - 종교시설 : 50m																																																																																														
			○택지 A-1(공동주택용지) : 획지선에서 2m ○택지 A-2(산업용지) : 중로 1-1호선변 획지선에서 2m ○기타 : 건축법, 주택법등 관련 법규에 의함																																																																																														

4)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1)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비 고 (연면적)
기정	양평동1가 265-1일대	택지A-1에 포함	1	86	39.95㎡ (35세대) 49.99㎡ (35세대) 59.99㎡ (16세대)	계 : 8,894.93㎡ 지상 : 5,638.81㎡ 지하 : 6,256.12㎡
변경	양평동1가 265-1일대	택지A-1에 포함	1	96	39.20㎡ (42세대) 43.80㎡ (42세대) 57.98㎡ (12세대)	계 : 8,453.00㎡ 지상 : 5,772.99㎡ 지하 : 2,680.01㎡

(2) 장기전세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비 고
신규	양평동1가 265-1일대	택지A-1에 포함	72	59.98㎡	공급면적 : 5,897.54㎡ 용적률 : 24.97%

5)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 변경

구분	시 행 방 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 예상 세대수	홍수등 취약 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기정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정비구역내 도시환경정비조합	현황 : 387 세대 계획 : 504 세대 증) 117 세대	해당 없음	
변경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정비구역내 도시환경정비조합	현황 : 387 세대 계획 : 707 세대 증) 320 세대	해당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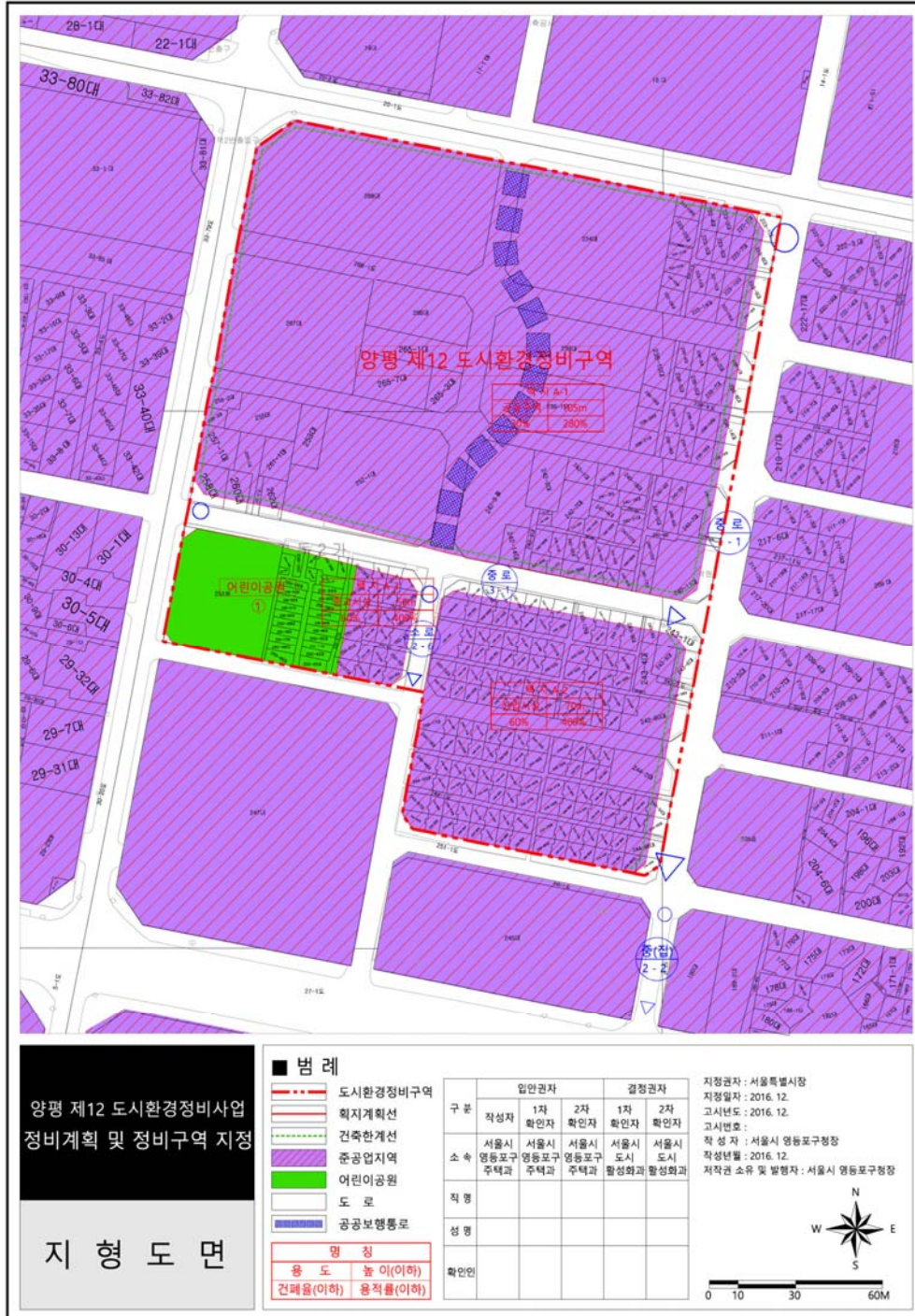
2.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3. 열람장소

-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2133-4645) 및 영등포구청 주택과(☎2670-3538)에 관계도서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음.

양평 제12 도시환경정비구역 지형도면고시도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485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지방세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 불명,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가.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성 명	주 소		
한재형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17, *3*2-*0* (초지동)	일시 : 2016-10-21 07:36 장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양재대로 내용 : 차량의 제한 폭 0.2m 초과	과태료 : 30만원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과태료 납부기한 : 2017. 01. 31.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7%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 가.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가 도달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문의처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 02-2040-0324, 팩스번호 : 02-2040-030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493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심의예고 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1. 예 고 일 : 시보공고일
2.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종별	종목 명칭	인정 대상자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무형문화재 (개인종목)	제15호 오죽장	윤병훈	남	1934.01.01
	제18호 민화장	김만희	남	1931.11.30
	제30호 옹기장	배요섭	남	1926.12.24

3.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30일

4. 예고사유

○ 서울시무형문화재 제15호 오죽장 윤병훈 보유자, 서울시무형문화재 제18호 민화장 김만희 보유자, 서울시무형문화재 제30호 옹기장 배요섭 보유자 등 3인은 고령 및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전수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고자 함

5. 의견제출 : 방문제출, 팩스, 또는 우편 제출(공고일부터 30일간)

- ① 전화 : (02)2133-2616(오문선 주무관) ② 팩스 : (02)768-8873
- ③ 우편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04515)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494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예고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심의예고 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

울특별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장

1. 예 고 일 : 시보공고일
2. 예고내용
 - 서울시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 화각장
3.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30일
4. 예고사유
 - 화각장 : 서울은 화각 공예의 소비뿐만 아니라 전승의 주된 공간으로서 전통화각공예품의 주산지였으므로 화각공예와 그것을 제작하는 화각장을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공예로 보전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화각장을 서울시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자 함.
5. 의견제출 : 방문제출, 팩스, 또는 우편 제출(공고일부터 30일간)
 - ① 전화 : (02)2133-2616(오문선 주무관) ② 팩스 : (02)768-8873
 - ③ 우편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0451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495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홍염장 보유자 인정 예고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홍염장 보유자 인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심의예고 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장

1. 예 고 일 : 시보공고일
2.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예고

종별	종목 명칭	인정 대상자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무형문화재 (개인종목)	홍염장	김경열	남	1959.10.16

3.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30일
4. 예고사유
 - 김경열은 오랜 전승활동으로 염액 및 홍떡 제조·개오기 염색·직물염색·실염색 등 홍화염색에 필요한 우수한 전승기량을 가지고 있으며 유물복원 및 교육·다수의 전시 등

전승활동 실적 등도 탁월하여, 홍염의 전승과 보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홍염장 보유자로 인정하고자 함

5. 의견제출 : 방문제출, 팩스, 또는 우편 제출(공고일부터 30일간)

① 전화 : (02)2133-2616(오문선 주무관) ② 팩스 : (02)768-8873

③ 우편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0451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507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내역 공고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장

1. 업체명 : 한국시거스(주)
2. 대표자 : 최 영 배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93, 2508호 (☎ 02-2645-0014)
4. 업종 : (유독물) 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정번호 : 유독물[제3호]
6. 지정일자 : 2016. 12. 26.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515호

2016년도 제23차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제23차 서울특별시 미술작품 심의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장

- 가. 심의일시 : 2016. 12. 23.(금) 10:00 ~ 12:30
- 나. 심의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 회의실
- 다. 심의작품 : 총 8건 8작품 (조각 7점, 미디어조각 1점)
- 라. 심의결과 : 승인 7작품, 부결 1작품
- 마. 작품별 심의결과 : 별첨
-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02-2133-27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제23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2016년 제23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의결합니다.

연번	건물명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사유 및 의견
				승인	부결	
1	송파구 오금보금자리주택 1단지	조각	나무의 기운	○		
2	송파구 오금보금자리주택 2단지	조각	바람의 숲	조건부 ○		어두운 화강석 종류를 사용하여 작품효과를 최대한 살릴 것
3	용산구 푸르지오 써밋	미디어 조각	스마트 미디어 포레스트	조건부 ○		장애인 이동 동선, 폭, 단(인도부분) 및 구조에 대한(타워부분 상세단면도) 자료 제출 요망
4	성동구 왕십리 자이	조각	만월	조건부 ○		작품 외부 스틸을 5t 사용권장, 모서리 부분 라운딩 처리 요망
5	성북구 꿈의숲 코오롱하늘채	조각	동화 같은 일상		○	금액대비 작품이 외소함, 스틸이 얇아 안전성이 우려됨
6	강남구 오피스빌딩	조각	어린왕자+2016	○		
7	광진구 캠퍼스시티	조각	미래를 위한 사색	○		
8	노원구 월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각	Happy Space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517호

과태료부와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공해차량 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에 의해 과태료 사전통지후, 송달불능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와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근거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
3. 공시송달내용(총81건)

과태료부와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1	70가1605	김진목	서울특별시 용산구 화나무로44가길 86 (이태원동)	2016-09-30 12:48:33	올림픽대로 공향방향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00,000원 (160,000원)
2	70구3046	김경주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 74, 309동 1002호 (상일동, 고덕리엔파크)	2016-08-30 12:00:47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1차로	"	"
3	70구3539	대한예수교장로회 천우교회(백요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340, 304동 601호 (둔촌동, 주공아파트)	2016-09-22 17:33:09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2차로	"	"
4	70너2184	고규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대역동로5가길 10 (휘경동)	2016-09-14 08:53:46	강변북로 일산방향 3차로	"	"
5	70노4837	신영수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2길 37, 101호 (화곡동, 성우하이츠빌라)	2016-09-02 06:39:42	서부간선도로 안양방향 3차로	"	"
6	70머1935	박유성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3길 57, 109동 401호 (신정동, 양천아파트)	2016-09-03 13:09:41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5차로	"	"
7	70서4677	윤창식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4길 21-6 401호(역촌동)	2016-09-04 07:59:15	강변북로 구리방향 4차로	"	"
8	73우4312	배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47길 7 (대림동)	2016-09-18 21:04:52	서부간선도로 성산방향 2차로	"	"
9	75너6225	MENG LONGZHE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30길 24-3, (독산동)	2016-09-25 08:54:03	서부간선도로 안양방향 3차로	"	"
10	75부3180	PIAO KUIXI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부순환로105라길 5, (가리봉동)	2016-09-22 15:53:40	올림픽대로 공향방향 4차로	"	"
11	76조2905	TIAN WENHA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 166, (신길동)	2016-09-30 16:34:00	올림픽대로 공향방향 4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12	77거8540	양동철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31나길 33, 401호 (하왕십리동, 상왕아파트)	2016-09-17 10:48:32	올림픽대로 공향방향 3차로	"	"
13	80거5112	황영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29길 69 (전농동)	2016-09-20 17:44:58	강변북로 일산방향 4차로	"	"
14	80거5312	이현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33 (전농동)	2016-09-21 10:45:10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5차로	"	"
15	80고6080	양규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98 (하계동)	2016-08-21 08:16:37	강변북로 일산방향 3차로	"	"
16	80고6310	박명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봉로12나길 18-2 (신길동)	2016-09-26 20:14:17	서부간선도로 성산방향 1차로	"	"
17	80고6361	이도순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260-13 (신림동)	2016-09-28 16:08:10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2차로	"	"
18	80고7194	이정진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3길 36-12, 402호 (가산동, 다원빌라)	2016-09-16 01:51:07	서부간선도로 성산방향 2차로	"	"
19	80구6511	전병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흥길 59, 201호 (반포동)	2016-09-26 17:20:15	강변북로 구리방향 3차로	"	"
20	80나1460	김계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남로16다길 49-8, 103호 (목동)	2016-09-20 15:23:43	서부간선도로 성산방향 1차로	"	"
21	80나2497	정현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릉로22길 48 (청량리동)	2016-09-28 16:44:22	강변북로 일산방향 4차로	"	"
22	80너4030	주-신지앤지아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5길 10, 수창빌딩 지층(논현동)	2016-09-23 13:45:20	올림픽대로 공향방향 1차로	"	"
23	80너5574	오영란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산길 32, 302호 (금호동3가)	2016-09-06 15:26:06	강변북로 구리방향 1차로	"	"
24	80너5665	김용덕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27길 51-4 (면목동)	2016-09-14 13:33:20	강변북로 구리방향 1차로	"	"
25	80누3611	박현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5길 37-1, 301호 (자양동)	2016-09-21 12:44:24	강변북로 구리방향 2차로	"	"
26	80누6243	간상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11길 55 807호(방이동, 현대주상복합)	2016-09-15 20:32:34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3차로	"	"
27	80다2013	이정철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24길 18, 5동 203호 (평창동, 금강하이츠빌라)	2016-09-26 07:22:43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4차로	"	"
28	80다3576	윤병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43, (갈월동)	2016-08-14 12:29:39	강변북로 구리방향 2차로	"	"
29	80다3803	김현태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168다길 42-10 (성내동)	2016-09-16 17:04:29	올림픽대로 공향방향 2차로	"	"
30	80더1834	최차운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65길 27 (면목동)	2016-09-30 19:52:57	강변북로 구리방향 4차로	"	"
31	80라1835	김화옥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121, 106동 1306호 (가양동, 대림경동아파트)	2016-08-18 19:31:22	올림픽대로 공향방향 2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32	80러2319	이승철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45길 21, 109동 1001호 (월계동, 롯데캐슬루나 아파트)	2016-09-25 08:30:43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2차로	"	"
33	80러4008	김진화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59길 63 (자양동)	2016-09-26 12:13:57	올림픽대로 공향방향 2차로	"	"
34	80로6646	채경훈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4길 31, 502호 (목동, 토미하우스)	2016-09-14 16:13:29	서부간선도로 성산방향 2차로	"	"
35	80마1450	김보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96길 43-10 (망우동)	2016-09-02 13:19:52	강변북로 구리방향 1차로	"	"
36	80마2406	이수근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로25길 46, 504호 (상봉동)	2016-09-09 07:20:02	올림픽대로 공향방향 3차로	"	"
37	80마3083	안형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2나길 50, C동 602호 (월계동, 삼창아파트)	2016-09-28 11:43:48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5차로	"	"
38	80마3426	서옥화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2길 11-7, 301호 (삼전동)	2016-09-29 00:29:02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3차로	"	"
39	80모4720	조병운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32길 78-16 (장위동)	2016-09-30 11:01:12	강변북로 구리방향 1차로	"	"
40	80모8056	김보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39라길 23-1, B01호(홍은동)	2016-09-07 17:39:19	강변북로 일산방향 4차로	"	"
41	80소1548	채수병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2나길 79-7, 103호 (신대방동, 하이빌)	2016-09-28 16:11:57	강변북로 일산방향 4차로	"	"
42	80오1720	오치홍	서울특별시 서초구 송동길 102 (우면동)	2016-09-14 08:52:22	강변북로 일산방향 3차로	"	"
43	80오2442	이은성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2아길 82, B01호 (신대방동, 차세대빌라)	2016-08-30 17:21:52	올림픽대로 공향방향 5차로	"	"
44	80오4515	정오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컴북로16길 36, 102호 (성산동, 통일빌라)	2016-09-27 09:53:21	서부간선도로 안양방향 3차로	"	"
45	80저4107	김은석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4가길 38-1 (수유동)	2016-09-28 13:32:52	서부간선도로 성산방향 1차로	"	"
46	85라5170	방극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11길 9-2 (전농동)	2016-09-15 13:14:20	강변북로 구리방향 4차로	"	"
47	86노5352	김부겸	주소:서울특별시광진구용마산 로8길55(중곡동)	2016-08-10 10:47:27	강변북로 일산방향 3차로	"	"
48	86수4200	윤호성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9길 28-56 (대조동)	2016-09-24 16:31:21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3차로	"	"
49	88버9243	정병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26길 82-6, 2층호 (안암동2가)	2016-09-25 09:24:48	올림픽대로 공향방향 3차로	"	"
50	89어1835	주식회사 삼경이앤씨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6길 32, 남광빌딩 502호(성내동)	2016-08-22 01:57:10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2차로	"	"
51	89오4538	주식회사 비트로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09, 424-1호 (당산동2가, 영등포유통상가)	2016-09-27 08:26:57	강변북로 구리방향 4차로	"	"
52	89조1811	김재홍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4길 30 (노고산동)	2016-09-28 06:56:39	강변북로 구리방향 2차로	"	"
53	90가3259	진인석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43길 22 (목동)	2016-09-16 05:20:06	강변북로 구리방향 4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54	90가7081	김명삼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울내로11길 61, 202호 (망원동, 대원빌리지)	2016-09-30 10:57:44	강변북로 일산방향 4차로	"	"
55	90두1914	김경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41길 96 (시흥동)	2016-09-08 18:33:30	강변북로 일산방향 4차로	"	"
56	90라5656	전성삼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96길 52, 5층 (공릉동, 대승빌라)	2016-09-24 04:14:02	강변북로 일산방향 4차로	"	"
57	90무3346	심창학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역로 3-5 (중화동)	2016-09-30 21:16:18	강변북로 구리방향 3차로	"	"
58	90수2244	강민영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패산로52아길 28, 1층 1호 (미아동)	2016-09-30 01:07:49	강변북로 구리방향 1차로	"	"
59	91가6117	이재용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97길 20, 1010동 402호 (강일동, 강일리버파크)	2016-09-28 15:00:22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4차로	"	"
60	91거2427	이흥진	경기도 하남시 감초로184번길 54-35 (초이동)	2016-09-15 08:00:39	강변북로 일산방향 3차로	"	"
61	91나5354	(주)리더웍스이엔 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02길 34, 201호 (면목동, 현성빌2차)	2016-09-06 20:51:55	서부간선도로 성산방향 2차로	"	"
62	92보4714	한중수	서울특별시 중랑구 숙선옹주로 91, 412동 1106호 (묵동, 신내아파트)	2016-09-25 16:38:18	강변북로 구리방향 2차로	"	"
63	94너8998	임영환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13길 55-24 (망원동)	2016-09-24 06:46:15	강변북로 구리방향 3차로	"	"
64	94다2646	박미나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2나길 1, 지하층 (신대방동)	2016-08-07 23:13:35	강변북로 구리방향 3차로	"	"
65	95가6145	선남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64길 5 (장안동)	2016-09-13 22:39:54	강변북로 일산방향 4차로	"	"
66	95거6128	김현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연길 36, 1층 1호 (연희동)	2016-09-24 09:49:25	강변북로 구리방향 4차로	"	"
67	96거1028	정천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13길 29 (전농동)	2016-09-18 07:27:11	서부간선도로 안양방향 1차로	"	"
68	96주7487	JARKAS MOHAMED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56길 126, 3층 (답십리동)	2016-09-26 13:28:54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2차로	"	"
69	97오2276	유진그린환경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 1063-9 (천왕동)	2016-08-06 14:56:09	강변북로 구리방향 3차로	"	"
70	서울80자7 431	김경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 160 (신길동)	2016-09-30 15:26:35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3차로	"	"
71	서울82두2 664	곽윤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6길 29, 201호 (동선동5가, 신광빌라)	2016-08-30 17:25:36	서부간선도로 안양방향 3차로	"	"
72	서울83자6 760	임경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 10, 302호 (풍납동)	2016-09-26 10:58:14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2차로	"	"
73	서울84사5 051	이천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13길 10-5 (종암동)	2016-09-19 15:05:58	강변북로 일산방향 4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감경액)
74	서울85더9 246	김성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설로6길 15 2층(이도이동)	2016-09-28 16:26:19	서부간선도로 안양방향 2차로	"	"
75	서울85자5 867	김영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북로 860 212동 902호(성사동, 래미안휴레스트)	2016-09-20 13:18:50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5차로	"	"
76	서울87자2 285	유한주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10길 12-10, 501호 (대조동, 거성리젠시)	2016-09-06 15:32:16	서부간선도로 성산방향 1차로	"	"
77	92두2001	심요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18길 15, 4층동 401호 (천호동)	2016-09-03 13:19:46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1차로	"	"
78	90루2004	김상환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로8길 130-3, 나동 (오류동)	2016-07-25 06:49:07	강변북로 일산방향 2차로	"	"
79	80라1859	김수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37길 33, 106동 1102호(답십리동, 래미안엘파인아파트)	2016-07-21 07:33:06	강변북로 일산방향 3차로	"	"
80	서울85거3 941	구학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24길 19, 102동 1404호 (미아동, 현대성우아파트)	2016-08-05 11:55:28	서부간선도로 안양방향 3차로	"	"
81	80구8340	주현수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75길 20-13 (효창동)	2016-09-22 16:19:45	강변북로 일산방향 2차로	"	"

4. 공고 기 간 : 공고일(서울시 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17.1.10.(화)

나. 본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
라오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20%)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의견제출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대기관리과(운행차관리팀)
- 담당 : 이동선(Tel 02-2133-3659, Fax 02-2133-1025)

붙임 : 의견 제출서(서식) 1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518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행정처분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장

☐ 행정처분 현황

처분대상	처분내용	처 분 사 유	처분근거	비 고
(주)에이엔지엔지니어링종합 건축사사무소 대표 : 최태희, 임은영	영업정지 3개월 (2017.04.01 ~ 2017.06.30)	'신온~창기간 4차로 확포장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전면책임감리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자의 퇴사(2016.7.29)로 인한 배치변경 을 요청(2016.8.25)하여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발주기관인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에서 변경승인(2016.9.1)하였으나, 당초 책임건설사 업관리기술자의 재 입사일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 자 변경요청 및 발주기관의 변경승인 이전 (2016.8.1.)이었음이 경력조회 결과 확인되었으므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부정한 방 법으로 교체한 경우'의 위반 행위에 해당함.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제2항 제5호사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5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직인을 폐기 및 등록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장

1. 폐기 직인 (폐기사유 : 지방기금법 개정에 따른 특별회계 폐지)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등록일자	비고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분임정수관	훈민정음체 2.0cm X 2.0cm		2011.10.9.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등록일자	비고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 X 1.8cm		2011.10.9.	

2. 등록 직인 (등록사유 : 지방기금법 개정에 따른 기금 신설)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 등록일자	비고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운용관	훈민정음체 2.0cm X 2.0cm		2017.1.1.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분임운용관	훈민정음체 2.0cm X 2.0cm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출납원	훈민정음체 1.8cm X 1.8cm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8호

도시계획시설(청소년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를 위한 열람공고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6호(2016.10.13.)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7호(2016.10.13.)로 도시관리계획(중계2단지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248호(2016.11.17.)로 도시계획시설(청소년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95호(2016.12.8.)로 도시계획시설(청소년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노원구 하계동 224-9외 3필지에 신설되는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청소년시설)에 대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지장물)이 추가되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청소년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하고자, 같은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열람공고로 갈음합니다.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24-9외 3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청소년시설)사업
- 2) 명 칭 :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신축공사

다.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1) 부지면적 : 2,519㎡
- 2) 건축규모 : 지상3층/지하1층, 연면적 3,099㎡
- 3) 용 도 : 청소년수련시설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1) 성 명 :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청소년담당관)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4층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2년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따로붙임

※ 변경사유 : 감정평가 진행 중 누락된 물건(지장물) 발견

사.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아. 열람장소 : ① 서울특별시 청소년담당관(중구 덕수궁길 15, ☎ 02-2133-4126)

② 노원구청 체육청소년과(노원구 노해로 437, ☎ 02-2116-3718)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청소년담당관(☎ 02-2133-4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사업명 :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건립(노원구 하계동)
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관리내용	
1	노원구 하계동 256-21	학교	963	963	임야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				
2	노원구 하계동 223-17	답	399	399	임야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				
3	노원구 하계동 222-1	임야	92	92	임야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				
4	노원구 하계동 224-9	구거	1,065	1,065	무허가건축물 12가구 (주거)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				

물 건 조 서(건물)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사업명 :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건립(노원구 하계동)
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층 수	수량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외 권리	
1	노원구 하계동	224-9 (6-3)	건축물	세멘조	151	주거	정수아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24-9					무허가건축물
2	노원구 하계동	224-9 (6-6)	건축물	세멘조	107	주거	이일호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20-4 진주아파트 14동 406호					무허가건축물
3	노원구 하계동	224-9 (6-7)	건축물	세멘조	36	주거	배영자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04 삼성풍림2차아파트 308호					무허가건축물
4	노원구 하계동	224-9 (6-9)	건축물	세멘조	46	주거	조광록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183-1 201호					무허가건축물
5	노원구 하계동	224-9 (6-10)	건축물	세멘조	71	주거	지영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6-13 송화빌딩 402호					무허가건축물
6	노원구 하계동	224-9 (6-11)	건축물	세멘조	38	주거	정의엽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2 청담퍼스트타워 502호					무허가건축물
7	노원구 하계동	224-9 (6-13)	건축물	세멘조	50	주거	이상규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9 유진빌딩 203호					무허가건축물
8	노원구 하계동	224-9 (6-15)	건축물	세멘조	118	주거	김현숙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2 대치아파트 214동 901호					무허가건축물
9	노원구 하계동	224-9 (6-21)	건축물	세멘조	41	주거	박경묵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533 세곡푸르지오 213동 903호					무허가건축물
10	노원구 하계동	224-9 (6-25)	건축물	벽돌조	40	주거	신한우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93-34 102호					무허가건축물
11	노원구 하계동	224-9 (6-33)	건축물	세멘조	99	주거	표주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24-29 303호					무허가건축물
12	노원구 하계동	224-9 (6)	건축물	세멘조	131	교회	하계동 교회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24-9					무허가건축물

물 건 조 서(지장물)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사업명 :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건립(노원구 하계동)
변경전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수량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와내용	
1	노원구 하계동	224-9 (6)	첨탑	철	1식	하계동 교회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24-9(6)					소유자
2			간판		1식	하계동 교회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24-9(6)					소유자
3			햇빛가리개		1식	하계동 교회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24-9(6)					소유자
4			비막콘크리트	콘크리트	44.04	하계동 교회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24-9(6)					소유자
5			창고	세멘조	2	하계동 교회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24-9(6)					소유자
6			기타물건		1식	하계동 교회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24-9(6)					소유자
7	노원구 하계동	224-9 (6-3)	화단	세멘조	3.4	이도영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24-9(6-3)					세입자
8			기타물건		1식	이도영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24-9(6-3)					세입자
9	노원구 하계동	224-9 (6-6)	기타물건		1식	조한나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24-9(6-6)					세입자
10			나무	단풍나무	1식	윤종미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24-9(6-6)					세입자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수량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1			기타물건		1식	윤종미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24-9(6-6)				세입자
12			기타물건		1식	김장석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24-9(6-6)				세입자
13			기타물건		1식	곽명철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24-9(6-6)				세입자
14	노원구 하계동	224-9 (6-7)	기타물건		1식	김옥근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24-9(6-7)				세입자
15	노원구 하계동	224-9 (6-9)	기타물건		1식	송의섭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24-9(6-9)				세입자
16	노원구 하계동	224-9 (6-10)	기타물건		1식	이화진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24-9(6-10)				세입자
17	노원구 하계동	224-9 (6-11)	기타물건		1식	권일성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24-9(6-11)				세입자
18	노원구 하계동	224-9 (6-13)	기타물건		1식	허승녀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24-9(6-13)				세입자
19	노원구 하계동	224-9 (6-15)	기타물건		1식	이문수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24-9(6-15)				세입자
20	노원구 하계동	224-9 (6-21)	기타물건		1식	김영일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24-9(6-21)				세입자
21			장독대창고	세멘조	1식	김영일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24-9(6-21)				세입자
22	노원구 하계동	224-9 (6-25)	기타물건		1식	이호창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24-9(6-25)				세입자
23	노원구 하계동	224-9 (6-33)	기타물건		1식	김종상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24-9(6-33)				세입자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수량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와내용	
1	노원구 하계동	256-21	수위실	조적	29.7	혜성여자기 등학교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산16-38				소유자	
2			cctv	철	3식							
3			수목	향나무	45식							
4			수목	소나무	8식							
5			수목	주목	17식							
6			수목	사철나무	1식							
7			수목	연산홍	3식							
8			수목	오동나무	1식							
9			수목	미상	2식							
10			담장	조적	94.5							
11			교문	스테인리스,화강암	31.2							
1	노원구 하계동	223-17	담장	매쉬펜스	64.5	혜성여자기 등학교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산16-38				소유자	
2			수목	편백나무	38식							
3			수목	개나리	7식							
4			수목	개복숭아	2식							
5			수목	무궁화	4식							
6			수목	향나무	19식							
7			수목	사철나무	2식							
8			수목	연산홍	11식							
9			수목	느티나무	1식							
10			수목	장미	8식							
1	노원구 하계동	222-1	담장	조적	6.36	혜성여자기 등학교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산16-38				소유자	
2			수목	목련	1식							
3			수목	연산홍	4식							
4			수목	향나무	3식							
5			수목	편백나무	17식							

물 건 조 서(지장물)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사업명 :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건립(노원구 하계동)
 변경후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수량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와내용	
1	노원구 하계동	224-9 (6)	침탑	철	1식	하계동 교회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24-9(6)				소유자
2			간판		1식	하계동 교회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24-9(6)				소유자
3			햇빛가리개		1식	하계동 교회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24-9(6)				소유자
4			바닥콘크리 트	콘크리트	44.04	하계동 교회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24-9(6)				소유자
5			창고	세멘조	2	하계동 교회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24-9(6)				소유자
6			기타물건		1식	하계동 교회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24-9(6)				소유자
7	노원구 하계동	224-9 (6-3)	화단	세멘조	3.4	이도영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24-9(6-3)				세입자
8			기타물건		1식	이도영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24-9(6-3)				세입자
9	노원구 하계동	224-9 (6-6)	기타물건		1식	조한나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24-9(6-6)				세입자
10			나무	단풍나무	1식	윤종미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24-9(6-6)				세입자
11			침탑	철	1식	윤종미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24-9(6-6)				세입자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수량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와내용	
12			기타물건		1식	문종미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24-9(6-6)					세입자
13			기타물건		1식	김장석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24-9(6-6)					세입자
14			기타물건		1식	곽명철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24-9(6-6)					세입자
15	노원구 하계동	224-9 (6-7)	기타물건		1식	김욱근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24-9(6-7)					세입자
16	노원구 하계동	224-9 (6-9)	기타물건		1식	송익섭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24-9(6-9)					세입자
17	노원구 하계동	224-9 (6-10)	기타물건		1식	이화진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24-9(6-10)					세입자
18	노원구 하계동	224-9 (6-11)	기타물건		1식	권일성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24-9(6-11)					세입자
19	노원구 하계동	224-9 (6-13)	기타물건		1식	허승녀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24-9(6-13)					세입자
20	노원구 하계동	224-9 (6-15)	기타물건		1식	이문수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24-9(6-15)					세입자
21	노원구 하계동	224-9 (6-21)	기타물건		1식	김영일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24-9(6-21)					세입자
22			장독대창고	세멘조	1식	김영일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24-9(6-21)					세입자
23	노원구 하계동	224-9 (6-25)	기타물건		1식	이호창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24-9(6-25)					세입자
24	노원구 하계동	224-9 (6-33)	기타물건		1식	김종상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24-9(6-33)					세입자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수량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와내용	
1	노원구 하계동	256-21	수위실	조적	29.7	혜성여자고등 학교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신16-38						소유자
2			cctv	철	3식								
3			수목	항나무	45식								
4			수목	소나무	8식								
5			수목	주목	17식								
6			수목	사철나무	1식								
7			수목	연산홍	3식								
8			수목	오동나무	1식								
9			수목	미상	2식								
10			담장	조적	94.5								
			교문	스테인리스, 화강암	31.2								
1	노원구 하계동	223-17	담장	메쉬펜스	64.5	혜성여자고등 학교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신16-38						소유자
2			수목	편백나무	38식								
3			수목	개나리	7식								
4			수목	게복송아	2식								
5			수목	무궁화	4식								
6			수목	항나무	19식								
7			수목	사철나무	2식								
8			수목	연산홍	11식								
9			수목	느티나무	1식								
10			수목	장미	8식								
1	노원구 하계동	222-1	담장	조적	6.36	혜성여자고등 학교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신16-38						소유자
2			수목	목련	1식								
3			수목	연산홍	4식								
4			수목	항나무	3식								
5			수목	편백나무	17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9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단계별집행계획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40호(2016.1.28)로 공고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의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1.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시설명	사업개요			계획기간중 사업비(2016~2025)										
	건수	사업 규모 (㎡)	총 사업비 (백만원)	집행방식별 사업비 (백만원)					단계별 사업비 (백만원)					
				총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국비	시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16	'17	'18	'19	'20	'21년 이후
기 정	12	158,469	513,958	513,958	-	368,641	145,317	-	9,000	20,677	24,885	50,900	75,200	333,296
	도로	10	152,809	445,451	-	325,651	119,800	-	9,000	20,677	24,885	44,900	63,200	282,789
	광장	2	5,660	68,507	-	42,990	25,517	-	-	-	-	6,000	12,000	50,507
변 경	16	128,137	617,687	617,687	-	426,050	23,526	168,111	9,000	11,084	53,748	75,496	157,887	310,472
	도로	14	123,712	558,506	-	390,395	-	168,111	9,000	11,084	53,748	66,496	139,887	278,291
	광장	2	4,425	59,181	-	35,655	23,526	-	-	-	-	9,000	18,000	32,181

2. 단계별집행계획 조서 : 별첨

3. 관계도면 : 생략

4.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2133-8087)에 해당 시설의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기정)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도로)

-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6-140호 (2016.01.28) -

사업 사업 · 시설 부문	사업개요			계획기간중 사업비 (2016~2025)										실효 시기						
	우선 순위	사업명 (위치)	사업 기간	사업 규모	총 사업비 (백만원)	집행방식별 사업비 (백만원)					단계별 사업비 (백만원)									
						총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국비	시비	지방 채	공기업 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16		'17	'18	'19	'20	'21년 이후	
도로		총계		152,809㎡	445,451	445,451		325,651			119,800	9,000	20,677	24,885	44,900	63,200	282,789			
	1	도림로 (영등포구 문래동광장~신길동광 장)	'16.1 ~'17.12.	폭35m 연장328m 면적779㎡	9,177	9,177		9,177				2,000	7,177						2020	
	2	성북동길 (종로구 신영동 신영삼거리~성북구 성북동 성북동길)	'16.1 ~'20.12.	폭25m 연장380m 면적9,500㎡	21,500	21,500		21,500				2,000	4,500	4,500	5,200	5,300			2020	
	3	서초대로 (서초구 서초동~사당동)	'16.1 ~'25.12.	폭40m 연장1,870m 면적18,700㎡	191,537	191,537		191,537				5,000	8,000	10,000	25,000	25,000	118,537		2020 이후	
	4	신길로 (영등포구 영등포동 94~신길동 192~155)	'17.1 ~'18.12.	폭28m 연장105m 면적1,466㎡	3,385	3,385		3,385					1,000	2,385					2020	
	5	현릉로 (서초구 양재동 광로1~28~장지동 광로1~29)	'18.1 ~'25.12.	폭50m 연장900m 면적6,929㎡	20,394	20,394		20,394							8,000	4,000	4,000	4,394	2020 이후	
	6	가람길~성수일로 (성동구 성수동2가~동대문구 휘경동)	'19.1 ~'25.12.	폭20m 연장2,370m 면적47,400㎡	33,658	33,658		33,658							4,200	4,300	25,158	2020 이후		

사업 · 시설 부문	우선 순위	사업개요			계획기간중 사업비(2016~2025)													실효 시기	
					집행방식별 사업비 (백만원)					단계별 사업비 (백만원)									
		사업명 (위치)	사업 기간	사업 규모	총 사업비 (백만원)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국비	시비	지방 채	지방 공기업	민간 투자	공공 기여	'16	'17	'18	'19	'20	'21년 이후		
도로	7	석계로~한천로 (노원구 월계동 419~월계동 412-2)	'19.1 ~'25.12.	폭20m 연장1,370m 면적44,950㎡	46,000	46,000										6,500	6,600	32,900	2020 이후
	8	살곶이길 (성동구 응봉동 234-1~마장교)	'20.1 ~'25.12.	폭20m 연장600m 면적12,000㎡	2,557	2,557				2,557							1,000	1,557	2020 이후
	9	신도림로 (구로구 신도림동 296~103일원)	'20.1 ~'25.12.	폭35m 연장301m 면적10,535㎡	96,643	96,643				96,643							10,000	86,643	2020 이후
	10	소공로 (중구 시청앞광장 ~한곡은평)	'20.1 ~'25.12.	폭5m 연장110m 면적550㎡	20,600	20,600					20,600						7,000	13,600	2020 이후

(기정)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광장)

사업 · 시설 부 품	사업개요			계 획 기 간 중 사 업 비 (2016~2025)												실 회 시 기		
	우선 순 위	사업명 사업 (위 지)	사업 기간	사업 규모 (㎡)	총 사업 비 (백 만 원)	집 행 방 식 별 사 업 비 (백 만 원)					단 계 별 사 업 비 (백 만 원)							
						총 계	재 정 적			비 재 정 적		1 단 계			2-1 단 계		2-2 단 계	
							국 비	시 비	지 방 채	공 기 업	민 간 투 자	공 공 기 여	'16	'17	'18			'19
광 장	1	노 량 진 역 광 장 (동 작 구 노 량 진 60)	'19.1 ~ '25.12.	2,890	42,990	68,507	42,990								6,000	12,000	50,507	2020 이 후
	2	남 구 로 광 장 (구 로 구 구 로 동 586-10)	'20.1 ~ '25.12.	2,770	25,517	25,517											6,000	19,517

(변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도로)

사업 · 시설 부문	사업개요			계획기간중 사업비(2016~2025)													실효 시기		
	우선 순위	사업명 (위치)	사업 기간	사업 규모	총 사업비 (백만원)	집행방식별 사업비 (백만원)						단계별 사업비 (백만원)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총계	국비	시비	지방 채	공기업 투자	민간 투자	공공 기여	'16	'17	'18	'19			'20
	총계				558,506	-	390,395	-	-	-	168,111	9,000	11,084	53,748	66,496	139,887	278,291		
	1	(영등포구문래동광장~ 신길동광장)	'16.1 ~'19.12.	폭5m 연장469m 면적2,345㎡	23,038	-	9,177	-	-	-	13,861	2,000	2,600	11,138	7,300	-	-		
	2	(성북동길 성북구 성북동길 ~삼정터널)	'16.1 ~'25.12.	폭28m 연장1,360m 면적38,080㎡	36,660	-	36,660	-	-	-	-	2,000	1,200	7,800	5,200	18,091	2,369		
	3	(서초대로 서초구강남역 ~서초구서초역)	'16.1 ~'25.12.	폭10m 연장1,870m 면적18,700㎡	262,244	-	262,244	-	-	-	-	5,000	6,300	11,700	25,000	25,000	189,244		
도로	4	(영등포청과시장입구교 차로~청과물시장)	'17.1 ~'20.6.	폭1~11m 연장100m 면적505㎡	5,548	5,548	-	5,548	-	-	-	-	100	2,000	2,000	1,448	-		
	5	(신길로 영등포구영등동94~ 영등포구대림동918-56)	'18.1 ~'25.12.	폭3~5m 연장558m 면적2,394㎡	21,682	21,682	-	3,385	-	-	-	18,297	-	-	2,385	1,000	3,301	14,996	
	6	(현릉로 서초구내곡동1-292~ 서초구내곡동1-752)	'18.1 ~'25.12.	폭20m 연장900m 면적18,000㎡	4,048	4,048	-	4,048	-	-	-	-	-	-	1,620	800	800	828	
	7	(대학로 이화사거리 ~충로5가역)	'18.1 ~'20.6.	폭6m 연장540m 면적3,240㎡	41,553	41,553	-	41,553	-	-	-	-	-	-	12,000	12,000	17,553	-	

사업 사업 · 시설 부문	우선 순위	사업개요				계획기간중 사업비(2016~2025)												실효 시기	
		사업명 (위치)	사업 기간	사업 규모	총 사업비 (백만원)	집행방식별 사업비 (백만원)						단계별 사업비 (백만원)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국비	시비	지방 채	공기업 투자	민간 투자	공공 기여	' 16	' 17	' 18	' 19	' 20	' 21년 이후		
도로	8	명동9길 (명동관광정보센터~중 구명동179-16)	'18.1 ~'25.12.	폭6~7m 연장95m 면적603㎡	28,499	-	6,196	-	-	-	22,303	-	-	-	3,000	3,196	10,000	12,303	
	9	광운로 (월계로~광운대역)	'20.1 ~'25.12.	폭20m 연장920m 면적18,400㎡	21,584	-	21,584	-	-	-	-	-	-	-	-	-	15,226	6,358	
	10	살곶이길 (행당도시개발구역)	'17.1 ~'18.12.	폭20m 연장307m 면적6,140㎡	2,631	-	-	-	-	-	2,631	-	526	2,105	-	-	-	-	
	11	한강대로104길 (후암동시장앞~동자동4 0-4)	'20.1 ~'25.12.	폭20m 연장178m 면적3,560㎡	10,794	-	-	-	-	-	10,794	-	-	-	-	-	1,000	9,794	
	12	돈화문로 (세종로82-14~충신동 27-64)	'17.1 ~'25.12.	폭5m 연장60m 면적300㎡	11,927	-	-	-	-	-	11,927	-	358	-	-	-	1,000	10,569	
	13	신도림로 (구로구신도림동296-1 03말원)	'20.1 ~'25.12.	폭35m 연장305m 면적10,675㎡	61,830	-	-	-	-	-	61,830	-	-	-	-	-	30,000	31,830	
	14	소공로 (소공동특별계획구역)	'19.1 ~'20.6.	폭7m 연장110m 면적770㎡	26,468	-	-	-	-	-	26,468	-	-	-	-	10,000	16,468	-	

(변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광장)

사업 · 시설 부문	사업개요				계획기간중 사업비(2016~2025)											실호 시기			
	우선 순위	사업명 (위치)	사업 기간	사업 규모 (㎡)	총 사업비 (백만원)	집행방식별 사업비 (백만원)					단계별 사업비 (백만원)								
						총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국비	시비	지방 채	공기업	민간 투자	공공 기여	'16	'17	'18		'19	'20	
광장		총계		4,425	59,181	-	35,655	-	-	23,526	-	-	-	-	9,000	18,000	32,181		
	1	노량진역광장 (동작구노량진60)	'19.1 ~'25.12.	1,655	35,655	-	35,655	-	-	-	-	-	-	-	9,000	9,000	17,655		
	2	남구로광장 (구로구로동 586-10)	'20.1 ~'25.12.	2,770	23,526	-	-	-	-	23,526	-	-	-	-	-	9,000	14,526		

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16-11호

재산등록사항 공개 공고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수시 재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소속	서울문화재단		직위	대표이사	성명	주철환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가액 (실거래가액)	(단위 : 천원)	
▶ 건물 (소계)				1,557,000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건물 95.06㎡		639,000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광화문 풍림스페이스본 1단지 건물 136.40㎡		798,000		
배우자	아파트 전세(임차)권	강원도 강릉시 저동 경포현대아파트 건물 84.91㎡		120,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소계)				31,430		
배우자	자동차	2013년식 K5 배기량(2,000cc)		19,940		
배우자	자동차	2014년식 벨로스터 1.6 배기량(1,951cc)		11,490		

▶ 예금 (소계)		876,574	
본인	푸르덴셜생명보험 60,000, 신한은행 20,648, 롯데손해보험 11,913, 중앙일보신협 35,913, 농협중앙회 49, (주)KEB하나은행 17,951, 삼성화재해상보험 28,220	174,694	
배우자	한국교직원공제회 145,031, 사직동 45,000, 미래에셋대우(주) 894, 국민은행 281,550, 푸르덴셜생명보험 7,938, 농협중앙회 83,767, 한국투자증권 19, 교보생명보험 76,838	641,037	
장남	현대해상화재보험 1,606, 농협중앙회 47,244, (주)KEB하나은행 1,085, 키움닷컴증권 107, 농협은행 1, 푸르덴셜생명보험 10,800	60,843	
▶ 증권 (소계)		21,703	
배우자	상장주식 대신정보통신 2주, 케이티파워텔 2,950주	8,057	
장남	상장주식 한울바이오파마 200주, 영진약품 625주, 대웅제약 19주, 화승인더 144주	13,646	
▶ 채무 (소계)		694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공무원연금공단 694	694	
총계		2,486,013	

서울시교육청공고

◆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16-13호

2016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 고시

제27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2016.12.16.)에서 의결된 2016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교육감

☐ 세입예산

(단위:천원)

과 목		추경증감	기정예산	합계	증감률
장	관				
합 계		60,134,352	8,568,138,020	8,628,272,372	0.7%
이전수입	소계	60,134,352	7,652,054,221	7,712,188,573	0.8%
	중앙정부이전수입	48,645,571	5,011,605,749	5,060,251,320	1.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0,903,381	2,629,814,145	2,640,717,526	0.4%
	기타이전수입	585,400	10,634,327	11,219,727	5.5%
자체수입	소계	0	175,914,666	175,914,666	0.0%
	교수-학습활동수입	0	133,270,036	133,270,036	0.0%
	행정활동수입	0	5,145,987	5,145,987	0.0%
	자산수입	0	8,683,173	8,683,173	0.0%
	이자수입	0	5,547,058	5,547,058	0.0%
	금융자산회수	0	5,000	5,000	0.0%
	기타수입	0	23,263,412	23,263,412	0.0%
차입	소계	0	421,065,133	421,065,133	0.0%
	지방교육채	0	421,065,133	421,065,133	0.0%
기타	소계	0	319,104,000	319,104,000	0.0%
	전년도이월금	0	319,104,000	319,104,000	0.0%

☐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추경증감	기정예산	합계	증감률
합 계	60,134,352	8,568,138,020	8,628,272,372	0.7%
1. 유아및초중등교육	59,268,121	8,244,517,898	8,303,786,019	0.7%
가. 인적자원운용	16,725	4,243,546,869	4,243,563,594	0.0%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12,864,331	363,679,182	376,543,513	3.5%
다. 교육복지지원	2,605,364	987,767,620	990,372,984	0.3%
라. 보건/급식/체육활동	4,328,687	362,586,668	366,915,355	1.2%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0	1,742,521,617	1,742,521,617	0.0%
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9,453,014	544,415,942	583,868,956	7.2%
2. 평생·직업교육	549,428	24,313,121	24,862,549	2.3%
가. 평생교육	549,428	22,368,021	22,917,449	2.5%
나. 직업교육	0	1,945,100	1,945,100	0.0%
3. 교육일반	316,803	299,307,001	299,623,804	0.1%
가. 교육행정일반	146,060	59,382,924	59,528,984	0.2%
나. 기관운영관리	0	46,605,049	46,605,049	0.0%
다. 지방재상환및리스크	170,743	183,083,340	183,254,083	0.1%
라. 예비비및기타	0	10,235,688	10,235,688	0.0%

◆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16-14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고시

제27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2016.12.21.)에서 의결된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교육감

☐ 세입예산

(단위:천원)

과 목		2017 본예산	2016 본예산	증감	증감률
장	관				
합 계		8,147,724,724	8,001,286,720	146,438,004	1.8%
이전수입	소계	7,403,238,029	7,241,554,148	161,683,881	2.2%
	중앙정부이전수입	4,484,597,540	4,646,652,055	△162,054,515	△3.5%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914,634,149	2,589,627,599	325,006,550	12.6%
	기타이전수입	4,006,340	5,274,494	△1,268,154	△24.0%

과 목		2017 본예산	2016 본예산	증감	증감률
장	관				
자체 수입	소계	162,106,993	149,127,224	12,979,769	8.7%
	교수-학습활동수입	122,641,861	130,402,875	△7,761,014	△6.0%
	행정활동수입	5,175,636	5,300,381	△124,745	△2.4%
	자산수입	13,718,516	752,646	12,965,870	1722.7%
	이자수입	4,065,975	3,074,743	991,232	32.2%
	금융자산회수	0	5,000	△5,000	△100.0%
	기타수입	16,505,005	9,591,579	6,913,426	72.1%
차입	소계	270,516,002	423,177,348	△152,661,346	△36.1%
	지방교육채	270,516,002	423,177,348	△152,661,346	△36.1%
기타	소계	311,863,700	187,428,000	124,435,700	66.4%
	전년도이월금	311,863,700	187,428,000	124,435,700	66.4%

□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2017 본예산	2016 본예산	증감	증감률
합 계	8,147,724,724	8,001,286,720	146,438,004	1.8%
1. 유아및초중등교육	7,782,061,941	7,444,782,127	337,279,814	4.5%
가. 인적자원운용	4,285,829,479	4,277,473,615	8,355,864	0.2%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340,322,841	282,116,592	58,206,249	20.6%
다. 교육복지지원	903,735,074	638,346,762	265,388,312	41.6%
라. 보건/급식/체육활동	42,399,806	37,340,020	5,059,786	13.6%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1,804,885,071	1,752,782,965	52,102,106	3.0%
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404,889,670	456,722,173	△51,832,503	△11.3%
2. 평생·직업교육	24,270,505	20,137,300	4,133,205	20.5%
가. 평생교육	23,357,205	18,192,200	5,165,005	28.4%
나. 직업교육	913,300	1,945,100	△1,031,800	△53.0%
3. 교육일반	341,392,278	536,367,293	△194,975,015	△36.4%
가. 교육행정일반	88,624,211	49,092,725	39,531,486	80.5%
나. 기관운영관리	50,325,287	45,100,994	5,224,293	11.6%
다. 지방채상환및리스크	186,120,580	182,306,176	3,814,404	2.1%
라. 예비비및기타	16,322,200	259,867,398	△243,545,198	△93.7%

구 고 시

◆ 종로구고시 제2017-2호

도로 노선의 변경 고시

도로법 제21조 3항 또는 제20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따라 도로노선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5일
종 로 구 청 장

구 분		[] 지정 [V] 기존	[] 폐지 [V] 변경
도로의 종류		구도	구도
노선번호		667 외 7	667 외 7
노선명		무악8 외 7	무악8 외 7
기점		무악동 69-2 외 7	무악동 69-2 외 7
종점		무악동 59-1 외 7	무악동 66-1 외 7
주요 통과지			
총연장(킬로미터)		1.770	1.267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연장 (킬로미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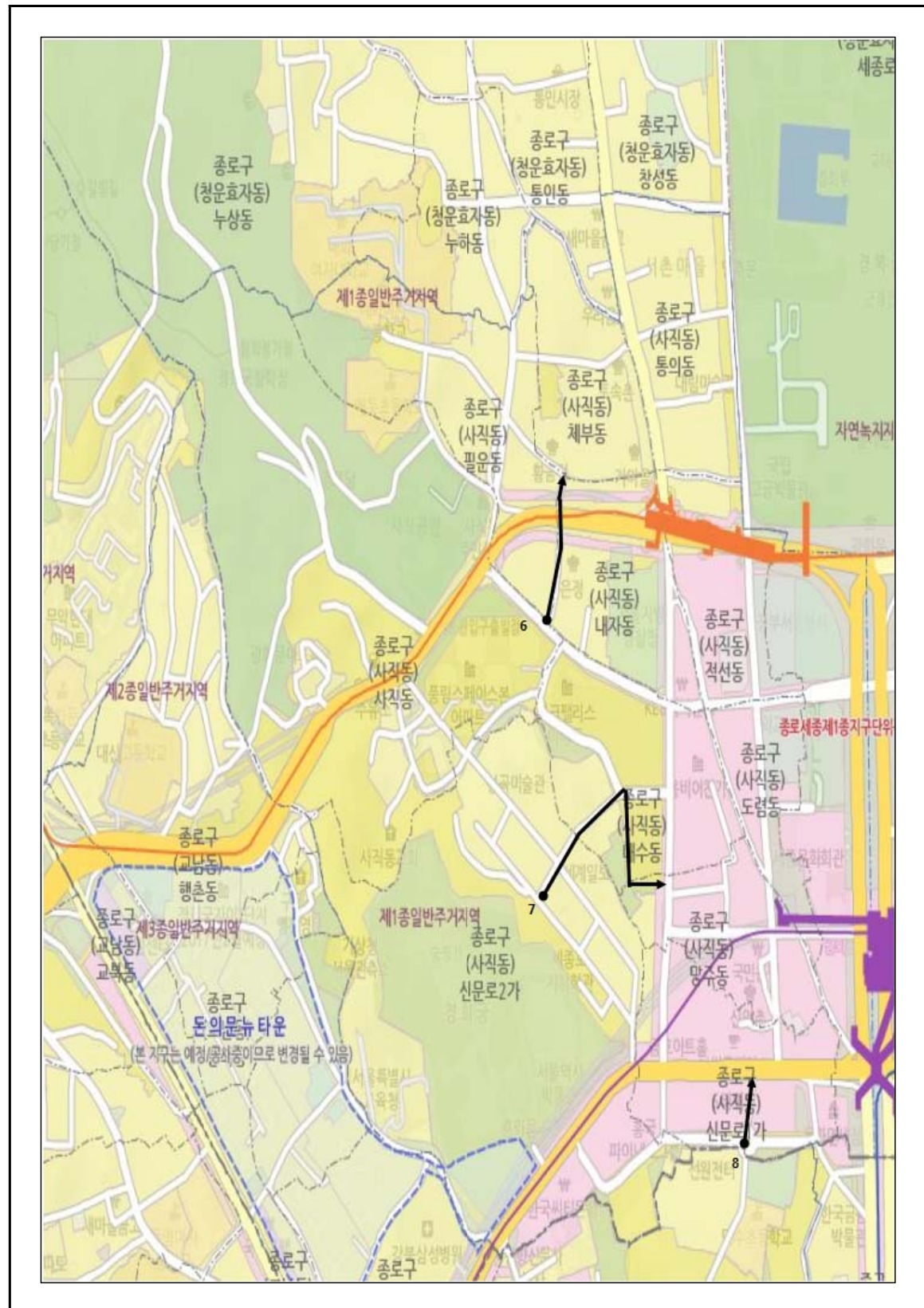
□ 구도 노선 변경 세부내역

구분	연번	노선명	노선 번호	기점	종점	총연장 (m)	주요 경과지	전용구간 연장(m)	준용구간 연장(m)	비고
기정		계	8 노선			1,770		1,770		
변경		계	8 노선			1,267		1,267		
기정	1	무악8	667	무악동 69-2	무악동 59-1	30		30		
변경		무악8	667	무악동 69-2	무악동 66-1	106		106		종점변경
기정	2	무악6	665	무악동 53-3	무악동 66-1	220		220		
변경		무악6	665	무악동 63-1	무악동 66-1	226		226		시점변경
기정	3	동송10	868	동송동 1-135	동송동 1-136	690		690		
변경		동송10	868	동송동 1-135	동송동 1-136	34		34		연장감
기정	4	동송1	832	동송동 2-1	동송동 4-15	80		80		
변경		동송1	832	동송동 4-63	동송동 4-15	138		138		시점변경
기정	5	동송4	852	동송동 25-1	동송동 4-177	150		150		
변경		동송4	852	동송동 25-1	동송동 129-19	150		150		종점변경
기정	6	내자1	721	내자동 300-1	내자동 30	170		170		
변경		내자1	721	내자동 169	내자동 30	170		170		시점변경
기정	7	신문로2가3	719	신문로2가 1-113	내수동 113	350		350		
변경		신문로2가3	719	신문로2가 1-113	당주동 127	360		360		종점변경
기정	8	신문1	145	신문로1가 182	신문로1가 121-4	80		80		
변경		신문1	145	신문로1가 182	신문로1가 163	78		78		종점변경

□ 지 형 도 (1/50,000 이상)







◆ 종로구고시 제2017-3호

도로 노선의 지정 고시

도로법 제19조 1항 또는 제20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따라 도로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5일
종로구청장

구 분		[V] 지정 [] 기존	[] 폐지 [] 변경
도로의 종류		구도	
노선번호		C1-J13-5b-1 외 406	
노선명		화동-1 외 406	
기점		화동 23-16 외 406	
종점		삼청동 62-36 외 406	
주요 통과지			
총연장(킬로미터)		29.576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연장 (킬로미터)		

□ 구도 노선 지정(신규) 세부내역

연번	노선명	노선번호	기점	종점	총연장 (m)	주요 경과지	전용구간 연장(m)	전용구간 연장(m)	비고
	계	407개 노선			29,576		29,576		
1	화동-1	C1-J13-5b-1	화동 23-16	삼청동 62-36	310		310		
2	화동-2	C1-J13-5b-A1	화동 71-1	화동 47-2	100		100		
3	화동-3	C1-J13-5b-A3	화동 27-1	화동 29	34		34		
4	팔판-2	2303-7-A1	팔판동 5-16	팔판동 107-2	70		70		
5	팔판-3	2303-7-A2	팔판동 111	팔판동 116-1	15		15		
6	삼청-11	2303-7-A3	삼청동 157-78	삼청동 157-96	170		170		
7	삼청-12	2303-7-A4	삼청동 157-103	삼청동 157-74	39		39		
8	삼청-13	2303-7a-1	삼청동 157-3	삼청동 157-88	143		143		
9	삼청-14	2303-7a-A2	삼청동 157-72	삼청동 157-69	56		56		
10	팔판-4	2303-7b-1	팔판동 115-71	팔판동 120-1	220		220		
11	팔판-5	2303-7b-A2	팔판동 115-9	팔판동 115-1	40		40		
12	삼청-15	2303-10-1	삼청동 26-4	삼청동 25-20	126		126		
13	삼청-16	2303-9-1	삼청동 122	삼청동 3-2	303		303		
14	삼청-17	2303-9-A2	삼청동 143-17	삼청동 143-4	21		21		
15	삼청-18	C1-J13-15-1	삼청동 28-37	삼청동 158-1	101		101		
16	삼청-19	C1-J13-15-A2	삼청동 158-18	삼청동 158-7	63		63		
17	삼청-20	C1-J13-15-A1	삼청동 158-11	삼청동 158-13	26		26		
18	삼청-21	C1-J13-11b-A1	삼청동 35-27	삼청동 35-25	30		30		
19	팔판-6	2303-J5-A1	팔판동 139-13	팔판동 123-3	82		82		

연번	노선명	노선번호	기점	종점	총연장 (m)	주요 경과지	전용구간 연장(m)	준용구간 연장(m)	비고
20	팔판-7	2303-J5-A2	팔판동 82	팔판동 83	21		21		
21	팔판-8	2303-J5-A4	팔판동 17-2	팔판동 4-11	31		31		
22	팔판-9	2303-J5-A6	팔판동 19	팔판동 24	55		55		
23	팔판-10	2303-5-2	팔판동 52-3	팔판동 100-3	100		100		
24	팔판-11	2303-5-A1	팔판동 99-6	팔판동 99-1	20		20		
25	팔판-12	2303-5-A3	팔판동 102	팔판동 103	30		30		
26	안국-5	C1-5-1	안국동 140	안국동 102-1	135		135		
27	안국-6	C1-5-A2	안국동 148	안국동 97	100		100		
28	안국-7	C1-5-A1	안국동 130	안국동 130-1	18		18		
29	안국-8	C1-5-A3	안국동 113	안국동 132	50		50		
30	안국-9	C1-5-A4	안국동 105	안국동 111	15		15		
31	안국-10	C1-J6-1	안국동 164	화동 106-5	370		370		
32	안국-11	C1-J6-A2	안국동 90	안국동 80	37		37		
33	안국-12	C1-J6-A4	안국동 175-49	안국동 175-30	94		94		
34	안국-13	C1-J6-A6	안국동 175-55	안국동 175-54	22		22		
35	안국-14	C1-J6-A8	안국동 48	안국동 37-1	38		38		
36	소격-2	2303-2-1	소격동 54-1	소격동 87-3	200		200		
37	소격-3	2303-2-A1	소격동 7	소격동 18	53		53		
38	소격-4	2303-2-A2	소격동 39	소격동 35-2	21		21		
39	소격-5	2303-2-A4	소격동 37	소격동 35-3	37		37		
40	소격-6	2303-2-A6	소격동 96	소격동 100	30		30		

연번	노선명	노선번호	기점	종점	총연장 (m)	주요 경과지	전용구간 연장(m)	준용구간 연장(m)	비고
41	소격-7	C1-J13-5a-1	소격동 144-17	소격동 1-1	240		240		
42	화동-3	C1-J13-5a-A2	화동 104	화동 95	76		76		
43	화동-4	C1-J13-5a-A4	화동 100	화동 78	120		120		
44	소격-8	C1-J13-5a-A6	소격동 23	소격동 25-1	18		18		
45	화동-5	C1-J13-5a-A8	화동 65-7	화동 56	61		61		
46	재동-14	C1-J13-5-A1	재동 25-2	재동 28	35		35		
47	화동-6	C1-J13-5-A2	화동 138-22	화동 2	48		48		
48	소격-9	C1-J13-5-A3	소격동 119-1	소격동 116-2	38		38		
49	화동-7	2303-4-1	화동 58-1	화동 36	80		80		
50	화동-8	2303-4-A2	화동 35	화동 34	23		23		
51	사간-1	C1-1-1	사간동 49	소격동 165-11	262		262		
52	사간-2	C1-1-A1	사간동 34	사간동 1	91		91		
53	사간-3	C1-1-A2	사간동 28	사간동 20	29		29		
54	사간-4	C1-1-A4	사간동 25	사간동 22	20		20		
55	사간-5	C1-1-A6	사간동 9	사간동 72-4	11		11		
56	소격-10	C1-1-A8	소격동 158-2	소격동 154-3	46		46		
57	송현-1	C1-3-1	송현동 48-9	송현동 1-1	303		303		
58	소격-11	C1-3-3	소격동 150	화동 138-14	67		67		
59	안국-15	C1-3-A2	안국동 19-4	안국동 17-1	87		87		
60	소격-12	C1-3-A4	소격동 149-9	소격동 149-2	20		20		
61	무악-22	22-14-A2	무악동 45-311	무악동 45-62	35		35		

연번	노선명	노선번호	기점	종점	총연장 (m)	주요 경과지	전용구간 연장(m)	준용구간 연장(m)	비고
62	무악-23	22-14-A4	무악동 45-84	무악동 45-20	87		87		
63	무악-24	22-16-1	무악동 66-3	무악동 63-6	117		117		
64	무악-28	22-18-2	무악동 60-2	무악동 86	682		682		
65	무악-29	22-18b-2	무악동 74	무악동 78	232		232		
66	무악-30	22-18b-A1	무악동 46-2138	무악동 46-2005	161		161		
67	무악-31	22-12a-A1	무악동 46-104	무악동 46-108	40		40		
68	무악-32	22-12a-A3	무악동 46-22	무악동 46-1149	53		53		
69	무악-33	22-12a-A5	무악동 46-35	무악동 46-30	27		27		
70	무악-34	22-12a-A7	무악동 46-38	무악동 82	77		77		
71	무악-35	22-12a-A2	무악동 46-128	무악동 46-127	13		13		
72	무악-36	22-12a-A4	무악동 46-128	무악동 46-124	22		22		
73	무악-37	22-12a-A6	무악동 45-33	무악동 45-39	67		67		
74	무악-38	22-12a-A9	무악동 45-50	무악동 45-35	18		18		
75	교복-2	22-12-1	교복동 1-6	무악동 46-1728	77		77		
76	무악-39	22-12-3	무악동 46-1732	무악동 46-937	65		65		
77	무악-40	22-12-5	무악동 46-922	무악동 46-915	36		36		
78	행촌-8	22-12-7	행촌동 210-118	행촌동 210-732	345		345		
79	무악-41	22-12-A2	무악동 46-62	무악동 46-101	28		28		
80	행촌-9	22-12-A1	행촌동 210-655	행촌동 210-248	36		36		
81	행촌-10	22-12-A4	행촌동 210-248	행촌동 210-244	20		20		
82	행촌-11	22-12-A3	행촌동 210-240	행촌동 210-196	43		43		

연번	노선명	노선번호	기점	종점	총연장 (m)	주요 경과지	전용구간 연장(m)	준용구간 연장(m)	비고
83	행촌-12	22-12-A6	행촌동 210-227	행촌동 210-231	36		36		
84	행촌-13	22-12-A8	행촌동 210-194	행촌동 210-193	14		14		
85	행촌-14	22-12-A10	행촌동 210-285	행촌동 210-221	13		13		
86	행촌-15	22-12-A12	행촌동 210-211	행촌동 210-213	22		22		
87	행촌-16	22-12-A14	행촌동 210-205	행촌동 210-207	22		22		
88	행촌-17	22-12-A16	행촌동210-110	행촌동 210-416	51		51		
89	행촌-18	22-12-A18	행촌동 210-108	행촌동 210-472	35		35		
90	행촌-19	22-12-A20	행촌동 210-439	행촌동 210-420	21		21		
91	행촌-20	22-12-A22	행촌동 210-101	행촌동 210-96	14		14		
92	행촌-21	22-12-A24	행촌동 210-99	행촌동 210-462	34		34		
93	행촌-22	22-12-A5	행촌동 210-54	행촌동 210-44	67		67		
94	행촌-23	22-12-A26	행촌동 210-58	행촌동 210-357	15		15		
95	무악-42	22-12-A7	무악동 46-271	무악동 46-268	47		47		
96	행촌-24	22-12-A28	행촌동 210-729	행촌동 210-730	21		21		
97	이화-6	29-J25-2-2	이화동 36-2	이화동 3-3	120		120		
98	동승-14	29-J25-2-4	동승동 201-10	동승동 201-4	112		112		
99	이화-7	29-J25-2-A1	이화동 36-4	이화동36-4	11		11		
100	동승-15	29-J25-2-A3	동승동 201-14	동승동 201-11	58		58		
101	이화-8	29-J25-1-2	이화동 61-8	이화동 5-5	105		105		
102	이화-9	29-J25-1-4	이화동 6-5	이화동 6-7	53		53		
103	이화-10	29-J25-1-A1	이화동 7-13	이화동 28-9	36		36		

연번	노선명	노선번호	기점	종점	총연장 (m)	주요 경과지	전용구간 연장(m)	준용구간 연장(m)	비고
104	이화-11	29-J25-1a-A1	이화동 28-23	이화동 28-25	18		18		
105	이화-12	29-J25-1b-2	이화동 9-264	이화동 9-498	124		124		
106	이화-13	29-J25-1b-A1	이화동 9-470	이화동 9-419	40		40		
107	이화-14	29-J25-1b-A3	이화동 9-657	이화동 9-425	27		27		
108	이화-15	29-J25-1b-A5	이화동 9-97	이화동 9-97	21		21		
109	이화-16	29-J25-1b-A7	이화동 9-533	이화동 9-161	19		19		
110	이화-17	29-J25-1b-A9	이화동 9-485	이화동 9-431	23		23		
111	이화-18	29-J25-1b-A11	이화동 9-493	이화동 9-435	32		32		
112	연건-4	29-J25-2	연건동 177-1	이화동 149-1	212		212		
113	이화-19	29-J25-A1	이화동 90-11	이화동 91-10	63		63		
114	동송-16	29-J25-A2	동송동 199-33	동송동 199-8	88		88		
115	동송-17	29-J25-A4	동송동 187-9	동송동 187-8	21		21		
116	이화-20	29-J34-4-1	이화동 9-414	이화동 9-648	77		77		
117	이화-21	C1-J24-1-1	이화동 9-620	이화동 9-266	53		53		
118	이화-22	C1-J24-1-A2	이화동 9-70	이화동 9-70	11		11		
119	이화-23	C1-19-1	이화동 9-206	이화동 9-195	65		65		
120	이화-24	C1-19-A2	이화동 9-558	이화동 9-543	22		22		
121	이화-25	C1-19-A4	이화동 9-112	이화동 9-364	16		16		
122	이화-26	C1-19-A1	이화동 9-591	이화동 9-582	31		31		
123	이화-27	C1-19-A3	이화동 9-112	이화동 9-107	20		20		
124	이화-28	C1-19-A5	이화동 9-105	이화동 9-107	15		15		

연번	노선명	노선번호	기점	종점	총연장 (m)	주요 경과지	전용구간 연장(m)	준용구간 연장(m)	비고
125	연건-5	29-7-A1	연건동 66	연건동 67	20		20		
126	연건-6	29-7-A3	연건동 45-3	연건동 43-4	36		36		
127	연건-7	29-5-2	연건동 134-2	연건동 28-2	320		320		
128	연건-8	29-5-A1	연건동 133	연건동 138-2	17		17		
129	연건-9	29-5-A3	연건동 125	연건동 126	10		10		
130	연건-10	29-5-A5	연건동 121	연건동 124-2	15		15		
131	연건-11	29-5-A7	연건동 93-13	연건동 98	30		30		
132	연건-12	C1-13-1	연건동 209	연건동 286-2	200		200		
133	연건-13	C1-13a-2	연건동 209	연건동 296-10	92		92		
134	연건-14	C1-13a-1	연건동 289-1	연건동 286-2	37		37		
135	연건-15	C1-13a-A1	연건동 268	연건동 273-12	53		53		
136	연건-16	C1-13a-A2	연건동 294-1	연건동 295-2	14		14		
137	연건-17	C1-13a-A4	연건동 311	연건동 305	38		38		
138	연건-18	C1-13a-A6	연건동 306	연건동 305	12		12		
139	이화-29	C1-16-1	이화동 207-2	충신동 94-3	98		98		
140	충신-10	C1-16-3	충신동 100	충신동 105-1	82		82		
141	이화-30	C1-16-A2	이화동 111	이화동 110	11		11		
142	충신-11	C1-16-A4	충신동 110	충신동 102-1	15		15		
143	연건-19	C1-14-1	연건동 187-1	효제동 103	178		178		
144	충신-12	C1-14-3	충신동 198-1	충신동 206-13	78		78		
145	이화-31	C1-14-A2	이화동 222-1	이화동 222-1	14		14		

연번	노선명	노선번호	기점	종점	총연장 (m)	주요 경과지	전용구간 연장(m)	잔용구간 연장(m)	비고
146	충신-13	C1-14-A4	충신동 82-3	충신동 82-1	21		21		
147	충신-14	C1-14-A6	충신동 85	충신동 88-1	43		43		
148	충신-15	C1-14-A8	충신동 100-2	충신동 100	37		37		
149	충신-16	C1-14-A10	충신동 201-3	충신동 193	35		35		
150	동송-18	29-8-2	동송동 1-119	동송동 1-119	20		20		
151	동송-19	29-J26-4a-1	동송동 2-22	동송동 2-14	162		162		
152	동송-20	29-J26-4a-A2	동송동 2-10	동송동 2-27	13		13		
153	동송-21	29-J26-4-A1	동송동 26	동송동 23	35		35		
154	동송-22	29-J26-4-A3	동송동 2-5	동송동 2-8	34		34		
155	동송-23	29-J26-4-A2	동송동 4-38	동송동 4-52	50		50		
156	동송-24	29-J26-4-A5	동송동 4-25	동송동 4-24	14		14		
157	동송-25	29-J26-4b-1	동송동 12-8	동송동 13-2	45		45		
158	동송-26	29-J26-4b-A1	동송동 129-26	동송동 129-27	14		14		
159	동송-27	29-J26-4b-A3	동송동 6-31	동송동 4-142	30		30		
160	동송-28	29-J26-4c-1	동송동 7-16	동송동 5-1	133		133		
161	동송-29	29-J26-4c-A1	동송동 7-5	동송동 7-7	15		15		
162	동송-30	29-J26-4c-A2	동송동 4-133	동송동 4-137	34		34		
163	동송-31	29-J26-4c-A4	동송동 4-117	동송동 4-115	31		31		
164	동송-32	29-J26-4d-1	동송동 5-12	동송동 129-380	185		185		
165	동송-33	29-J26-4d-A1	동송동 4-69	동송동 4-75	31		31		
166	동송-34	29-J26-4d-A2	동송동 4-83	동송동 4-81	18		18		

연번	노선명	노선번호	기점	종점	총연장 (m)	주요 경과지	전용구간 연장(m)	준용구간 연장(m)	비고
167	동송-35	29-J26-4d-A4	동송동 4-87	동송동 4-90	16		16		
168	동송-36	29-J26-4d-A6	동송동 4-112	동송동 4-100	38		38		
169	동송-37	29-J26-4d-A8	동송동 4-153	동송동 4-151	14		14		
170	동송-38	29-J26-3-1	동송동 128-16	동송동 2-41	230		230		
171	동송-39	29-J26-3-A2	동송동 129	동송동 129-85	115		115		
172	동송-40	29-J26-3-A4	동송동 50-19	동송동 50-44	20		20		
173	동송-41	29-J26-3-A6	동송동 50-34	동송동 50-2	30		30		
174	동송-42	29-J34-1-2	동송동 129-137	동송동 129-43	143		143		
175	동송-43	29-J34-1-A1	동송동 129-94	동송동 129-92	19		19		
176	동송-44	29-J34-1-A3	동송동 129-98	동송동 129-100	20		20		
177	동송-45	29-J34-1-A5	동송동 129-80	동송동 129-84	16		16		
178	동송-46	29-J34-1-A7	동송동 129-102	동송동 129-101	11		11		
179	동송-47	29-J34-1-A9	동송동 129-265	동송동 129-106	24		24		
180	동송-48	29-J34-1-A2	동송동 129-66	동송동 129-63	16		16		
181	동송-49	29-J34-1-A4	동송동 129-44	동송동 129-37	40		40		
182	동송-50	29-J34-2-2	동송동 129-135	동송동 129-167	105		105		
183	동송-51	29-J34-2-A1	동송동 129-125	동송동 129-124	12		12		
184	동송-52	29-J34-2-A2	동송동 129-274	동송동 129-278	20		20		
185	동송-53	29-J34-2-A3	동송동 129-72	동송동 129-61	35		35		
186	동송-54	29-8a-1	동송동 1-56	동송동 1-100	383		383		
187	동송-55	29-12-1	동송동 1-33	동송동 1-141	460		460		

연번	노선명	노선번호	기점	종점	총연장 (m)	주요 경과지	전용구간 연장(m)	준용구간 연장(m)	비고
188	동송-56	29-12-A2	동송동 1-181	동송동 1-152	30		30		
189	동송-57	29-J26-A2	동송동 31-19	동송동 31-27	29		29		
190	동송-58	29-J26-A4	동송동 128-16	동송동 128-16	27		27		
191	동송-59	29-J26-A6	동송동 1-4	동송동 1-4	24		24		
192	동송-60	29-J26-A8	동송동 1-9	동송동 1-8	28		28		
193	동송-61	29-J34-2	동송동 31-19	동송동 129-208	195		195		
194	동송-62	29-J34-A2	동송동 129-142	동송동 129-161	58		58		
195	동송-63	29-J34-A4	송인동 20-110	송인동 20-108	47		47		
196	동송-64	29-J26-1-2	동송동 187-9	동송동 189-10	108		108		
197	동송-65	29-J26-1-A1	동송동 31-35	동송동 129-148	30		30		
198	동송-66	29-J34-3-1	동송동 129-185	동송동 129-202	28		28		
199	동송-67	29-J34-3-3	동송동 129-239	동송동 129-241	31		31		
200	동송-68	29-J34-3-A2	동송동 129-201	동송동 129-206	26		26		
201	동송-69	29-J34-3-A4	동송동 129-220	동송동 129-225	48		48		
202	삼청-9	C1-J14-1	삼청동 25-23	명륜3가 산2-14	950		950		
203	혜화-32	28-J29-1	혜화동 111-3	명륜1가 33-3	310		310		
204	명륜1가-21	28-J29-3	명륜1가 32-7	혜화동 1-12	390		390		
205	혜화-33	28-J29-A2	혜화동 74-38	혜화동 74-37	33		33		
206	명륜1가-22	28-J29-A4	명륜1가 31-3	명륜1가 31-5	33		33		
207	명륜2가-23	28-J27-1	명륜2가 198-2	명륜2가 147-3	146		146		
208	명륜2가-24	28-J27-3	명륜2가 143-8	명륜1가 27-62	535		535		

연번	노선명	노선번호	기점	종점	총연장 (m)	주요 경과지	전용구간 연장(m)	준용구간 연장(m)	비고
209	명륜1가-23	28-J27-5	명륜1가 5-2	명륜1가 31-3	92		92		
210	명륜2가-25	28-J27-A2	명륜2가 203-2	명륜2가 203-1	16		16		
211	명륜2가-26	28-J27-A4	명륜2가 209-2	명륜2가 208-5	19		19		
212	명륜2가-27	28-J27-A6	명륜2가 148	명륜2가 150-1	56		56		
213	명륜2가-28	28-J27-A8	명륜2가 216-4	명륜3가 123-2	62		62		
214	명륜2가-29	28-J27-A10	명륜2가 142-2	명륜2가 141	19		19		
215	명륜2가-30	28-J27-A12	명륜2가 135	명륜2가 135-3	26		26		
216	명륜2가-31	28-J27-A14	명륜2가 131-2	명륜3가 53-7	65		65		
217	명륜2가-32	28-J27-A16	명륜2가 129-1	명륜2가 129-2	32		32		
218	명륜2가-33	28-J27-A18	명륜2가 74-1	명륜2가 76-1	33		33		
219	명륜1가-24	28-J27-A20	명륜1가 102	명륜1가 101-1	37		37		
220	명륜1가-25	28-J27-A22	명륜1가 84	명륜1가 90-1	58		58		
221	명륜1가-26	28-J27-A24	명륜1가 71-3	명륜1가 69	30		30		
222	명륜1가-27	28-J27-A26	명륜1가 16-41	명륜1가 19-4	27		27		
223	행촌-25	C1-1-1	행촌동 210-346	행촌동 210-201	148		148		
224	행촌-26	C1-1-A2	행촌동 171-42	행촌동 171-46	29		29		
225	행촌-27	C1-1-A4	행촌동 171-57	행촌동 171-66	26		26		
226	행촌-28	C1-1-A6	행촌동 171-65	행촌동 171-51	51		51		
227	행촌-29	C1-1-A1	행촌동 171-102	행촌동 171-97	26		26		
228	행촌-30	C1-1-A8	행촌동 171-106	행촌동 171-98	22		22		
229	행촌-31	C1-1-A10	행촌동 171-135	행촌동 171-141	45		45		

연번	노선명	노선번호	기점	종점	총연장 (m)	주요 경과지	전용구간 연장(m)	준용구간 연장(m)	비고
230	행촌-32	C1-1-A13	행촌동 171-141	행촌동 171-146	22		22		
231	행촌-33	C1-1-A12	행촌동 210-137	행촌동 210-133	24		24		
232	행촌-34	C1-1-A14	행촌동 210-120	행촌동 210-413	36		36		
233	행촌-35	C1-1d-1	행촌동 210-350	행촌동 210-445	50		50		
234	행촌-36	C1-1d-A2	행촌동 210-350	행촌동 210-537	66		66		
235	행촌-37	C1-1d-A1	행촌동 210-343	행촌동 210-182	20		20		
236	행촌-38	C1-1d-A4	행촌동 210-399	행촌동 210-383	15		15		
237	행촌-39	C1-1d-A6	행촌동 210-406	행촌동 210-380	20		20		
238	행촌-40	C1-1d-A8	행촌동 210-412	행촌동 210-413	23		23		
239	행촌-41	C1-1d-A10	행촌동 210-405	행촌동 210-379	25		25		
240	행촌-42	C1-1d-A12	행촌동 210-403	행촌동 210-369	20		20		
241	행촌-43	C1-1e-1	행촌동 210-391	행촌동 210-1118	180		180		
242	행촌-44	C1-1e-A2	행촌동 210-80	행촌동 210-78	22		22		
243	행촌-45	C1-1b-1	행촌동 171-78	행촌동 210-67	212		212		
244	행촌-46	C1-1b-A2	행촌동 171-124	행촌동 171-121	32		32		
245	행촌-47	C1-1b-A4	행촌동 210-333	행촌동 210-449	52		52		
246	행촌-48	C1-1b-A6	행촌동 210-71	행촌동 210-87	13		13		
247	행촌-49	C1-1b-A8	행촌동 210-66	행촌동 210-376	16		16		
248	행촌-50	C1-1a-2	행촌동 171-42	행촌동 171-84	150		150		
249	행촌-51	C1-1c-1	행촌동 171-117	행촌동 171-164	77		77		
250	행촌-52	C1-1c-A2	행촌동 171-119	행촌동 171-125	20		20		

연번	노선명	노선번호	기점	종점	총연장 (m)	주요 경과지	전용구간 연장(m)	준용구간 연장(m)	비고
251	행촌-53	C1-1c-A4	행촌동 210-326	행촌동 210-328	11		11		
252	행촌-54	C1-1c-A6	행촌동 210-326	행촌동 210-323	20		20		
253	행촌-55	5303-1a-1	행촌동 1-22	행촌동 210-166	155		155		
254	행촌-56	5303-1a-A2	행촌동 171-169	행촌동 171-166	38		38		
255	행촌-57	5303-1a-A4	행촌동 171-166	행촌동 171-166	14		14		
256	행촌-58	5303-1a-A1	행촌동 210-315	행촌동 210-311	41		41		
257	행촌-59	5303-1a-A3	행촌동 210-448	행촌동 210-294	63		63		
258	행촌-60	C1-2-1	행촌동 1-35	행촌동 1-90	130		130		
259	행촌-61	C1-2-A2	행촌동 1-82	행촌동 1-82	15		15		
260	행촌-62	51-J12-1-1	행촌동 2-1	행촌동 1-11	52		52		
261	홍파-1	51-J12-1-A2	홍파동 2-16	행촌동 1-11	140		140		
262	홍파-2	51-J12-1-A1	홍파동 2-30	홍파동 2-22	12		12		
263	행촌-63	51-J12-1-A4	행촌동 5-2	행촌동 5-1	25		25		
264	평동-1	51-J12-1	평동 51-3	송월동 100-2	185		185		
265	사직-7	5303-1-1	사직동 262-1	행촌동 1-25	335		335		
266	행촌-64	5303-1-3	행촌동 1-175	무악동 46-209	370		370		
267	행촌-65	5303-1-A1	행촌동 210-153	행촌동 210-298	18		18		
268	행촌-66	5303-1-A2	행촌동 210-33	행촌동 210-576	25		25		
269	행촌-67	5303-1-A4	행촌동 210-372	행촌동 210-373	17		17		
270	행촌-68	5303-1-A6	행촌동 210-29	행촌동 210-573	26		26		
271	행촌-69	5303-1-A8	행촌동 210-23	행촌동 210-829	60		60		

연번	노선명	노선번호	기점	종점	총연장 (m)	주요 경과지	전용구간 연장(m)	전용구간 연장(m)	비고
272	사직-8	51-J3-3b-2	사직동 311-27	사직동 313-14	49		49		
273	사직-9	51-J3-3b-A2	사직동 311-2	사직동 311-73	50		50		
274	사직-10	51-J3-3b-A1	사직동 311-23	사직동 311-63	20		20		
275	사직-11	51-J3-3b-A3	사직동 313-13	사직동 313-4	14		14		
276	사직-12	51-J3-3a-2	사직동 187-1	사직동 313-5	200		200		
277	사직-13	51-J3-3a-A1	사직동 187-1	사직동 187-1	11		11		
278	사직-14	51-J3-3a-A2	사직동 311-50	사직동 311-59	17		17		
279	사직-15	51-J3-3a-A3	사직동 179-3	사직동 328-5	38		38		
280	신문로2가-5	51-J3-3a-A4	신문로2가 2-58	신문로2가 1-322	32		32		
281	사직-16	C1-7-1	사직동 262-85	사직동 262-12	135		135		
282	사직-17	C1-5-1	사직동 270-1	사직동 268-3	40		40		
283	사직-18	C1-5-3	사직동 282-7	사직동 292	75		75		
284	사직-19	C1-5-A2	사직동 291-1	사직동 292	27		27		
285	사직-20	C1-5-A1	사직동 291-2	사직동 286	35		35		
286	사직-21	C1-5-A3	사직동 280-3	사직동 280-1	14		14		
287	사직-22	C1-5-A4	사직동 262-124	사직동 281-3	43		43		
288	사직-23	C1-5-A5	사직동 283-3	사직동 262-74	55		55		
289	사직-24	C1-6-1	사직동 311-73	사직동 304-50	70		70		
290	필운-2	C1-J1-1-2	필운동 12	필운동 21	105		105		
291	필운-3	C1-J1-1-A1	필운동 81	필운동 32-3	50		50		
292	필운-4	C1-J1-1-A3	필운동 84	필운동 86	16		16		

연번	노선명	노선번호	기점	종점	총연장 (m)	주요 경과지	전용구간 연장(m)	준용구간 연장(m)	비고
293	필운-5	C1-J1-1-A5	필운동 43-1	필운동 59	15		15		
294	필운-6	C1-J1-1-A7	필운동 46	필운동 33-11	28		28		
295	필운-7	C1-J1-1-A9	필운동 36	필운동 13-2	28		28		
296	필운-8	C1-J1-1-A11	필운동 26	필운동 27-1	17		17		
297	필운-9	C1-9a-1	필운동 138-2	필운동 32-27	142		142		
298	필운-10	C1-9a-A2	필운동 120	필운동 127-1	73		73		
299	필운-11	C1-9a-A1	필운동 32-10	필운동 32-8	23		23		
300	필운-12	C1-9-1	필운동 137-3	필운동 32	185		185		
301	내자-2	C1-10-A2	내자동 163	내자동 162	16		16		
302	필운-13	C1-8-A1	필운동 240-9	필운동 240-4	14		14		
303	내수-2	C1-8-A3	내수동 95	내수동 95	70		70		
304	내자-3	C1-8-A5	내자동 175	내자동 174-1	15		15		
305	신문로2가-6	51-J3-4-2	신문로2가 1-434	내수동 110-53	343		343		
306	신문로2가-7	51-J3-3-2	신문로2가 1-438	사직동 9-7	200		200		
307	신문로2가-8	51-J3-3-A1	신문로2가 1-438	사직동 173	116		116		
308	신문로2가-9	51-J3-3-A4	신문로2가 1-230	신문로2가 1-234	45		45		
309	내수-3	51-J3-2-A1	내수동 110-48	내수동 110-8	63		63		
310	내수-4	51-J3-2-A3	내수동 110-5	내수동 110	32		32		
311	신문로2가-10	51-J3-1a-2	신문로2가 1-266	신문로2가 1-172	175		175		
312	신문로2가-11	51-J3-1a-A1	신문로2가 1-176	신문로2가 1-178	32		32		
313	신문로2가-12	51-J3-1-2	신문로2가 1-222	신문로2가 1-248	51		51		

연번	노선명	노선번호	기점	종점	총연장 (m)	주요 경과지	전용구간 연장(m)	준용구간 연장(m)	비고
314	신문로2가-13	51-J3-1-A1	신문로2가 1-125	신문로2가 1-124	37		37		
315	신문로2가-14	51-J3-1-A3	신문로2가 1-259	신문로2가 1-259	21		21		
316	신문로2가-15	51-J3-1-A2	신문로2가 1-229	신문로2가 1-260	47		47		
317	신문로2가-16	51-J3-1-A5	신문로2가 1-167	신문로2가 1-166	27		27		
318	내자-4	C1-12-1	내자동 125-3	내자동 184	108		108		
319	내자-5	C1-12-3	내자동 180	내자동 178-2	38		38		
320	내자-6	C1-12-A2	내자동 110	내자동 107-2	20		20		
321	내자-7	C1-12-A4	내자동 185	내자동 188	34		34		
322	내자-8	C1-12-A1	내자동 186-2	내자동 96-1	27		27		
323	내자-9	C1-12-A3	내자동 93-1	내자동 90	39		39		
324	내자-10	C1-12-A6	내자동 193	내자동 198	22		22		
325	신문로1가-2	51-3-1	신문로1가 58-1	신문로1가 58-13	98		98		
326	당주-6	51-3-3	당주동 100	내수동 74	252		252		
327	내자-11	51-3-5	내자동 223	내자동 75-5	163		163		
328	체부-1	23-5a-1	체부동 87	체부동 101-1	222		222		
329	체부-2	23-5a-A2	체부동 119	체부동 118-18	30		30		
330	체부-3	23-5a-A4	체부동 104	체부동 105	12		12		
331	체부-4	23-5a-A6	체부동 9	체부동 10-1	16		16		
332	체부-5	23-5-2	체부동 37-1	체부동 128-1	120		120		
333	필운-14	23-5-4	필운동 175-6	필운동 171	40		40		
334	체부-6	23-5-A1	체부동 99	체부동 95-1	11		11		

연번	노선명	노선번호	기점	종점	총연장 (m)	주요 경과지	전용구간 연장(m)	준용구간 연장(m)	비고
335	체부-7	23-1a-1	체부동 54-1	체부동 37-1	145		145		
336	체부-8	23-1a-A2	체부동 79	체부동 76	53		53		
337	체부-9	23-1a-A4	체부동 71-2	체부동 66	22		22		
338	체부-10	23-1b-1	체부동 57	체부동 75-1	105		105		
339	체부-11	23-1b-3	체부동 86-5	체부동 86-1	20		20		
340	체부-12	23-1b-A2	체부동 189	체부동 190	14		14		
341	체부-13	23-1b-A4	체부동 64	체부동 63	16		16		
342	체부-14	23-1b-A6	체부동 174-1	체부동 181	68		68		
343	체부-15	23-1b-A1	체부동 175-3	체부동 175-2	13		13		
344	체부-16	23-1b-A3	체부동 176	체부동 176	12		12		
345	체부-17	23-1b-A8	체부동 173	체부동 172	17		17		
346	체부-18	23-1c-2	체부동 141-2	체부동 162-2	100		100		
347	체부-19	23-1c-A1	체부동 143-4	체부동 144	25		25		
348	체부-20	23-1d-1	체부동 201-4	체부동 179	65		65		
349	체부-21	23-1d-A1	체부동 202	체부동 202-2	33		33		
350	체부-22	23-1d-A3	체부동 163-9	체부동 207	18		18		
351	체부-23	23-1-2	체부동 52	필운동 163	275		275		
352	내자-12	23-1-A1	내자동 23	내자동 22	14		14		
353	내자-13	23-1-A3	내자동 24	내자동 25-1	11		11		
354	필운-15	23-1-A5	필운동 200	필운동 214	53		53		
355	필운-16	23-1-A7	필운동 154	필운동 142	61		61		

연번	노선명	노선번호	기점	종점	총연장 (m)	주요 경과지	전용구간 연장(m)	잔용구간 연장(m)	비고
356	통의-1	23-10-2	통의동 109	통의동 1-1	190		190		
357	창성-2	23-10-A1	창성동 130-6	창성동 130-4	27		27		
358	통의-2	23-10-A2	통의동 81-1	통의동 95	23		23		
359	창성-3	23-10-A3	창성동 122-2	창성동 122-15	15		15		
360	통의-3	23-10-A5	통의동 10	통의동 9-1	15		15		
361	통의-4	23-8-1	통의동 102	통의동 89	140		140		
362	통의-5	2303-7-1	통의동 20-7	통의동 30	75		75		
363	통의-6	2303-7-A2	통의동 20-7	통의동 19-1	30		30		
364	통의-7	2303-7-A4	통의동 29-4	통의동 29-1	43		43		
365	통의-8	23-6-2	통의동 70	통의동 7-38	150		150		
366	통의-9	23-6-A1	통의동 25-3	통의동 25-16	52		52		
367	통의-10	23-6-A2	통의동 25-4	통의동 25-6	11		11		
368	통의-11	23-2-2	통의동 49-1	통의동 35-84	127		127		
369	통의-12	23-2-A1	통의동 37	통의동 38	15		15		
370	당주-7	51-5a-1	당주동 5	적선동 80	375		375		
371	당주-8	51-5a-A1	당주동 117	내수동 167-1	36		36		
372	내수-5	51-5a-A3	내수동 1	내수동 5	77		77		
373	신문로1가-3	51-5-1	신문로1가 24	당주동 160	135		135		
374	신문로1가-4	51-5-A2	신문로 1가 24	신문로 1가 24	22		22		
375	당주-9	51-5-A1	당주동 171	당주동 167-1	65		65		
376	당주-10	51-5-A4	당주동 170-1	당주동 27-2	36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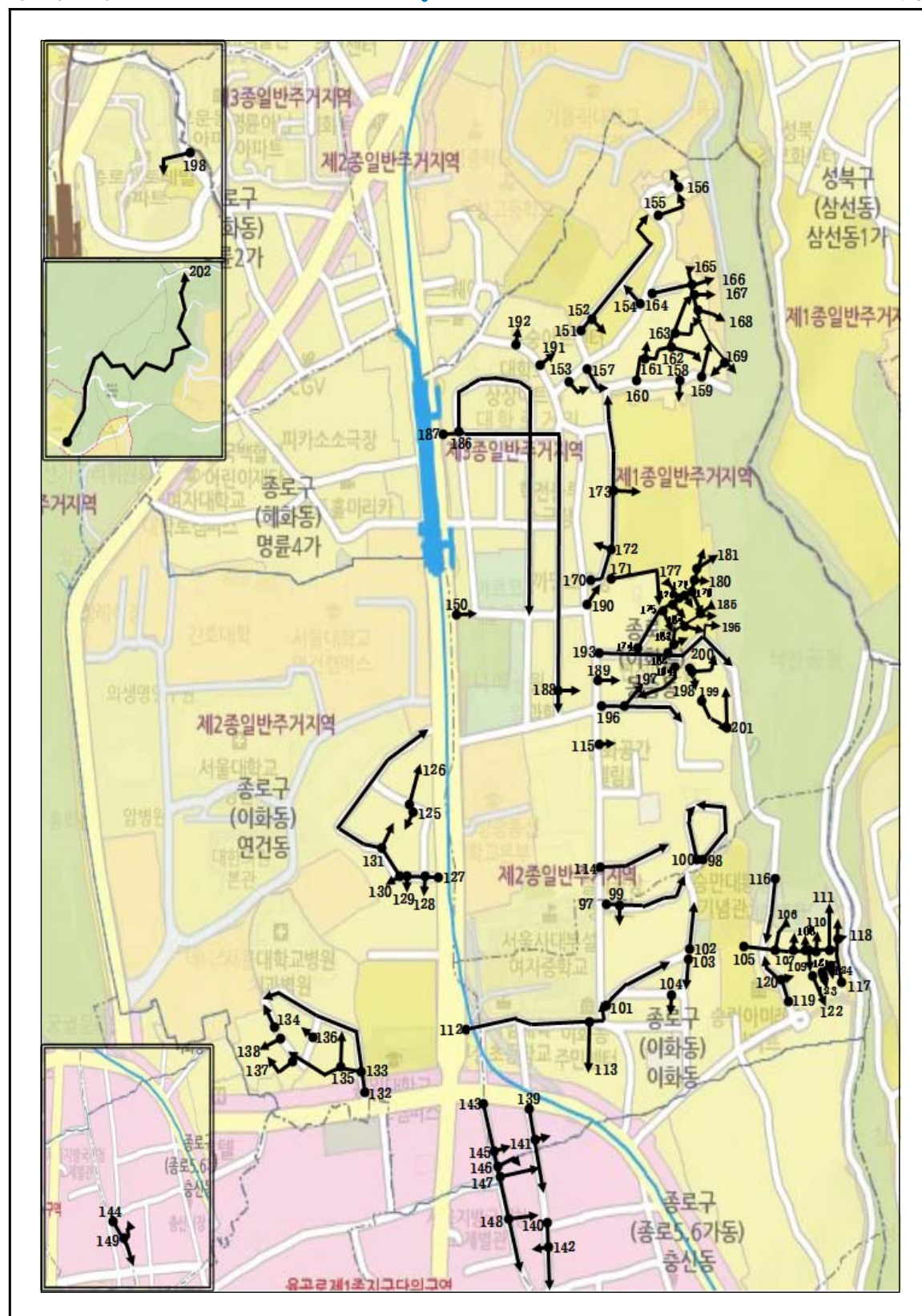
연번	노선명	노선번호	기점	종점	총연장 (m)	주요 경과지	전용구간 연장(m)	준용구간 연장(m)	비고
377	당주-11	51-5-A6	당주동 167-1	당주동 145-12	27		27		
378	세종로-1	51-9-1	세종로 204-1	당주동 15-8	145		145		
379	세종로-2	51-9-A2	세종로 175-1	세종로 161-7	33		33		
380	당주-11	51-9-A4	당주동 20-1	당주동 19	37		37		
381	필운-17	C1-J1-1	필운동 142	신교동 5-5	1150		1150		
382	필운-18	C1-J1-A2	필운동 115	필운동 115	11		11		
383	필운-19	C1-J1-A4	필운동 103-2	필운동 101-1	21		21		
384	필운-20	C1-J1-A6	필운동 97	필운동 97	14		14		
385	누하-1	C1-J1-A1	누하동 256	누하동 254	17		17		
386	누하-2	C1-J1-A8	누하동 240	누하동 223	66		66		
387	누하-3	C1-J1-A3	누하동 244-3	누하동 245-4	16		16		
388	누하-4	C1-J1-A10	누하동 259	누하동 258	15		15		
389	누하-5	C1-J1-A12	누하동 175-1	누하동 177	29		29		
390	누하-6	C1-J1-A14	누하동 230	누하동 222-4	63		63		
391	누하-7	C1-J1-A5	누하동 229-2	누하동 196	35		35		
392	누하-8	C1-J1-A16	누하동 184-2	누하동 178	64		64		
393	누하-9	C1-J1-A7	누하동 146-3	누하동 142-1	29		29		
394	누하-10	C1-J1-A18	누하동 145	누하동 147	20		20		
395	누하-11	C1-J1-A20	누하동 14	누하동 12	27		27		
396	누하-12	C1-J1-A22	누하동 77-2	누하동 77-15	55		55		
397	목인-2	C1-J1-A24	목인동 100-1	목인동 107	49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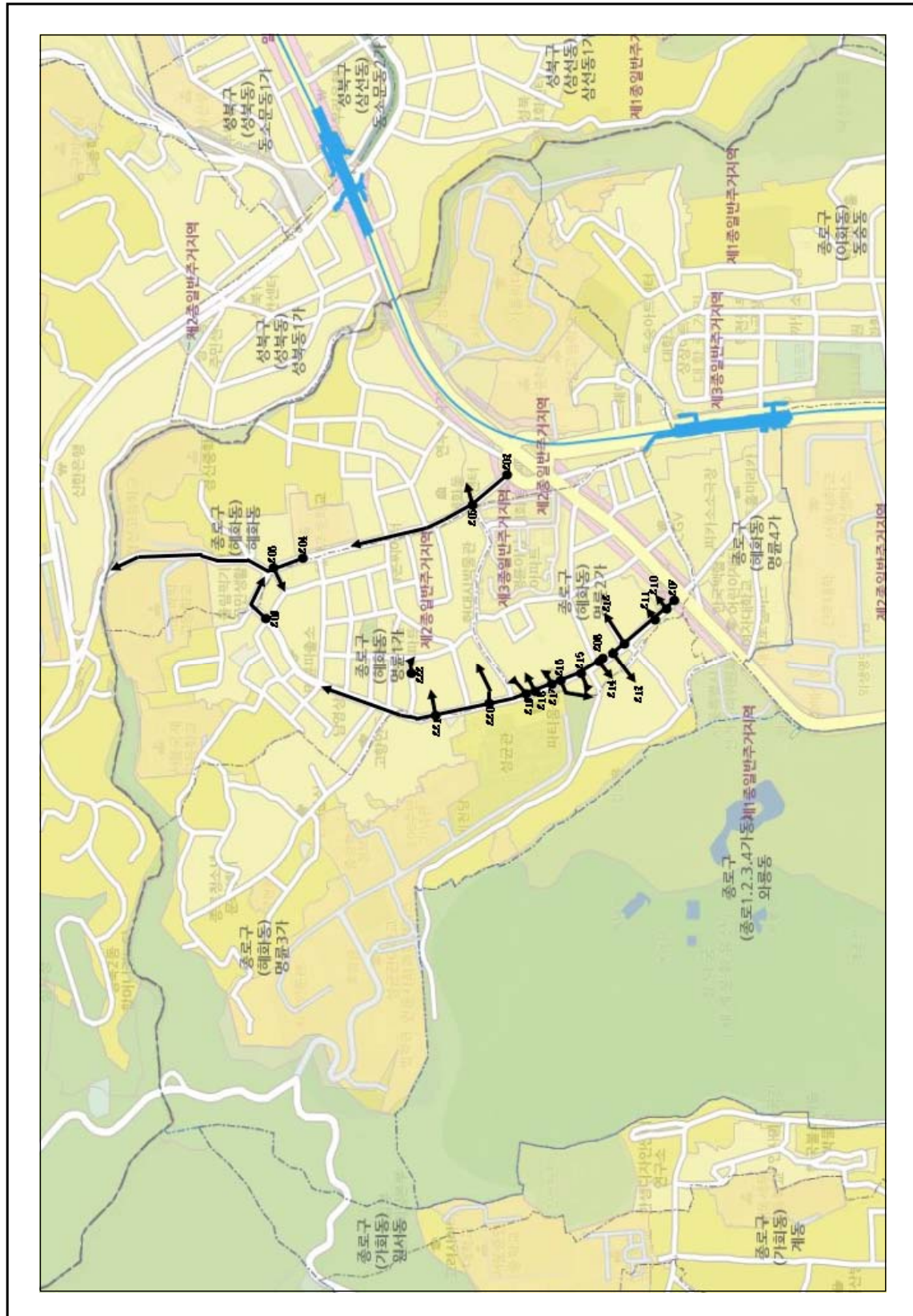
연번	노선명	노선번호	기점	종점	총연장 (m)	주요 경과지	전용구간 연장(m)	준용구간 연장(m)	비고
398	옥인-3	C1-J1-A9	옥인동 98-3	옥인동 96	22		22		
399	옥인-4	C1-J1-A11	옥인동 110	옥인동 111	15		15		
400	옥인-5	C1-J1-A26	옥인동 93	옥인동 79-2	75		75		
401	옥인-6	C1-J1-A28	옥인동 47-15	옥인동 47-22	35		35		
402	신교-10	C1-J1-A30	신교동 2-128	신교동 6-55	47		47		
403	신교-11	C1-J1-A32	신교동 6-26	신교동 6-24	37		37		
404	신교-12	C1-J1-A34	신교동 4-2	신교동 2-89	20		20		
405	신교-13	C1-J1-A13	신교동 10	신교동 15-1	53		53		
406	신교-14	C1-J1-A15	신교동 35	신교동 23	45		45		
407	신교-15	C1-J1-A17	신교동 36	신교동 40-1	46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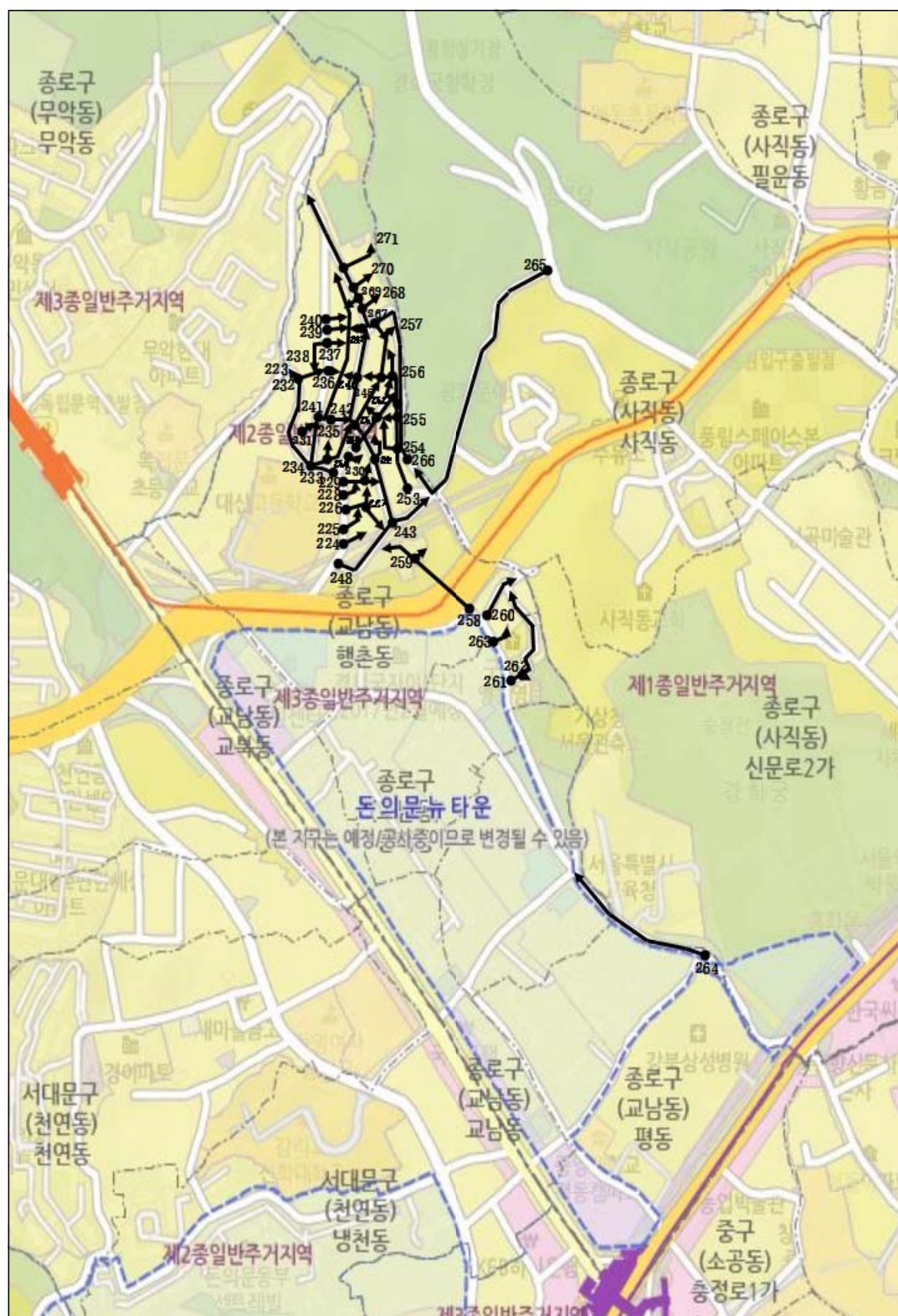
□ 지 형 도 (1/50,000 이상)











◆ 성동구고시 제2017-1호

도시관리계획[왕십리역 철도유희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163호(2016.6.16)로 결정 고시된 왕십리역 철도유희부지 「도시계획시설(철도)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내지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5일
성 동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68-183 일대 「왕십리역 철도유희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BL1 건축물배치 등에 관한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BL1	건축물 배치 등	기정	•채광확보를 위해 남향 및 동향위주 배치 •북측 도로변 진입광장 설치(위치권장) •철도와 인접하여 조경계획 및 주동배치 시에는 측벽 배치를 통해 주동의 소음 저감 유도 •성동행정타운과 인접하여 보행동선을 조성하여 지역 간의 커뮤니티 공간 형성
		변경	•북측 도로변 진입광장 설치(위치권장) •철도와 인접하여 조경계획 및 주동배치 시에는 측벽 배치를 통해 주동의 소음 저감 유도 •성동행정타운과 인접하여 보행동선을 조성하여 지역 간의 커뮤니티 공간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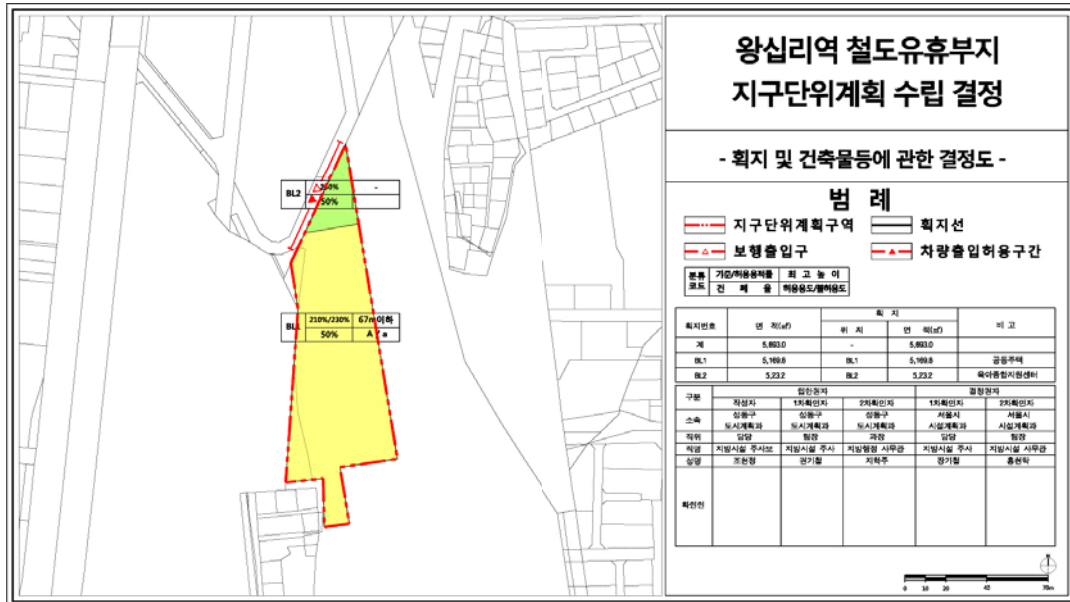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건축물 배치등의 사항에 채광확보를 위해 남향 및 동향위주 배치 내용 삭제	•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중 건축물배치 등의 내용 중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 기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3. 관계도면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변경없음)



4.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계획과(☎ 2286-555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동대문구고시 제2016-91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728-3번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5일
동대문구청장

1. 결정 취지

공원 및 녹지가 부족한 제기동의 생활권 공원녹지 확충,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및 쉼터 조성 등을 통한 주민 정서함양을 위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로 결정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공공공지	동대문구 제기동 728-3 일대	-	증) 201.3	201.3	-	-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열람장소 :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2127-4585) 및 공원녹지과(☎2127-4396)에 각각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도봉구고시 제2017-1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609-13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및 창동 632-50 ~ 창동 609-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 및 변경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5일
도 봉 구 청 장

1. 변경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로 변경구간은 창림초교 삼거리 구간으로 불합리한 도로구조를 개선(가각설치)하고 휴게쉼터를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을 해결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공공공지	창2동 609-13	0	증)278	278	-	

○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	8~11	집산 도로	705	창동 632-50	창동 609-9	일반 도로	건고시9호 (1967.1.21.)	
변경	소로	2	-	8~11	집산 도로	705	창동 632-50	창동 609-9	일반 도로		가각구간 선형변경

3. 관계도면 : 따로붙임(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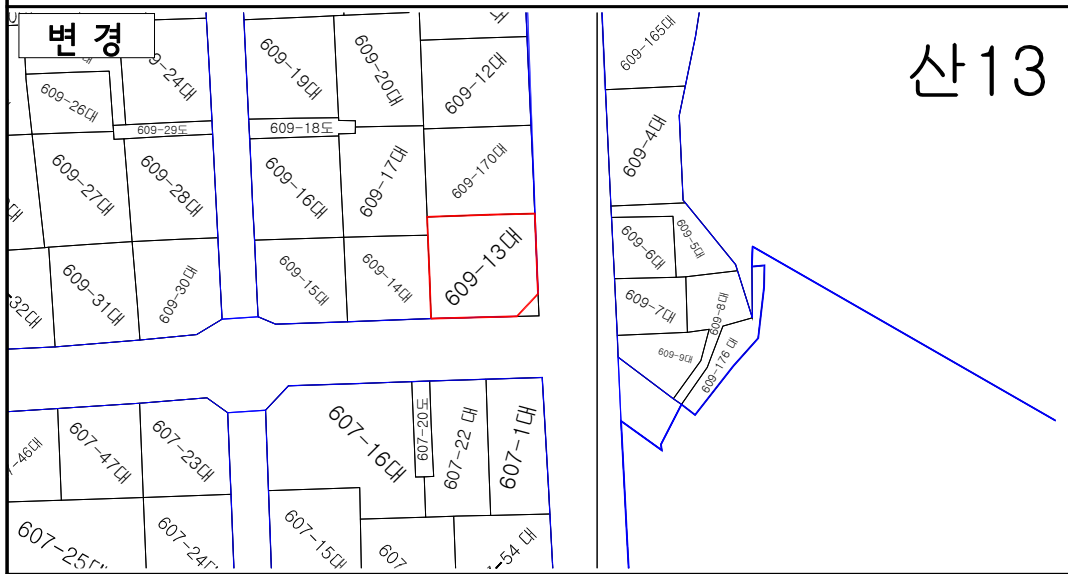
-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붙임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계획과(☎ 2091-3555)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 적 고 시 도



도시계획시설 결정(공공공지) 및 변경결정(도로) 지형도면	범례		입안 및 결정권자		
		변경전	구분	작성자	1차확인자
		변경후	소속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직위	담당	도시계획팀장
	Scale = 1 : 500		직명	시설주사	시설주사
			성명	이충열	정성수
			확인인		홍문덕

◆ 노원구고시 제2016-124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011-20 일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5일
노 원 구 청 장

1. 결정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주차장	노외 주차장	노원구 상계동 1011-20, 1011-25		증)567	567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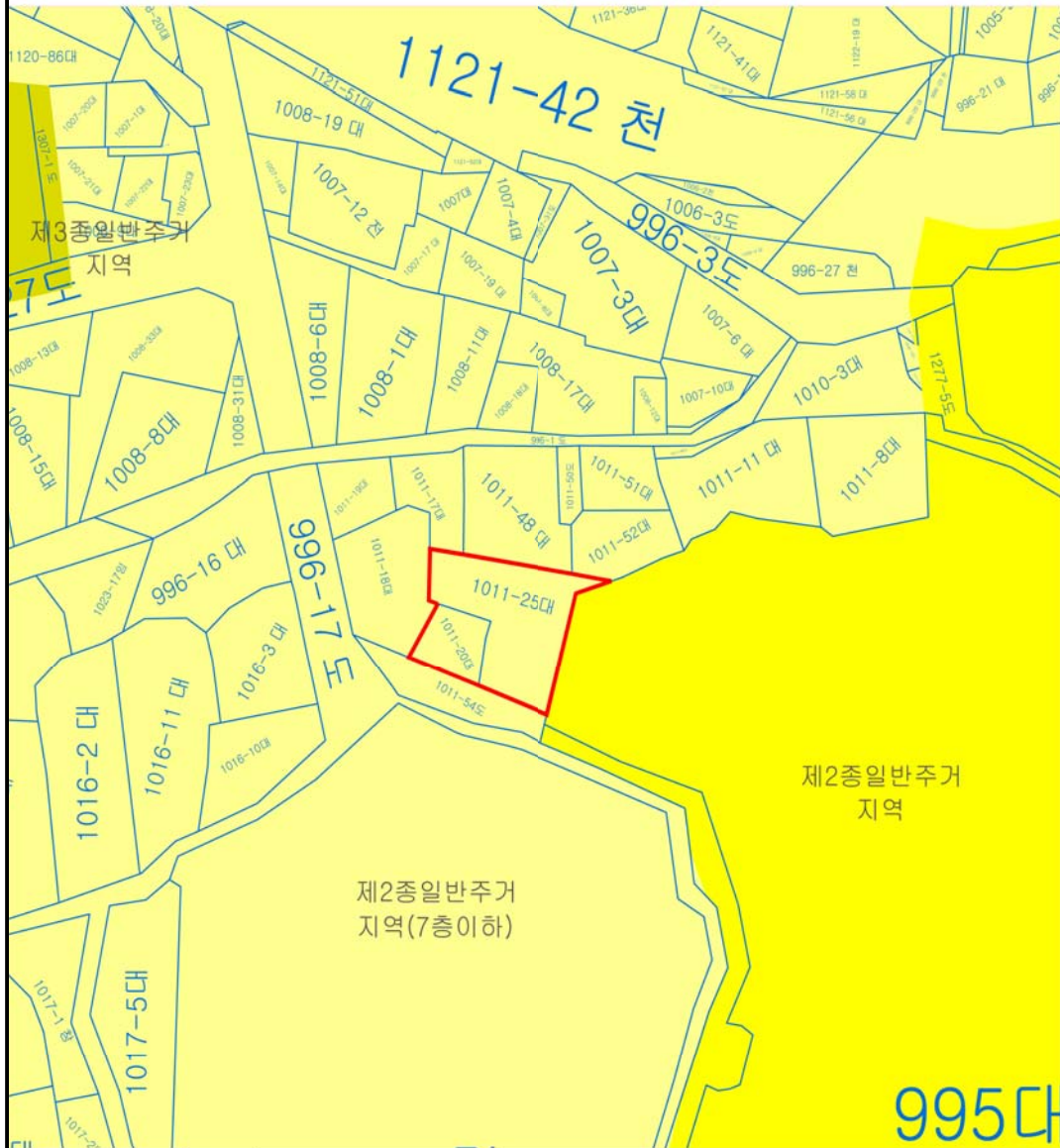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노원구청 도시관리과(☎2116-3861)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S=1:1,000(A4 Size)



주차장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주차장	노외주차장	노원구 상계동 1011-20, 1011-25		증)567	567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 노원구고시 제2017-1호

도시계획시설(불암문화정보도서관 건립)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2016-84호(2016. 9.22)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노원구공고 제2016-964호(2016.12.15) 및 노원구공고 제2016-965호(2016.12.15)로 도시계획시설(불암문화정보도서관 건립)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열람·공고 및 의견청취, 사업인정의제 사업에 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회신을 받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37-3 필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5일
노 원 구 청 장

1.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37-3
2. 사업시행자
 - 성 명 : 노원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437(상계동 701-1)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공지)
 - 사업의 명칭 : 불암문화정보도서관 건립
4. 사업의 내용
 - 면 적 : 203㎡
 - 사업규모 : 공공공지 조성 203㎡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년간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물건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따로붙임
7. 공고방법 : 서울시보 및 노원구보 게재
8.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학습과(☎02-2116-399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명 : 불암문화정보도서관 건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노원구 중계동 37-3	하천	315	203	영업	노원 구청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화로 437	윤만의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2724번길 45	·가설건축물 ·무허가건축물		

물 건 조 서

■ 사업명 : 불암문화정보도서관 건립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종 류	수량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비 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면적㎡)	권리의 종류와내용	
1	노원구 중계동 37-3	상가	세멘조	1동 (31㎡)	영업	윤만의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2724번길 45				
2	노원구 중계동 37-3	상가	슬레이트/ 샌드위치판넬	1동 (54㎡)	영업	윤만의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2724번길 45	정연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20-9	세입자 (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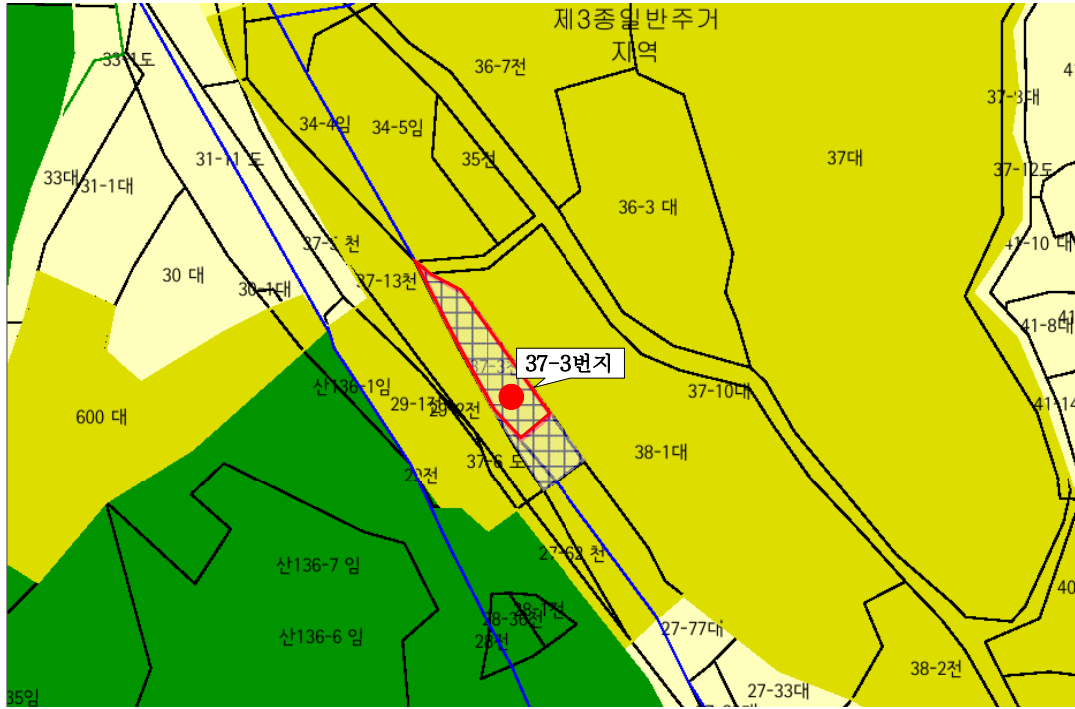
물 건 조 서

■ 사업명 : 불암문화정보도서관 건립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종류	수량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의 종류와내용	
3	노원구 상계동 996-10	세차장 철구조물	철제	3식	영업	공만의	서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2724번길 45					
		콘크리트바닥		1식		공만의	서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2724번길 45					
		이동화장실		1동	영업	공만의	서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2724번길 45					
		세차장기계실		1식	영업	공만의	서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2724번길 45					
		정화물탱크		1식	영업	공만의	서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2724번길 45					
		정화조		1식	영업	공만의	서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2724번길 45					
		사무실건물	컨테이너	1동	영업	공만의	서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2724번길 45					
		사무집기		1식	영업	공만의	서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2724번길 45					
		자재창고		1동	영업	공만의	서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2724번길 45					
		입간판		1식		공만의	서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2724번길 45					
		에어컨		1식	영업	공만의	서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2724번길 45					
		cctv		2개	영업	공만의	서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2724번길 45					
		세탁기		2대	영업	공만의	서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2724번길 45					
		에어컨프레서		1대	영업	공만의	서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2724번길 45					
		진공청소기		2대	영업	공만의	서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2724번길 45					
		매트청소기		2대	영업	공만의	서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2724번길 45					
		수도시설		1식		공만의	서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2724번길 45					
		전광판		2식	영업	공만의	서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2724번길 45					
		에어컨		2개	영업	공만의	서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2724번길 45					
		cctv		2개	영업	공만의	서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2724번길 45					

■ 중계동 37-3

□ 대상지 위치도



□ 현황사진



◆ 노원구고시 제2017-4호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65호(2016.09.01.)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지형도면 고시된 아래지상의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리하고, 「건축법」 제11조제5항제4호에 의거 공용건축물 협의 [(2016-건축과-공용건축물-7호(2016.12.30)]로 의제 처리된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노원구청 건축과(☎2116-3897)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월 5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172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2) 사업의 명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조융합연구동 증축공사

다. 사업시행규모

- 1) 사업시행면적 : 503,528㎡
- 2) 변경전(기존규모) : 연면적 247,189.34㎡
- 3) 변경후(증축 후) : 연면적 262,265.71㎡
- 4) 증축현황
 - 건축규모 : 지하1층/지상8층, 연면적 15,076.37㎡ 높이 36.55m
 - 용 도 : 교육연구시설(대학교)

라.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김종호)
- 2)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172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1) 착수년월일 : 공용건축물 협의일(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
- 2) 준공예정일 : 착수일로부터 3년

바. 위치도 및 인가도면 : 노원구청 건축과 비치도면과 같음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번호	지번	지목	면 적 (㎡)		
			국유지	서울시	계
1	공릉동 172-0	학교용지	217,984	-	217,984
2	공릉동 172-3	하 천	-	4,925	4,925

번호	지번	지목	면 적 (㎡)		
			국유지	서울시	계
3	공릉동 172-15	학교용지	45	-	45
4	공릉동 172-18	학교용지	14,840	-	14,840
5	공릉동 172-19	학교용지	7,976	-	7,976
6	공릉동 172-20	학교용지	1,393	-	1,393
7	공릉동 172-21	학교용지	9,466	-	9,466
8	공릉동 184-1	하 천	-	1,790	1,790
9	공릉동 189-0	학교용지	128,706	-	128,706
10	공릉동 436-2	도 로	-	46	46
11	공릉동 436-3	도 로	-	16	16
12	공릉동 440-31	학교용지	24	-	24
13	공릉동 478-9	학교용지	2,191		2,191
14	공릉동 478-10	학교용지	532		532
15	공릉동 478-11	학교용지	26		26
16	하계동 78-1	학교용지	112,626		112,626
17	하계동 78-11	학교용지	679		679
18	하계동 78-12	학교용지	263		263

아. 고시 방법 : 시보 게재

◆은평구고시 제2017-1호

**도시관리계획(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57호(2004.02.25)로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75호(2006.03.09.)로 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된 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대조동 179-30 외 1필지 토지 소유자로부터 공동개발(지정)변경 제안사항에 대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6.12.08.) 결과를 반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5일
은 평 구 청 장

가. 변경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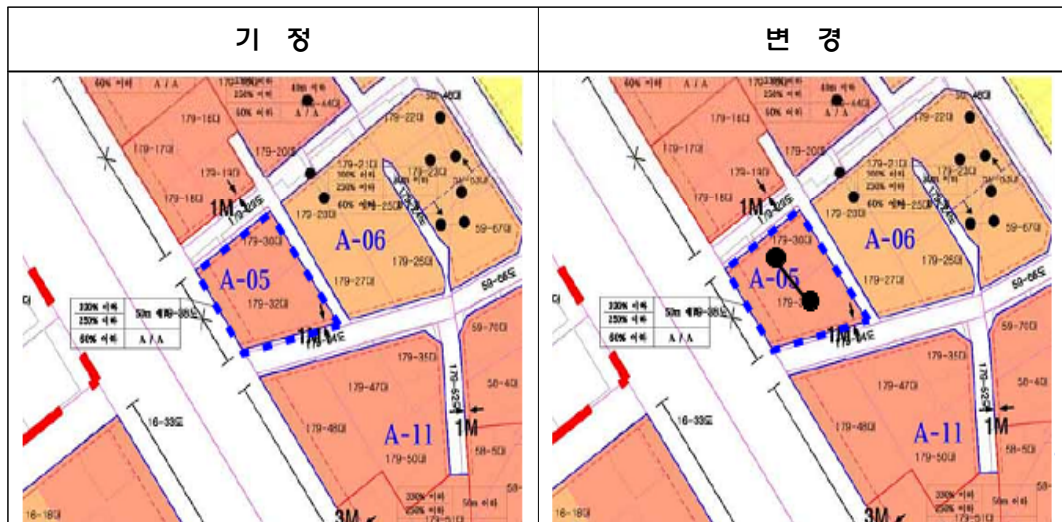
-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이 가능한 토지(2필지)를 공동개발(지정)가능 토지로 변경하여 건축행위가 가능토록 하려는 것임.

나. 도시관리계획(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조서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대조동	179-30	125.3	•자율적 공동개발
		179-32	361.3	•자율적 공동개발
변경	대조동	179-30	486.6	•공동개발 지정
		179-32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다. 기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 : 변경내용 없음

라.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도시계획과(☎351-7412, -741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은평구고시 제2017-2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조성)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34호(1989.12.15)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조성) 시행 인가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4-73호(2014.10.30.)로 변경 인가되어 시행중인 봉산도시자연공원(수국사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변경인가 요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건설교통국 공원녹지과(☎351-800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월 5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산135-1호 등 3필지

나. 사업시행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조성)

2) 사업의 명칭 : 봉산도시자연공원(수국사지구) 조성

다. 사업시행면적 : 33,305㎡

라. 시설규모 : 건축 연면적 감 23.47㎡

1) 당초

시 설 명	면적(㎡)	주 요 시 설	비 고
계	33,305.0		
휴 양 시 설	180.0	휴게소 180㎡	
교 양 시 설	1,490.0	전시관 1,080㎡(건축면적 360㎡, 연면적 360㎡), 야외극장 410㎡	
편 익 시 설	346.0	화장실 110㎡(건축면적 60.5㎡, 연면적 60.5㎡), 전망대 156㎡(건축면적 50.4㎡, 연면적 100.4㎡), 음수장 80㎡	
유 희 시 설	325.0	어린이놀이터 325㎡	
관 리 시 설	300.0	관리사무소 300㎡(건축면적 78㎡, 연면적 78㎡)	
기 반 시 설	1,318.5	도로 1,318.5㎡	
녹지및기타	29,345.5	녹지 29,345.5㎡	

2) 변경

시 설 명	면적(㎡)	주 요 시 설	비 고
계	33,305.0		
휴 양 시 설	180.0	휴게소 180㎡	
교 양 시 설	1,490.0	전시관 1,080㎡(건축면적 388.44㎡, 연면적 388.44㎡) 야외극장 410㎡	
편 익 시 설	346.0	화장실 110㎡(건축면적 60.5㎡, 연면적 60.5㎡), 전망대 156㎡(건축면적 46.57㎡, 연면적 46.57㎡) 음수장 80㎡	
유 희 시 설	325.0	어린이놀이터 325㎡	
관 리 시 설	300.0	관리사무소 300㎡(건축면적 79.92㎡, 연면적 79.92㎡)	
기 반 시 설	1,318.5	도로 1,318.5㎡	
녹지및기타	29,345.5	녹지 29,345.5㎡	

마. 사업시행자

1) 성 명 : 대한불교 조계종 수국사(대표:이만호)

2)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47가길 19 (갈현동 314)

바.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1990. 2. 20 ~ 2017. 10. 31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의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생략

◆ 마포구고시 제2017-1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경찰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4-128호(2014.7.17.)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마포구 마포동 230번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경찰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97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작성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과(☎02-3153-9355)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월 5일
마 포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230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명 칭 : 광역수사대 청사 신축공사

다.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 3,076㎡

○ 규 모 : 지하3층, 지상7층, 연면적 12,257㎡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지방경찰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31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7.03.01 ~ 2020.02.28.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토 지 조 서

연번	위치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마포동 230	대	3,076	3,076	국(경찰청)	-				

구 공 고

◆ 강북구공고 제2017-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62호(2014.12.2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고시 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166호(2016.11.24.)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한 아래 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미리 관계서류를 열람 공고합니다.
2.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도로관리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열람 기간 내 열람 장소(강북구청 도로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5일

강 북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 개요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규모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비고
미아동 195-1 (궁전회관 옆) 보도개설	강북구 미아동 195-1 (궁전회관 옆)	폭 6m→8m 연장 45m	강북구고시 제166호 (2016.11.24.)	

다.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강북구 도봉로89길 13(수유동)]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년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등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도로관리과(☎901-58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사업의 명칭 : 미아동 195-1(공전회관 옆) 보도개설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관리의 내 용	
1	미아동 194-3	대지	93.3	93.3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150 해밀리아파트 220-903	이명희	1/2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150 해밀리아파트 228-701	이성희	1/2				

□ 위치도



◆ 구로구공고 제2017-3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0-806호(2010.11.15, 서울항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036호(2014.04.21,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49호(2016.12.12, 서울 항동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3차) 및 지구계획(2차) 변경 승인)로 지형도면 고시되어 지적승인 된 「구로자원순환 센터 건립」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와 관련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안)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본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5일
구 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구로구 항동 58-1 일대(28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사업
 - 사업의 명칭 : 구로자원순환센터 건립
 - 다. 사업의 면적 : 13,447㎡ (기정 13,073㎡, 변경 13,447㎡)
 - 라.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구로구청장
 -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 마. 사업 착수 · 준공 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년간
 - 바. 사용·수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참조
 - 사.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공보게재일 익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구로구청 청소행정과 ☎ 02)860-2905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의 시행자 : 구로구청장
- 사업의 명칭 : 구로자원순환센터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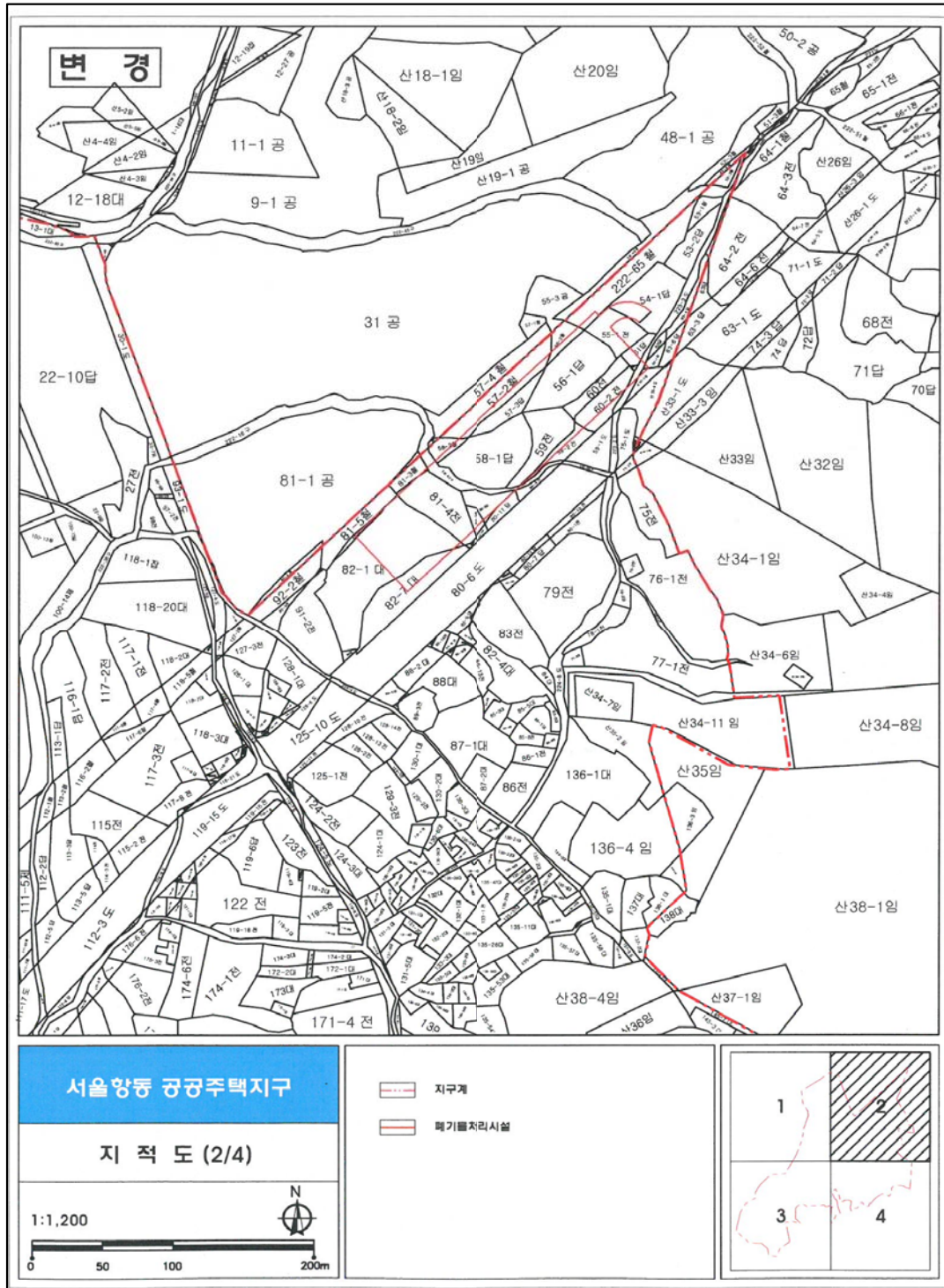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항동 222-62	구	539	373	국토교통부					
2	항동 222-65	철	1,909	67	국토교통부					
3	항동 223-3	도	772	72	국토교통부					
4	항동 54-1	답	1,494	240.4	에스에이치공사					신규 편입
5	항동 55-1	전	813	513.6	에스에이치공사					증 133.6㎡
6	항동 56-1	답	1,881	1,881	에스에이치공사					
7	항동 56-2	철	338	141	국토교통부 외 1인					
8	항동 57-2	철	1,358	355	국토교통부					
9	항동 57-3	답	575	575	에스에이치공사 외 4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0	향동 58-1	답	2,145	2,145	에스에이치공사					
11	향동 58-2	철	270	95	국토교통부					
12	향동 59-2	전	431	139	서울특별시					
13	향동 59	전	1,103	1,103	에스에이치공사 외 2인					
14	향동 60-2	전	753	546	서울특별시					
15	향동 60	전	470	470	에스에이치공사					
16	향동 61-1	답	14	14	서울특별시					
17	향동 61	답	264	109	에스에이치공사					
18	향동 62-1	답	128	7	서울특별시					
19	향동 80-11	답	238	3	서울특별시					
20	향동 80-2	답	423	414	에스에이치공사 외 2인					
21	향동 80-3	전	162	125	에스에이치공사 외 2인					
22	향동 80-5	전	179	1	서울특별시					
23	향동 81-3	철	265	5	국토교통부					
24	향동 81-4	전	1,467	1,397	에스에이치공사					
25	향동 81-5	철	745	1	국토교통부					
26	향동 82-1	대	4,435	2,238	에스에이치공사 외 2인					
27	향동 82-2	철	83	35	국토교통부					
28	향동 82-7	대	1,731	373	에스에이치공사 외 2인					
29	향동 산33-2	임	166	9	서울특별시					
계			23,657	13,447						

위치도 및 현장 사진



폐기물처리시설 지적도



◆ 금천구공고 제2016-1340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271호(2013.8.2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금천구 고시 제2013-43호(2013.10.31)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16-59호(2016.8.9.) 실시계획(변경)인가된 『금천구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군부대 특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 관계서류는 금천구청(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월 5일

금 천 구 청 장

가. 사업의 명칭 : 금천구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나. 사업의 위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151번지 일대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제이피홀딩스피에프브이 대표 박용태(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332, 논현동)

○ (주)제이피홀딩스 대표 이윤상(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03, 우동)

라. 사업의 면적 및 주요시설

○ 사업의 면적 : 19,389㎡

구 분	주 소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근린공원	소 계	2필지		16,331.3	
	금천구 독산동	1151	공원	15,733.7	
	금천구 시흥동	1028	공원	597.6	
소 공 원	금천구 독산동	1149	공원	3,057.7	

○ 사업의 주요시설

- 근린공원 : 기반시설,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등

- 소 공 원 : 기반시설,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등

마. 기타사항은 금천구청 공원녹지과(02-2627-16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천구공고 제2017-1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공사완료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271호(2013. 8.22.)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16-76호(2016.10.27.) 실시계획(변경)인가된 『금천구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군부대 특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 관계서류는 금천구청(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월 5일

금 천 구 청 장

가. 사업의 명칭 : 금천구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나. 사업의 위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152-8번지 일원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제이피홀딩스피에프브이 대표 박용태(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332, 논현동)

○ (주)제이피홀딩스 대표 이윤상(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03, 우동)

라. 시공자 : (주)삼미건설 대표 박지만

마. 사업의 내용 및 면적

○ 사업의 내용 : 녹지 및 휴게공간 등

○ 사업의 면적 : 537㎡

구분	주소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공공공지	소계	2필지		537	
	금천구 독산동	1152-8	공원	449.2	
	금천구 독산동	1152-9	공원	87.8	

바. 기타사항은 금천구청 공원녹지과(02-2627-16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6-28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선우해운	인천 남구 매소홀로 68 210동 1001호	서울시계 내 한강 (아라한강갑문~ 동작대교 남단)	선박 3척 (기선2, 부선1)	안양 열병합 발전소 주기기 해상운송	2017.1.8. ~ 2017.3.30.	2016. 12.27.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6-28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영흥중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4길 9, 102동 1804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96-119	선박 35척 (기선 11척, 부선 24척)	공사 투입 대기를 위한 수상 정박대기	2017.1.1. ~ 2017.1.31.	2016. 12.27.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6-29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광장티엔비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사로6길 54	강서구 개화동 657 강동구 고덕동 73-2	선박 31척 (기선 6척, 부선 25척)	공사 투입 대기를 위한 수상 정박대기	2017.1.1. ~ 2017.6.30.	2016. 12.30.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6-29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서울지부 (대표 류진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나루길 25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나루길 256	548.02㎡	조종면허시험	2017.1.1 ~ 2017.12.31	2016. 12.30
대한불교조계종 방생법회 (회장 이건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북로50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북로50	699㎡	방생법당	2017.1.1 ~ 2017.12.31	2016. 12.30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국민생활체육 서울시수상스키협회 (회장 조상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376-1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376-1	459.9㎡	수상스키훈련장	2017.1.1 ~ 2017.12.31	2016. 12.30
한국사회체육진흥회 수상스키중앙연합회 (회장 김찬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나루길29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나루길296	452㎡	수상스키훈련장	2017.1.1 ~ 2017.12.31	2016. 12.30
서울시장애인 수상스키협회 (회장 이기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북로64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북로64	383㎡	수상스키훈련장	2017.1.1 ~ 2017.12.31	2016. 12.30

사업소공고

◆ 구로소방서공고 제2016-2호

소방시설관리업 행정처분 공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을 행정처분하고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5일
구로소방서장

상 호 (주소)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지양산업(주)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54길 4, 지하1층 6호]	이숙영	소방시설관리업 제 구로2011-1호 (2011.1.18.)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	소방시설법 제25조제2항	영업정지 3월(2차) (2016.12.27.)	소방시설법시행규칙 제44조 [별표 8]제2호 개별기준 다목(2)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로소방서 예방과(2682-506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471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안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금천구청장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668-24번지 등 6필지
 - 면적 : 206.4m²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배수관 및 이중수문 설치
 - 내역 :
 - 이중수문 1개소(2@3.5m×2.0m)
 - 배수관 1개소(D=1,800mm), L=74.9m
 - 날개벽 1개소
5. 점용기간 : 2017.01.24.~2022.01.23(5년)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476호

한강 폐천부지 일부변경 고시

하천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기발생된 폐천부지에 대해 보전·처분 등 관리계획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도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02-2110-685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월 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폐천부지 등의 발생연월일 : 변경없음
3. 폐천부지 등의 위치 및 발생사유 : 변경없음
4. 폐천부지 등의 종류 또는 면적 : 변경없음
5. 폐천부지 등의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 보전·처분에 관한 사항 : 치수, 이수, 하천환경보전을 위해 한강 폐천부지 중 일부 구간의 관리계획을 변경

토지세목조서(한강)

하천명	하천 등급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시	구	동	지번		공부상	편익	당초	변경
한강	국가	서울	강동	고덕	79-4	전	47	47	처분	보존
한강	국가	서울	강동	강일	4	전	1,538	1,538	처분	보존
한강	국가	서울	강동	강일	5	전	2,995	2,995	처분	보존
한강	국가	서울	강동	강일	6	전	944	944	처분	보존
한강	국가	서울	강동	강일	8	전	787	787	처분	보존
한강	국가	서울	강동	강일	9-2	전	93	93	처분	보존
한강	국가	서울	강동	강일	9-3	전	562	562	처분	보존
한강	국가	서울	강동	강일	9-5	전	3	3	처분	보존
한강	국가	서울	강동	강일	11-4	전	1,115	1,115	처분	보존
한강	국가	서울	강동	강일	11-7	전	1,091	1,091	처분	보존
한강	국가	서울	강동	강일	20-1	잡	3,447	3,447	처분	보존
한강	국가	서울	강동	강일	20-2	잡	172	172	처분	보존
한강	국가	서울	강동	강일	20-3	대	26	26	처분	보존
한강	국가	서울	강동	강일	20-5	잡	1	1	처분	보존
한강	국가	서울	강동	강일	28	전	118	118	처분	보존
한강	국가	서울	강동	강일	28-5	전	15	15	처분	보존
한강	국가	서울	강동	강일	28-6	전	101	101	처분	보존
한강	국가	서울	강동	강일	30-11	잡	3	3	처분	보존
한강	국가	서울	강동	강일	30-16	도	107	107	처분	보존
한강	국가	서울	강동	강일	30-17	도	139	139	처분	보존
한강	국가	서울	강동	강일	31-3	도	48	48	처분	보존
한강	국가	서울	강동	강일	31-6	도	20	20	처분	보존
한강	국가	서울	강동	강일	31-8	도	67	67	처분	보존
한강	국가	서울	강동	강일	32-1	전	1,243	1,243	처분	보존
한강	국가	서울	강동	강일	32-3	전	1,660	1,660	처분	보존

하천명	하천 등급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시	구	동	지번		공부상	편익	당초	변경
한강	국가	서울	강동	강일	32-4	답	268	268	처분	보존
한강	국가	서울	강동	강일	32-5	전	1,220	1,220	처분	보존
한강	국가	서울	강동	강일	32-7	천	2,257	2,257	처분	보존
한강	국가	서울	강동	강일	32-9	전	14	14	처분	보존
한강	국가	서울	강동	강일	32-12	도	19	19	처분	보존
한강	국가	서울	강동	강일	32-13	천	170	170	처분	보존
한강	국가	서울	강동	강일	33-3	전	1,239	1,239	처분	보존
한강	국가	서울	강동	강일	34-7	도	61	61	처분	보존
한강	국가	서울	강동	강일	34-8	구	4	4	처분	보존
한강	국가	서울	강동	강일	36-1	답	12	12	처분	보존
한강	국가	서울	강동	강일	36-4	천	7	7	처분	보존
한강	국가	서울	강동	강일	36-7	답	35	35	처분	보존
한강	국가	서울	강동	강일	137-23	천	676	676	처분	보존
한강	국가	서울	강동	강일	137-45	천	99	99	처분	보존
한강	국가	서울	강동	강일	138-17	전	1,051	1,051	처분	보존
한강	국가	서울	강동	강일	138-20	전	2,083	2,083	처분	보존
한강	국가	서울	강동	강일	138-21	대	3,425	3,425	처분	보존
한강	국가	서울	강동	강일	158-1	전	86	86	처분	보존
한강	국가	서울	강동	강일	158-3	전	498	498	처분	보존
한강	국가	서울	강동	강일	158-4	전	1,381	1,381	처분	보존
한강	국가	서울	강동	강일	158-8	전	685	685	처분	보존
한강	국가	서울	강동	강일	158-9	전	579	579	처분	보존
한강	국가	서울	강동	강일	167-11	전	35	35	처분	보존
한강	국가	서울	강동	강일	168-2	전	23	23	처분	보존
한강	국가	서울	강동	강일	168-27	전	86	86	처분	보존
한강	국가	서울	강동	강일	168-28	전	60	60	처분	보존
한강	국가	서울	강동	강일	176-7	전	104	104	처분	보존

하천명	하천 등급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시	구	동	지번		공부상	편익	당초	변경
한강	국가	서울	강동	강일	177	전	2,902	2,902	처분	보존
한강	국가	서울	강동	강일	178-4	잡	79	79	처분	보존
한강	국가	서울	강동	강일	178-6	잡	136	136	처분	보존
한강	국가	서울	강동	강일	178-7	잡	256	256	처분	보존
한강	국가	서울	강동	강일	178-8	잡	112	112	처분	보존
한강	국가	서울	강동	강일	178-9	잡	55	55	처분	보존
한강	국가	서울	강동	강일	178-12	잡	65	65	처분	보존
한강	국가	서울	강동	강일	178-13	잡	91	91	처분	보존
한강	국가	서울	강동	강일	179	전	1,326	1,326	처분	보존
한강	국가	경기	하남	선	249	답	121	121	처분	보존
한강	국가	경기	하남	선	249-2	답	47	47	처분	보존
한강	국가	경기	하남	선	250	전	739	739	처분	보존
한강	국가	경기	하남	선	265	전	3,605	1,246	처분	보존
한강	국가	경기	하남	선	265-2	하천	352	197	처분	보존
한강	국가	경기	하남	망월	333-29	도	2	2	보존	처분
한강	국가	경기	하남	망월	330-7	도	3	3	보존	처분
한강	국가	경기	하남	망월	330-4	도	44	44	보존	처분
한강	국가	경기	하남	망월	333-30	전	68	68	보존	처분
한강	국가	경기	하남	망월	326-69	도	35	35	보존	처분
한강	국가	경기	하남	망월	326-68	도	580	580	보존	처분
한강	국가	경기	하남	망월	326-11	도	14	14	보존	처분
한강	국가	경기	하남	망월	326-70	도	733	733	보존	처분
한강	국가	경기	하남	망월	326-71	도	1,187	1,187	보존	처분
한강	국가	경기	하남	망월	315-2	도	900	900	보존	처분
한강	국가	경기	하남	망월	315-3	도	68	68	보존	처분

하천명	하천 등급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시	구	동	지번		공부상	편익	당초	변경
한강	국가	경기	하남	망월	315-4	도	300	300	보존	처분
한강	국가	경기	하남	망월	315-5	도	249	249	보존	처분
한강	국가	경기	하남	망월	315-6	도	295	295	보존	처분
한강	국가	경기	하남	망월	315-7	도	36	36	보존	처분
한강	국가	경기	하남	망월	315-8	도	341	341	보존	처분
한강	국가	경기	하남	망월	308-7	도	158	158	보존	처분
한강	국가	경기	하남	망월	305-5	도	38	38	보존	처분
한강	국가	경기	하남	망월	308-8	도	518	518	보존	처분
한강	국가	경기	하남	망월	308-9	도	103	103	보존	처분
한강	국가	경기	하남	망월	308-10	도	139	139	보존	처분
한강	국가	경기	하남	망월	308-11	도	47	47	보존	처분
한강	국가	경기	하남	망월	308-12	도	88	88	보존	처분
한강	국가	경기	하남	망월	308-16	도	114	114	보존	처분
한강	국가	경기	하남	망월	308-17	도	808	808	보존	처분
한강	국가	경기	하남	망월	308-13	도	146	146	보존	처분
한강	국가	경기	하남	망월	228-1	도	29	29	보존	처분
한강	국가	경기	하남	망월	795-2	도	19	19	보존	처분
한강	국가	경기	하남	망월	283-6	도	10	10	보존	처분
한강	국가	경기	하남	망월	282-7	도	40	40	보존	처분
한강	국가	경기	하남	망월	229-9	도	123	123	보존	처분
한강	국가	경기	하남	망월	232-8	도	43	43	보존	처분
한강	국가	경기	하남	망월	210-9	도	536	536	보존	처분
한강	국가	경기	하남	망월	790-2	천	50	50	보존	처분
한강	국가	경기	하남	망월	139-2	도	2,871	2,871	보존	처분
한강	국가	경기	하남	망월	138-14	도	987	987	보존	처분
한강	국가	경기	하남	망월	792-8	도	31	31	보존	처분
한강	국가	경기	하남	망월	24-5	도	909	909	보존	처분

하천명	하천 등급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시	구	동	지번		공부상	편익	당초	변경
한강	국가	경기	하남	망월	24-6	도	378	378	보존	처분
한강	국가	경기	하남	망월	24-7	도	233	233	보존	처분
한강	국가	경기	하남	망월	24-8	도	391	391	보존	처분
한강	국가	경기	하남	망월	24-9	도	52	52	보존	처분
한강	국가	경기	하남	망월	24-10	도	1,483	1,483	보존	처분
한강	국가	경기	하남	망월	4-20	도	163	163	보존	처분
한강	국가	경기	하남	망월	6-3	도	1	1	보존	처분
한강	국가	경기	하남	망월	830-128	도	8	8	보존	처분
한강	국가	경기	하남	망월	830-127	도	2	2	보존	처분
한강	국가	경기	하남	망월	830-129	도	3	3	보존	처분
한강	국가	경기	하남	망월	830-136	도	17	17	보존	처분
한강	국가	경기	하남	망월	830-135	도	216	216	보존	처분
한강	국가	경기	하남	망월	830-132	도	527	527	보존	처분
한강	국가	경기	하남	덕풍	2-40	도	254	254	보존	처분
한강	국가	경기	하남	덕풍	2-27	도	22	22	보존	처분
한강	국가	경기	하남	덕풍	2-46	도	50	50	보존	처분
한강	국가	경기	하남	덕풍	2-48	도	197	197	보존	처분
한강	국가	경기	하남	덕풍	2-8	도	241	241	보존	처분
한강	국가	경기	하남	덕풍	633-4	천	8	8	보존	처분
한강	국가	경기	하남	덕풍	10-6	도	253	253	보존	처분
한강	국가	경기	하남	덕풍	10-3	도	1,169	1,169	보존	처분
한강	국가	경기	하남	덕풍	10-4	도	11	11	보존	처분
한강	국가	경기	하남	덕풍	70-38	도	167	167	보존	처분
한강	국가	경기	하남	덕풍	70-40	도	324	324	보존	처분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1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영등포구청장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123(당산동1가 254-3)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3-6번지
 - 면 적 : 4.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밤섬유래비 설치
 - 내 역 : 밤섬유래비 1개소
5. 점용기간 : 2015.11.18.~2020.11.17.(5년)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